발 간 등 록 번 호

기타 공무원 채용 법령집

2023. 8.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일반직공무원 채용

1.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임용령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5.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소방공무원 채용

1. 소방공무원임용령
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반직공무원 채용

1.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임용령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5.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총괄) 044 - 201 - 8314, 8315
인사혁신처 (복무과 - 복무) 044 - 201 - 8445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임용) 044 - 201 - 8295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채용) 044 - 201 - 8204
인사혁신처 (복무과 - 징계) 044 - 201 - 8434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2021. 1. 12.>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5. 5. 18.>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2. 11.]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1. 5. 23.,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 <2010.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8.,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2. 12. 1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 3. 28.>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인재개발·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적소·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 삭제 <2008. 2. 29.>

제8조 삭제 <2008. 2. 29.>

제8조의2 삭제 <2008. 2. 29.>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의4 삭제 <2008. 2. 29.>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③ 삭제 <1973. 2. 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08. 3. 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08. 3. 28.>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신설 2021. 6. 8.>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1. 5. 23., 2021. 6. 8.>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1. 5. 23., 2021. 6. 8.>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1.,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⑩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5. 5. 18., 2021. 6. 8.>

[제목개정 2008. 3. 28.]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6. 8.>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5. 23.]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8. 10. 16.>

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의2(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1. 2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1. 29.>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9.>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29.>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직무 및 인력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 3. 28.>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5조 삭제 <1973. 2. 5.>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 3. 28.>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3. 4.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23. 4. 11.]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5. 5. 18.>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1. 5. 23., 2015. 5. 1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1. 5. 23.]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2., 2012. 12. 11.,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3. 22.,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2. 12. 11., 2015. 5. 18.]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2. 12. 11.]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0. 3. 22., 2011. 5. 23., 2012. 10. 22.,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8. 3. 20., 2022. 12. 27.>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 5. 23.>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4. 1. 7., 2015. 5. 18.>

⑤ 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23.,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12. 31.>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5(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12. 31.>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08. 2. 29.]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 삭제 <1981. 4. 20.>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2021. 6. 8.>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 ’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 ’ 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 ’ 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22. 12. 27.>

[본조신설 2014. 1. 7.]

제34조(시험 실시기관)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② 삭제 <2004. 3. 11.>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④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37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5. 18.>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5. 5. 18.>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18.>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②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2015. 5. 18., 2022. 12. 27.>

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2. 10.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5. 18.>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5. 5. 18.>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3(승진 심사)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승진시험 방법) ①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승진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5. 23.>

③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자, 응시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

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2023.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23. 4. 11.>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5. 18., 2023. 4. 11.>

④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3. 4. 11.>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2023. 4. 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12. 24., 2021. 6. 8., 2023. 4. 11.>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의2 삭제 <1978. 12. 5.>

제43조의3 삭제 <1978. 12. 5.>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장 보수 <개정 2008. 3. 28.>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12. 3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 12. 31.,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장 능률 <개정 2008. 3. 28.>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개정 2015. 12. 24.>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5. 12. 24.]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제안 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4조(상훈 제도)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장 복무 <개정 2008. 3. 28.>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 3. 28.>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2022. 12. 27.>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2. 11.]
[단순위헌, 2020헌가8, 2022.12.22,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6. 5. 29.>

1. 삭제 <1991. 5. 31.>

2. 삭제 <1991. 5. 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 3. 28.>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5. 5. 18.>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개정 2008. 3. 28.>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2. 11., 2014. 1. 7.>

1. 삭제 <2014. 1. 7.>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7.>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개정 2011. 5. 23., 2014. 1. 7.>

⑥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신설 2012. 12. 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3.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5. 5. 18.>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18. 3. 20., 2021. 6. 8.>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 12. 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

야 한다.<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1965. 10. 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 3. 11.>]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② 삭제 <2008. 6. 13.>

③ 삭제 <1998. 2. 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08. 3. 28.>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2. 10. 22., 2015. 5. 1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개정 2021. 6. 8.>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2.,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1. 5. 23.]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 3. 28.>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2., 2018. 10. 16.>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2023. 4. 1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2018. 10. 16.>

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

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8. 10. 16.>

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10. 16.>

⑦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⑧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2018. 10. 16.>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1.>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1.>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장 징계 <개정 2008. 3. 28.>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6. 8.>

③ 삭제 <2021. 6. 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2010. 3. 22.]

[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2010. 3. 22.>]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2.>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78조의2에서 이동 <2010. 3. 22.>]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1. 29.>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9.>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4.]
[제목개정 2020. 1. 29.]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12. 24.>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신설 2023. 4. 11.>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5. 18., 2023. 4. 11.>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5. 18., 2021. 6. 8., 2023. 4. 11.>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0. 3. 22.>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9.>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0. 3. 22.]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0. 3. 22.]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2로 이동 <2014. 1. 14.>]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14., 2014. 10.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84조에서 이동 <2014. 1. 14.>]

제12장 보칙 <개정 2008. 3. 28.>

제85조 삭제 <2022. 12. 27.>

제85조의2(수수료)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부칙 <제1325호,1963. 4.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①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한 소청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중에 있는 소청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종전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1963년 6월 1일이전에 시행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 5. 26. 법1638]

제6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 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5급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특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원조직법、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검찰청법、원호처설치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초대소청심사위원의 임기) 초대소청심사위원중 2인은 5년, 2인은 4년 기타 3인은 각각 3년、2년、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제9조 (외무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단서에 규정된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1호,1963.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8호,1964. 5.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11호,1965. 10.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부칙 <제2460호,1973.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 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제3150호,1978.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제3447호,1981. 4.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급	1 급
2 급 갑 류	2 급
2 급 을 류	3 급
3 급 갑 류	4 급
3 급 을 류	5 급
4 급 갑 류	6 급
4 급 을 류	7 급
5 급 갑 류	8 급
5 급 을 류	9 급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에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제3518호,1981. 12. 31.>(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 기획조정실장 ” 및 “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 을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부칙 <제3584호,1982.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17호,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017호,1988. 8. 5.>(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 " 을 "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 " 으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 총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 " 를 "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 " 로 한다.

②생략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84호,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08호,1991. 11. 30.>(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부칙 <제4763호,1994. 7. 20.>(국회사무처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국가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4829호,1994.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제5153호,1996. 8. 8.>(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을 "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52호,1997.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5호,1997. 12. 13.>(국회사무처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제5527호,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29호,1998. 2. 28.>(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3# 생략

3$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 "을 "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을 " 각부의 차관 "으로, " 행정조정실장 "을 " 국무조정실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제2항 본문중 " 총무처장관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 총무처 "를 " 행정자치부 "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 총리령 "을 각각 " 행정자치부령 "으로 한다.

부칙 <제5681호,1999. 1. 21.>(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 국가안전기획부 "를 각각 " 국가정보원장 "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09호,1999. 2. 5.>(해난심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 해난심판원 " 을 " 해양안전심판원 " 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부칙 <제5983호,1999. 5.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9호,1999.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2호,2002.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 원장은 " 을 "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 로 하고, 동조제3항중 " 차장은 " 을 "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 로 하며, 동조제4항중 " 기획조정실장은 " 을 "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 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 감사위원의 보수 " 를 "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 " 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 " 를 "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 " 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 국무위원에, " 를 "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 로, "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 를 "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6788호,2002. 12. 18.>

이 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5호,2003. 2. 4.>(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7187호,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를 “ 중앙인사위원회에 ”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로 하고, 동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을 “ 중앙인사위원회는 ”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로 한다.

제15조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을 “ 중앙인사위원회는 ”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을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으로 한다.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 ”행정자치부장관“ 은 ”을 “ ”중앙인사위원회“ 는 ”으로 한다.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을 “ 중앙인사위원회는 ”으로 한다.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로 한다.

제8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를 “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로 한다.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를 “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 행정자치부 ” 또는 “ 행정자치부장관 ”을 인용한 경우에는 “ 중앙인사위원회 ”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80호,2005. 1. 27.>(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를 “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7407호,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4호,2005. 7. 28.>(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7796호,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7. 3. 2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 5급 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을 "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 3급이상 국가공무원 " 을 "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 을 "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 2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중 " 1급공무원 " 을 "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2!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 를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 로 한다.

2#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 공무원 " 을 각각 "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 공무원 " 을 각각 "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 1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각각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3@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 2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 " 을 "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 5급 이상의 공무원 " 을 각각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 4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 " 을 "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 직급 " 을 "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 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 5급 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 를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 로 한다.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

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부칙 <제8069호,2006. 12. 2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8330호,2007.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3호,2007. 5. 11.>(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857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직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8996호,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이 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제9113호,2008. 6. 13.>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9296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3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19호,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8호,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에 대한 특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상, 2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는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칙 <제10342호,2010.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5호,2011. 3. 29.>(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99호,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3제2항, 제43조,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기능10급 공무원은 기능9급 공무원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분야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복수국적자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용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8조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④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92호,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89호,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11530호,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비 변상 등을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징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조(적격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제70조

의2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평정대상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평정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개방직·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도”로 한다.

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⑪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로 한다.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을 “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 “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직국가공무원 ” 으로, “ 일반직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직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 으로 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 기능직 국가공무원 ” 을 “ 일반직 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5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2호,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2202호,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 강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새로 제70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34호,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2호,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6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88호,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4, 제28조제2항제11호, 제69조제1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한다.

부칙 <제13618호,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 제71조제2항제7호, 제72조제10호 및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징수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83호,2016. 5. 29.>(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2호,2018. 3. 20.>(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한다.

제7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⑦부터1& 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857호,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05호,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26조의6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재심사 등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칙 <제17893호,2021. 1. 12.>(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894호,2021. 1. 12.>(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237호,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4항·제5항, 제78조제2항·제3항, 제80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수 및 실비 변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08호,2021. 7. 2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제19147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28조제2항제11호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228호,2023. 3. 4.>(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 국가보훈처장 ”을 “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4^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341호,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17조의3, 제26조의2, 제32조의4제1항, 제33조제3호ㆍ제4호,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또는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총괄, 임용) 044 - 201 - 8295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 파견) 044 - 201 - 8340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채용) 044 - 201 - 8205

제1장 총칙 <개정 2009. 9. 8.>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 임기제공무원 ”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0.>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4., 2012. 1. 26., 2013. 2. 20., 2013. 3. 23., 2014. 1. 1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20. 2. 25., 2020. 3. 10., 2020. 7. 14., 2022. 5. 9.>

1. “ 임용 ” 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 복직 ” 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 소속 장관 ” 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다. 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라. 시·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소방청장으로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삭제 <2018. 7. 3.>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11. 20., 2017. 1. 10.>

③ 삭제 <2013. 11. 20.>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10.>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9. 8.]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15. 7. 13., 2015. 11. 18., 2017. 12. 29.>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

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9. 6. 18.>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12. 16.]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전문개정 2011. 9. 6.]

제4조의2 삭제 <2004. 6. 11.>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1. 9. 29., 2013. 11. 20., 2013. 12. 16., 2020. 2. 25.>

③ 삭제 <2006. 6. 12.>

④ 소속 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11. 20., 2013. 12. 16.>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3. 11. 20.>

⑥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⑦ 현업기관(現業機關)을 갖는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게 그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⑧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게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⑨ 정원을 조정하거나 소속 장관 상호간, 소속 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1. 3. 7., 2013. 11. 20.>

[전문개정 1989. 3. 27.]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7. 3.>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

[전문개정 2009. 9. 8.]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 7. 3.]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5.]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균형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속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9. 9. 8.]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7. 3.>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19.>

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4. 6. 30.]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 채용후보자 ”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2. 5., 2021. 11. 30.>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9. 8.]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
3. 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2. 29.>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9. 8.]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5조의2 삭제 <1981. 6. 10.>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2. 1. 26.>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1. 4. 4., 2012. 1. 26., 2013. 3. 23., 2013. 4. 22.,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2016. 6. 24., 2017. 1. 10., 2019. 11. 5., 2020. 2. 25., 2021. 1. 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1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 9. 8., 2013. 2. 20., 2015. 9. 25.>

③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12. 16., 2020. 9. 22.>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9. 22., 2021. 11. 30.>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31.>

1.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의2에 따른 응시요건.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 4. 9.]

[제목개정 2012. 1. 26.]

제17조 삭제 <1978. 12. 30.>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1.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제20조의3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제20조의3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1. 4. 4.,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15. 11. 18., 2020. 2. 25.>

[본조신설 1977. 9. 14.]

[제목개정 2009. 9. 8., 2012. 1. 26.]

제19조 삭제 <1971. 12. 11.>

제20조 삭제 <1973. 4. 9.>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4., 2012. 1. 26., 2015. 9. 25., 2020. 6. 30.>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2. 1. 26.]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②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개정 2012.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2. 1. 26.]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2. 1. 26.]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5. 9. 25., 2021. 11. 30.>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

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3. 삭제 <2013. 11. 20.>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2012. 3. 30.,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2015. 9. 25., 2021. 11. 30.>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⑦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개정 2012. 1. 26., 2015. 9. 25.>

⑧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2015. 9. 25.>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⑩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선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6. 30., 2014. 11. 19.>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0., 2014. 11. 19., 2015. 9. 25.>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3. 11. 20.]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③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같은 영 제29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같은 영 제47조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6.>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1. 20.]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8.>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 11. 18., 2017. 1.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3. 11. 20.]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목개정 2015. 9. 25.]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 4. 9.>

제23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1. 3. 7., 2015. 11. 18.>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 3. 7.>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신설 2011. 3. 7., 2013. 11. 20., 2015. 11. 18.>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 3. 7.>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18.>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1. 18., 2017. 12. 29.>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1. 18.>

[전문개정 1973. 4. 9.]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7. 12. 29.>

② 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4.>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개정 2010. 6. 15., 2013. 11. 20., 2015. 9. 25., 2017. 12. 29., 2018. 7. 3.>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09. 9. 8.]

제3장 전직 <개정 2009. 9. 8.>

제26조 삭제 <1981. 6. 10.>

제27조 삭제 <1981. 6. 10.>

제27조의2 삭제 <1981. 6. 10.>

제27조의3 삭제 <1981. 6. 10.>

제28조 삭제 <1981. 6. 10.>

제28조의2 삭제 <1981. 6. 10.>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21. 1. 5.>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정·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 1. 26., 2013. 4. 22., 2015. 11. 18., 2019. 11. 5.>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전문개정 2009. 9. 8.]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13. 11. 20.>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8.]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1. 3. 7., 2014. 2. 5., 2015. 11. 18., 2016. 6. 24., 2017. 1. 31., 2018. 7. 3., 2020. 12. 29.>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016. 6. 24.>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신설 2022. 12. 27.>

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개정 2012. 1. 26.>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개정 2013. 12. 16., 2017. 12. 29.>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7. 1. 10.>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신설 2022. 12. 27.>

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9. 9. 8.]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0.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개정 2020. 9. 22.>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2조의2 삭제 <1981. 6. 10.>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③ 삭제 <2012. 1. 26.>

[제목개정 2020. 9. 22.]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22. 12. 27.>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9. 22.>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⑤ 제3항에 따른 총결원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한다.<개정 2011. 3. 7.>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22. 12. 27.>

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⑩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9.>

[전문개정 2009. 9. 8.]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1. 5.>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5. 9. 25., 2019. 11. 5., 2020. 9. 22.>

[전문개정 2009. 9. 8.]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개정 2010. 6. 15., 2013. 11. 20.>

④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9. 11. 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11. 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6. 25., 2019. 11. 5.>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6. 25., 2019. 11. 5.>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31., 2019. 6. 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개정 2011. 7. 4., 2013. 11. 20.>

1. 삭제 <2013. 11. 20.>
2. 삭제 <2013. 11. 20.>
3. 삭제 <2013. 11. 20.>
4. 삭제 <2013. 11. 20.>
5. 삭제 <2013. 11. 20.>
6. 삭제 <2013. 11.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16. 6. 24., 2019. 11. 5.>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1. 3. 7., 2013. 11. 20.>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신설 2019. 6. 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6. 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9. 6. 18.>

[제목개정 2013. 11. 20.]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36조의2 삭제 <2005. 12. 26.>

제36조의3 삭제 <2005. 12. 26.>

제36조의4 삭제 <2005. 12. 26.>

제36조의5 삭제 <2005. 12. 26.>

제37조 삭제 <2004. 6. 11.>

제37조의2 삭제 <2004. 6. 11.>

제37조의3 삭제 <2004. 6. 11.>

제37조의4 삭제 <2004. 6. 11.>

제38조 삭제 <1998. 12. 31.>

제39조

[종전 제39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1994. 12. 31.>]

제39조의2 삭제 <1981. 6. 10.>

제5장 겸임 및 파견 <개정 1981. 6. 10.>

제40조(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5. 9. 25., 2021. 11. 30.>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2. 29., 2013. 11. 20., 2015. 9. 25., 2021. 11. 30.>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임직원 간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2015. 9. 25.>

[전문개정 2009. 9. 8.]

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6. 2. 3.>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8., 2011. 3. 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10. 6. 15.>

1.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3.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⑤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개정 2009. 9. 8., 2010. 6. 15.>

⑥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1.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2.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1981. 6. 10.]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⑦ 삭제 <2022. 12. 27.>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 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9. 8.]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6., 2014. 11. 19., 2017. 7. 26.>

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삭제 <2013. 12. 16.>
4.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신설 1981. 6. 1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2. 3., 2020. 9. 22., 2021. 1. 5.>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4. 직제의 신설·개정·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2019. 11. 5.>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7. 3.>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신설 2019. 6. 18.>

⑧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8.>

[전문개정 2009. 9. 8.]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2017. 1. 10.>

1. 삭제 <2012. 9. 28.>
2. 삭제 <2012. 9. 28.>
3. 삭제 <2012. 9. 28.>

② 삭제 <2012. 9. 28.>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0.>

[전문개정 2009. 9. 8.]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1. 10.>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5. 9. 25.>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1. 10.>

[전문개정 2014. 2. 5.]

제43조의4 삭제 <1999. 5. 24.>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2.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5.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 9. 2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5.>

1. 삭제 <2015. 9. 25.>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2012. 1. 26., 2012. 9. 28., 2013. 3. 23., 2013. 4. 22., 2013. 11. 20., 2014. 6. 3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17. 12. 29., 2019. 11. 5., 2020. 9. 22., 2022. 12. 27.>

1.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의2. 삭제 <2020. 9. 22.>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 12. 27.>

1. 직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경우
2. 특정 기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를 위하여 선발된 경우
3.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2022. 12. 27.>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 9. 25., 2017. 1. 31., 2019. 11. 5., 2020. 9. 22., 2022. 12. 27.>

⑩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2015. 9. 25., 2022. 12. 27.>

⑪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인 사람 및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전직되거나 전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 9. 25., 2020. 9. 22., 2022. 12. 27.>

⑫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5. 9. 25., 2022. 12. 27.>

⑬ 인사혁신처장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평가하며, 각 기관이 해당 계획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 11. 18., 2022. 12. 27.>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5. 9. 25.]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1. 20.]

[제목개정 2015. 9. 25.]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해양수산직렬 표지운영직류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4. 2. 5., 2014. 11. 1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 2. 5.>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5.>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전문개정 2009. 9. 8.]

제49조 삭제 <2009. 3. 31.>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제4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9. 8.]

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①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4.]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02. 7. 10., 2004. 1. 20., 2007. 5. 16., 2013. 12. 16.>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21. 12. 28.>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단체·협회 등

[전문개정 2009. 9. 8.]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52조 삭제 <2008. 6. 27.>

제53조(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2. 1. 26.>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6. 15., 2012. 1. 26., 2015. 9. 25.>

[전문개정 2009. 9. 8.]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② 제51조제6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 26.>

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 26.>

⑥ 복직한 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한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9. 25.>

⑦ 제6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신설 2015. 9. 25.,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9. 8.]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④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57조의2(육아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2. 5.,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9. 8.]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16., 2022. 12. 27.>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③ 삭제 <2017.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16., 2014. 11. 19., 2017. 12. 29.>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3. 12. 16.]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9. 10., 2013. 11. 20.,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6.,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7. 12. 29.]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0. 6. 15.]

제57조의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2. 1. 26.]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21. 11. 30.>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신설 2021. 11. 30.>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 11. 30.>

⑤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신설 2021. 11. 30.>

⑥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20. 2. 25.]

제57조의8(가족돌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목개정 2021. 11. 30.]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4.]

제8장 신분보장 <개정 2002. 7. 10.>

제58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 12. 31.]

[제50조에서 이동 <2002. 7. 10.>]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9. 8.]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11. 18.]

제9장 보칙 <개정 2002. 7. 10.>

제61조 삭제 <2008. 2. 29.>

부칙 <제3877호,1969. 4.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부칙 <제5449호,197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

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방 공 무 원		국가공무원
	재경·세무·행정		행 정
1급내 지5급	농업·임업		농 림
	농업토목·토목		토 목

	유선통신·무선통신	통 신 사
기능직	기관·기계운전·기공	기 계
	영림·잡무	잡 무

⑧삭제 <1978. 12. 30.>

부칙 <제5606호,1971. 4.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5870호,1971. 12.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42호,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8호,1972. 6.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474호,1973. 1.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 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제6622호,1973. 4. 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 이상·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부칙 <제6658호,1973. 5. 2.>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92호,1973. 5.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1호,1974. 6.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부칙 <제7278호,1974. 10.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8호,1974. 1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86호,1975. 9.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940호,197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46호,1976. 6.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부칙 <제8269호,1976. 11. 5.>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91호,1977. 9.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 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95호,1977.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20호,1978.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6호,1978.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64호,1978.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 이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 이하행정

직렬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 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79. 10. 13.>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제9325호,1979. 2. 14.>(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부칙 <제9642호,1979. 10.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부칙 <제10345호,1981. 6.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제11024호,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05호,1983.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 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455호,1984. 6. 29.>(고용직공무원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부칙 <제11602호,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38호,198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50호,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잠업·연초·식물방역·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113호,1987. 4. 1.>(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전매"를 삭제한다.

⑥생략

부칙 <제12339호,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기직렬의 공무원중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이 영에 의한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의 직급란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직급	개정된 직급
철도수	철도원
체신수	체신원
토목수	토목원
건축수	건축원
통신수	통신원
전화수리공	전화수리원
전기수	전기원

기계수	기계원
선수	선원
등대수	등대원
기관수	기관원
조무수	조무원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 1종중 "운전원, 난방원"을 "난방원"으로 하고, 화공란 1종중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을 "도장원"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을 "사역원"으로 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56호,1989.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교육청"으로 본다.

부칙 <제12704호,1989. 5.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직 렬
전 화 교 환	교 환
조 명	전 기
인쇄, 정리(기계분야)	기 계
자 동 차 운 전	운 전
분석, 인쇄기술,제염, 영화기술	화 공
제약, 실험, 전료	보 건
정 비	통 신
영림, 원예, 시험	농 림
간 호, 간호보조	간 호 조 무
요 리	위 생
방호, 경비, 수위,소 방, 감시	방 호
타자, 필경, 창고, 정리(행정분야), 전달, 무대, 소품, 봉공, 집배, 판매, 제본, 제도, 항무, 운항 기타업무	사 무 보 조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제도、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

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 6. 17.>

부칙 <제12733호,1989. 6. 17.>(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2910호,1990. 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제13225호,1990. 12. 31.>(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62>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00호,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5급 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한다.

부칙 <제13413호,1991. 7. 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내지2$ 생략

부칙 <제13615호,1992.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7호,1992. 12.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항단서 및 제17조제1항단서중 "、근로감독"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중 "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의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②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도사、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로,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를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3976호,1993. 9.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환경처소속의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전산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

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102호,1994. 1. 17.>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14499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전직임용등에 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일직군내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경력은 제3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경력으로 평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제14653호,1995. 5.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마약수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839호,1995. 1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130호,1996. 7.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249호,1996. 12. 31.>(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 다음에 산림보호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보호	산림보호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부칙 <제15599호,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는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 및 등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계급별 또는 등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일반직공무원과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도직군·보도직렬·보도직류는 각각 소년보호직군·소년보호직렬·소년보호직류로, 체신현업직군·체신현업직렬·체신현업직류는 각각 정보통신현업직군·정보통신현업직렬·정보통신현업직류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또는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1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부칙 <제15715호,1998. 2. 28.>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행정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간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제4호 후단·제6호·제9호 후단·제10호 전단·제11호 후단·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제4항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제7호·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5766호,1998. 4. 1.> (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6075호,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65호,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전문직위의 근무경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4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7108호,2001. 1.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 교육부 " 를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86>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16호,2001. 1. 29.>(여성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을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부칙 <제17420호,2001. 11. 29.>(부패방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을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7517호,2002. 2. 9.>(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을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7663호,2002. 7.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

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8232호,2004.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를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에 "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의 " 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제19조중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 " 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 으로 한다.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 총무처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제8조제1항중 " 공무원임용령 제8조제1항 " 을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 으로 한다.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 를 "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 를 "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⑫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부칙 <제18715호,2005.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급(3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5급(5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842호,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제18965호,2005. 7. 26.>(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9109호,2005. 10. 26.>(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9187호,2005. 12. 26.>(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251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 1년 ”을 각각 “ 6월 ”로 한다.

부칙 <제19431호,2006. 3. 29.>(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을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제19515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중 공안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보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운수、노동、문화、공보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과 물리직군의 물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식물검역과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수로직렬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물리직군의 기상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기상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교통직군의 교통、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가목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9787호,2006. 12. 29.>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중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0059호,2007. 5.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부칙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57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기여금은 그 공무원이 전일근무시 받게 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그 공무원의 월 보수 지급시 징수한다.

부칙 <제20604호,2008.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0호,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의 이체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구개편 또는 기능이관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원소속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이체받을 기관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임용에 관한 처분·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심사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통신직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통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방송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통신직렬 및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및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88호,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행정직렬 및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및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 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를 “ 소속장관의 ”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를 “ 3급 ”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 관세ㆍ교육행정 ”을 각각 “ 관세 ”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헌법, 행정법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헌법, 행정법, 영어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교육학개론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행정	변호사			

부칙 <제21289호,2009. 2. 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344호,2009. 3. 12.>(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49조의2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각각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1386호,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견습기간 및 임용예정계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발된 견습직원의 견습기간 및 임용예정계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717호,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3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⑥ 삭제 <2012. 1. 26.>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 1. 26.>

⑧ 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2. 1. 26.>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권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⑩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급 정보통신원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급 정보통신장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급 정보통신원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급 정보통신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6급 전화수리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7급 전화수리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8급 전화수리장 및 전화수리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8급 통신원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9급 전화수리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9급 통신원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10급 전화수리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10급 통신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전화상담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전화상담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전화상담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전화상담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전화상담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6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열관리장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7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열관리장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8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열관리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9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열관리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10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10급 열관리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화공장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화공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6급 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선박항해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7급 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선박항해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8급 선장 및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9급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10급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선박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선박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기관장 및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선박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선박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선박기관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6급 등대장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6급 등대관리장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7급 등대장 및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7급 등대관리장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8급 등대장 및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8급 등대관리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8급 표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8급 표지관리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9급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9급 등대관리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9급 표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9급 표지관리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10급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10급 등대관리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장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농림장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6급 산림보호원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6급 산림보호장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7급 산림보호원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7급 산림보호장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장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장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위생장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조리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위생장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조리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10급 조리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실무장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실무장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실무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방호장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방호장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화수리직렬의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 ”을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9조 전단,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중 “ 소속장관 ”을 각각 “ 소속 장관 ”으로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소속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 소속장관 ”을 각각 “ 소속 장관 ”으로 한다.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를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 ”을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2202호,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견기간 종료 전 복귀에 대한 협의·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민간근무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

부칙 <제22373호,2010. 9. 10.>(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부칙 <제22617호,2011. 1. 1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2691호,2011.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겸임 등 인사관리"를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 <제22834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14호,2011.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제2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 기능10급 " 을 " 기능9급(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9급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10급 " 을 " 기능9급 "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 기능9급 및 기능10급 " 을 " 기능9급 " 으로 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 기능9급 · 기능10급 " 을 " 기능9급 " 으로 한다.

부칙 <제23118호,2011.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4호,2011. 9. 29.>(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검사장 " 을 "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 " 으로 한다.

부칙 <제23555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정직렬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1 중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교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회직류 또는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91호,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24124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4380호,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7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검찰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검찰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검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을 각각 “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2),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제

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3호,2013. 4. 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52호,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따라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9급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의4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 및 제35조의4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5급 토목기장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6급 토목운영주사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6급 토목장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6급 토목운영주사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7급 토목장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7급 토목운영주사보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8급 토목원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8급 토목운영서기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9급 토목원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9급 토목운영서기보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5급 건축기장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6급 건축운영주사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6급 건축장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6급 건축운영주사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7급 건축장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7급 건축운영주사보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8급 건축원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8급 건축운영서기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9급 건축원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9급 건축운영서기보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5급 통신기장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6급 통신운영주사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6급 통신운영주사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7급 통신운영주사보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8급 통신원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8급 통신운영서기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9급 통신원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9급 통신운영서기보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5급 전화상담기장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6급 전화상담운영주사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전화상담장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6급 전화상담운영주사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전화상담장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7급 전화상담운영주사보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전화상담원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8급 전화상담운영서기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전화상담원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9급 전화상담운영서기보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5급 전기기장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6급 전기운영주사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6급 전기장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6급 전기운영주사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7급 전기장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7급 전기운영주사보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8급 전기원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8급 전기운영서기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9급 전기원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9급 전기운영서기보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5급 기계기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6급 기계운영주사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6급 기계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6급 기계운영주사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7급 기계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7급 기계운영주사보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8급 기계원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8급 기계운영서기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9급 기계원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9급 기계운영서기보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5급 열관리기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6급 열관리운영주사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열관리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6급 열관리운영주사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열관리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7급 열관리운영주사보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열관리원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8급 열관리운영서기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열관리원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9급 열관리운영서기보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5급 운전기장	기술직군 운전직렬 6급 운전주사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기술직군 운전직렬 6급 운전주사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기술직군 운전직렬 7급 운전주사보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8급 운전원	기술직군 운전직렬 8급 운전서기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9급 운전원	기술직군 운전직렬 9급 운전서기보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5급 화공기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6급 화공운영주사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화공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6급 화공운영주사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화공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7급 화공운영주사보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8급 화공원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8급 화공운영서기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9급 화공원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9급 화공운영서기보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5급 선박항해기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6급 선박항해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선박항해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6급 선박항해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선박항해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7급 선박항해운영주사보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선박항해원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8급 선박항해

	운영서기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선박항해원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9급 선박항해운영서기보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5급 선박기관기장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6급 선박기관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선박기관장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6급 선박기관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선박기관장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7급 선박기관운영주사보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선박기관원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8급 선박기관운영서기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선박기관원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9급 선박기관운영서기보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5급 등대관리기장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6급 등대관리주사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6급 등대관리장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6급 등대관리주사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7급 등대관리장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7급 등대관리주사보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8급 등대관리원 및 표지관리원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8급 등대관리서기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9급 등대관리원 및 표지관리원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9급 등대관리서기보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5급 농림기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6급 농림운영주사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6급 농림운영주사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농림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7급 농림운영주사보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8급 농림원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8급 농림운영서기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9급 농림원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9급 농림운영서기보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5급 산림보호기장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6급 산림보호운영주사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6급 산림보호장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6급 산림보호운영주사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7급 산림보호장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7급 산림보호운영주사보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8급 산림보호원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8급 산림보호운영서기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9급 산림보호원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9급 산림보호운영서기보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5급 보건기장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6급 보건운영주사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장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6급 보건운영주사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장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7급 보건운영주사보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8급 보건원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8급 보건운영서기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9급 보건원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9급 보건운영서기보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5급 간호조무기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6급 간호조무주사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간호조무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6급 간호조무주사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간호조무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7급 간호조무주사보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8급 간호조무원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8급 간호조무서기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9급 간호조무원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9급 간호조무서기보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5급 위생기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6급 위생주사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위생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6급 위생주사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위생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7급 위생주사보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위생원	기술직군 위생직렬 8급 위생서기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기술직군 위생직렬 9급 위생서기보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5급 조리기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6급 조리주사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조리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6급 조리주사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조리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7급 조리주사보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조리실무원	기술직군 조리직렬 8급 조리서기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조리실무원	기술직군 조리직렬 9급 조리서기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실무장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6급 사무운영주사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실무장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7급 사무운영주사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실무원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8급 사무운영서기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실무원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9급 사무운영서기보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5급 방호기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방호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방호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7급 방호주사보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8급 방호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8급 방호서기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9급 방호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9급 방호서기보

②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1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3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2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3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3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3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4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4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5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5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급 정보통신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6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급 정보통신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7급 우정주사보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8급 정보통신원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8급 우정서기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9급 정보통신원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9급 우정서기보

③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한 직렬(소속 장관이 담당업무 및 인력운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의 간호조무직렬·운전직렬·등대관리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설직렬등"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직제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신설직렬등의 증원 없이도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증원 없이 임용된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는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4.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5.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좌관과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③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 (별정직 ·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 을 " (별정직 · 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각각 " 임기제 공무원 " 으로 한다.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을 " 연구관 ·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기능직공무원 " 을 "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⑦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 " 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른 임용 " 으로 한다.

⑧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 " 를 "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도 " 로 한다.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 일반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 · 단서 및 제11호 중 " 일반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 일반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각각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⑩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3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⑮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 ” 을 “ (국제협력의사의 임용)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 채용하려는 ” 을 “ 임용하려는 ” 으로, “ 채용계약을 체결 ” 을 “ 임용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 ” 를 “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 ” 으로 한다.

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 을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 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 (「계약직공무원규정」의 준용) ” 을 “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 을 “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 로 한다.

1(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 군무원ㆍ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 을 “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 ” 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 로 한다.

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 ” 을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으로 한다.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기능9급 ” 을 “ 9급 ”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 ” 을 각각 “ 6급 이하 직원 ” 으로 한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별정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 일반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 지방계약직공무원 ” 을 “ 지방임기제공무원 ” 으로, “ 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 을 “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 ” 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 를 “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 를 “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 로 한다.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 을 "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을 "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 으로, "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을 "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 으로,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을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 " 을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 으로 한다.

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을 " 외교부 소속 공무원 " 으로 한다.

3$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 " 을 " 연구원 " 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 " 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 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 을 " 공무원 " 으로 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 을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 「계약직공무원규정」 " 을 " 「공무원임용령」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 를 “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 으로 한다.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9항 중 “ 계약직 지방공무원 ” 을 “ 지방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 을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 로,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각각 본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철도경찰직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제1호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각각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30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 철도공안 " 을 " 철도경찰 " 로 한다.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각각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 철도공안 " 을 " 철도경찰 " 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	변호사, 법무사

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5075호,2014. 1. 10.>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5137호,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유형 구분 등의 시범실시) 인사혁신처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전에 시범실시기관을 정하여 직위의 유형구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15호,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실시한 역량평가(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1)·2), 제8조제2항·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같은 항 제1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22조의5제5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41조제3항제3호, 제41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제8항·제9항·제10항, 제42조제2항 후단,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호나목, 제46조, 제4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7조의6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의2 중 "안전행정부·교육부"를 "교육부·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9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97호,2015. 7. 1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제26566호,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휴직대상 민간기업등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민간기업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부칙 <제26653호,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44호,2016. 2.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256호,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정한 지역 거주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27822호,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41조제9항,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6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20호,2017. 7. 26.>(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8572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31호,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7조의7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⑦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868호,2019.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30호,2019. 6. 25.>(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91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93호,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를 “검사장과”로 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 군에 입대하는 " 을 " 징집 또는 소집되는 "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 군에 입대한 " 을 " 징집 또는 소집된 " 으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833호,2020. 7. 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42호,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사전 승인 사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전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직렬 및 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행정직군 행정직렬 운수직류	행정직군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
행정직군 방호직렬 경비직류	행정직군 방호직렬 방호직류
기술직군 공업직렬 야금직류	기술직군 공업직렬 금속직류
기술직군 농업직렬 잠업직류	기술직군 농업직렬 일반농업직류
기술직군 농업직렬 농화학직류	기술직군 농업직렬 일반농업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수산제조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수산증식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수산물검사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등대관리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표지운영직류
기술직군 약무직렬 약제직류	기술직군 약무직렬 약무직류
기술직군 전산직렬 정보관리직류	기술직군 전산직렬 데이터직류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1337호,2020. 12. 29.>(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62호,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6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5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⑨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151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3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원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개정 2020. 9. 22.>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보호	보호			보호 사무관	보호 주사	보호 주사보	보호 서기	보호 서기보
	검찰	검찰			검찰 사무관	검찰 주사	검찰 주사보	검찰 서기	검찰 서기보
	마약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사무관	마약수사 주사	마약수사 주사보	마약수사 서기	마약수사 서기보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사무관	출입국 관리 주사	출입국 관리 주사보	출입국 관리 서기	출입국 관리 서기보
	철도경찰	철도경찰			철도경찰 사무관	철도경찰 주사	철도경찰 주사보	철도경찰 서기	철도경찰 서기보
	행정	일반행정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 주사	직업상담 주사보	직업상담 서기	직업상담 서기보
	세무	세무				세무 주사	세무 주사보	세무 서기	세무 서기보
	관세	관세				관세 주사	관세 주사보	관세 서기	관세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사회복지 주사	사회복지 주사보	사회복지 서기	사회복지 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 사무관	통계 주사	통계 주사보	통계 서기	통계 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감사	감사		감사관	부감사관	감사 주사	감사 주사보	감사 서기	감사 서기보
	방호	방호			방호 사무관	방호 주사	방호 주사보	방호 서기	방호 서기보

기술	공업	일반기계	부이사관	기술서기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공업서기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	일반농업			농업사무관	농업주사	농업주사보	농업서기	농업서기보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임업	산림조경			임업사무관	임업주사	임업주사보	임업서기	임업서기보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	수의			수의사무관	수의주사	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해양수산사무관	해양수산주사	해양수산주사보	해양수산서기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시설							
		표지운영							
	기상	기상			기상사무관	기상주사	기상주사보	기상서기	기상서기보
		지진							
	보건	보건			보건사무관	보건주사	보건주사보	보건서기	보건서기보
		방역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사무관	의료기술주사	의료기술주사보	의료기술서기	의료기술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사무관	식품위생주사	식품위생주사보	식품위생서기	식품위생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의무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약무사무관	약무주사	약무주사보		
	간호	간호			간호사무관	간호주사	간호주사보	간호서기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무관	간호조무주사	간호조무주사보	간호조무서기	간호조무서기보

기술	환경	일반환경	부이사관	기술서기관	환경사무관	환경주사	환경주사보	환경서기	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항공사무관	항공주사	항공주사보	항공서기	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관제							
	시설	도시계획			시설사무관	시설주사	시설주사보	시설서기	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재안전사무관	방재안전주사	방재안전주사보	방재안전서기	방재안전서기보
	전산	전산개발			전산사무관	전산주사	전산주사보	전산서기	전산서기보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방송통신	통신사			방송통신사무관	방송통신주사	방송통신주사보	방송통신서기	방송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	방송무대기술			방송무대사무관	방송무대주사	방송무대주사보	방송무대서기	방송무대서기보
		방송제작							
	운전	운전			운전사무관	운전주사	운전주사보	운전서기	운전서기보
	위생	위생			위생사무관	위생주사	위생주사보	위생서기	위생서기보
		사역							
	조리	조리			조리사무관	조리주사	조리주사보	조리서기	조리서기보

관리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주사	토목운영 주사보	토목운영 서기	토목운영 서기보
	건축운영	건축운영				건축운영 주사	건축운영 주사보	건축운영 서기	건축운영 서기보
		목공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주사	통신운영 주사보	통신운영 서기	통신운영 서기보
	전화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주사	전화상담 운영 주사보	전화상담 운영 서기	전화상담 운영 서기보
	전기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주사	전기운영 주사보	전기운영 서기	전기운영 서기보
	기계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주사	기계운영 주사보	기계운영 서기	기계운영 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주사	열관리 운영 주사보	열관리 운영 서기	열관리 운영 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화공운영 주사	화공운영 주사보	화공운영 서기	화공운영 서기보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주사	선박항해 운영 주사보	선박항해 운영 서기	선박항해 운영 서기보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주사	선박기관 운영 주사보	선박기관 운영 서기	선박기관 운영 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농림운영 주사	농림운영 주사보	농림운영 서기	농림운영 서기보
		원예운영							
	산림보호 운영	산림보호 운영				산림보호 운영 주사	산림보호 운영 주사보	산림보호 운영 서기	산림보호 운영 서기보
	보건운영	보건운영				보건운영 주사	보건운영 주사보	보건운영 서기	보건운영 서기보
	사무운영	조무운영				사무운영 주사	사무운영 주사보	사무운영 서기	사무운영 서기보
		타자운영							
		전산운영							
		제도운영							
		필기운영							
		사서운영							
		편집운영							
		집배운영							
		기상관측 운영							
		감식운영							

■ 공무원임용령 [별표 2] <개정 2013.11.20>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제3조제4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우정 1급	우정 2급	우정 3급	우정 4급	우정 5급	우정 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우정	우정	우정	우정 사무관	우정 사무관	우정 주사	우정 주사	우정 주사	우정 주사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 공무원임용령 [별표 3] 삭제 <2013.11.20>

■ 공무원임용령 [별표 4] <개정 2012.1.26>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1항제10호 관련)

구 분	계 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 사	8년	4년	-	-
	석 사	12년	8년	4년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개정 2022. 12. 27.>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6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	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5] <개정 2017. 12. 29.>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33조 및 제34조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6] 삭제 <2005.12.30>

■ 공무원임용령 [별표 7] 삭제 <2011.3.7>

[별지 서식] 삭제 <2009.3.31>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7호, 2023. 8. 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 - 201 - 8204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16.>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신설 2017. 1. 10.>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20. 9. 22.>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1. 4. 4., 2011. 11. 1., 2012. 11. 27., 2013. 2. 20.,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5. 5. 6.>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 6. 29.>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7.>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 8. 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개정 2011. 11. 1., 2013. 4. 22.>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11. 27., 2014. 10. 8., 2015. 5. 6., 2018. 12. 18.>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 규정된 외국어에 한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3. 12. 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은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1. 11. 1., 2012. 6. 29., 2014. 10. 8., 2015. 5. 6.>

③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4. 4., 2012. 6. 29.>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제29조·제37조·제39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5.]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인사조직 직류의 필수과목 중 인사·조직론의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 10. 8., 2015. 12. 30.>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4.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5. 9. 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응시자격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채용시험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3조의3·제23조의4·제25조·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1. 27.,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8. 12. 18.>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20.]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1. 11. 1.>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8., 2014. 11. 19.>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
2.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신설 2011. 11. 1., 2012. 6. 29.>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1. 11. 1.>
④ 삭제 <2013. 12. 4.>
[본조신설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 10. 8.]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10. 8.>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④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9. 10., 2014. 10. 8.>

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⑥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4. 10. 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4. 10. 8.]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4. 10. 8.>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4. 22., 2014. 10. 8.>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신설 2013. 4. 22., 2014. 10. 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22., 2014. 10. 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4. 22., 2017. 1. 3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4. 10. 8.]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외교 분야: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2. 지역외교 분야: 특정 지역의 외교통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3. 외교 전문 분야: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법 등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시험의 단계별 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8. 12. 18.>

1. 일반외교 분야: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서류전형. 이 경우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제3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4. 10. 8.>

④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응시자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별표 3의2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 10. 8.>

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ㆍ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15. 12. 30.>

[본조신설 2012. 11. 27.]

[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15. 12. 30., 2018. 12. 18.>

③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4. 22., 2018. 12. 18.>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⑤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한 경우에는 별표 6의2에서 정한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신설 2013. 4. 22., 2015. 12. 30., 2018. 12. 1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처음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22., 2018. 12. 1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4. 22., 2017. 1. 31.>

[본조신설 2012. 11. 27.]

[제목개정 2018. 12. 18.]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 또는 관련 전문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첫 번째 단계 면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제3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면접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13. 12. 4.>

④ 제1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4., 2018. 12. 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12. 4.]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5. 6., 2018. 12. 18.>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 11. 30.>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에 상당하는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2. 4.>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12. 4., 2014. 11. 19.>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3. 12. 4.>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2021. 11. 30.>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⑧ 제2항 본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2. 4.>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2017. 1. 31., 2021. 11. 30.>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12. 4.]

[시행일: 2024. 1. 1.] 제25조제2항(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1. 11. 1.>

③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2023. 8. 1.>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9., 2013. 3. 23., 2013. 4. 22., 2013. 12. 4., 2014. 11. 19., 2015. 5. 6., 2018. 5. 8.>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삭제 <2018. 5. 8.>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신설 2018. 5. 8.>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10항 단서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2018. 5. 8.>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8. 5. 8.>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 2018. 5. 8.>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1. 4. 4., 2011. 11. 1., 2014. 10. 8., 2018. 5. 8.>

⑦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8. 5. 8.>

⑧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4. 10. 8., 2018. 5. 8.>

⑨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8. 5. 8.>

⑩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

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8. 5. 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4. 4., 2011. 1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0. 8., 2014. 11. 19., 2015. 5. 6., 2018. 5. 8.>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4.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신설 2013. 4. 22., 2014. 10. 8.>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1. 19., 2017. 1. 31., 2020. 9. 2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제 <2015. 5. 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③ 삭제 <2015. 5. 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5. 6., 2017. 1. 31.>

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5. 6., 2018. 12.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신설 2015. 5. 6.>

⑦ 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11. 18., 2018. 12. 18.]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31.>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개정 2018. 5. 8., 2021. 4. 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제23조의3·제23조의4·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2. 6. 29., 2012. 11. 27., 2018. 12. 18., 2019. 11. 5.>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개정 2011. 11. 1., 2012. 11. 27.>

③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삭제 <2019. 11. 5.>

⑤ 삭제 <2019. 11. 5.>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5. 5. 6., 2017. 1. 31.>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0. 2. 12., 2015. 5. 6., 2017. 1. 31., 2023. 4. 11.>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9. 22., 2023. 8. 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12. 4.>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4. 10. 8., 2022.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

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개정 2009. 2. 6.>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통계ㆍ감사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 2. 20., 2013. 12. 16.>
④ 삭제 <2013. 12. 4.>
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4. 10. 8.>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② 제4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4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2012. 5. 1., 2012. 11. 27.>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2011. 11. 1., 2022. 11.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0. 2. 12., 2011. 11. 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12. 4., 2014. 10.

8.>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2., 2022. 1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4. 4.]

제49조(시험의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② 삭제 <2020. 9. 22.>

[본조신설 2011. 4. 4.]

[제목개정 2011. 11. 1.]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2. 12., 2014. 10. 8., 2014. 11. 1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8.>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4. 10. 8.,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 삭제 <2018. 12. 18.>

부칙 <제18424호,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2조·제23조·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3조제3항·제25조제3항·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제38조제2항·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훈령·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8617호,200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716호,2005. 2. 2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3항 후단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 <제18842호,2005. 5. 26.>(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제18932호,2005. 6. 30.>(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19252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 삭제 <2013. 2. 20.>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459호,2006. 4. 2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 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 2급은 10년 이상 " 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 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08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060호,2007.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2호,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0호,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88호,2008. 6. 27.>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헌법, 행정법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헌법, 행정법, 영어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교육학개론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행정	변호사			

부칙 <제21086호,2008.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10호,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721호,2009.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시설 직렬의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과 통신 직렬의 직렬명에 관한 부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사무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2. 12.>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29호,2010.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호, 별표 1(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835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23014호,2011. 7. 4.>(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9급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3277호,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4조제4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경채·전직·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6. 29.>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특별채용시험의 지원·관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관리"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로 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수	부교수	조교수				

⑪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59호,2012. 5. 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9호,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별표 1(교정 직렬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정 직렬 시험과목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교정 직렬 교정 직류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00호,2012.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합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80호,2013. 2. 2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검찰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검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4호,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2. 4.>

부칙 <제24896호,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을 각각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 철도공안 ”을 “ 철도경찰 ”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	변호사, 법무사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648호,2014.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 후단,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3조의3제1항·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및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 제23조제4항 전단, 제23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제4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제4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64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1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33호,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직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2, 별표 3(비고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5(전산 직렬 정보보호 직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제2조(영어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인정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토익, 토플 등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시행사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별표 3 비고 제1호 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고시한 소명방법에 따라 시험 점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헌법과목 신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으로서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5조(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실시된 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66호,2015. 9. 25.>(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654호,2015. 11. 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0호,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5급 이상 공채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생략

부칙 <제27823호,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및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78호,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29호,2018. 7. 3.>(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374호,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0200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46호,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 대체 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설되는 직류의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표지운영 직류 및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채의 제1차 필수란의 개정규정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국어(한문 포함)"로 본다.

제4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1, 별표 5,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14호,2021. 4.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63호,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98호,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11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47조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 국가보훈처장 "을 "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6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57호,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3항, 제23조의4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4조제6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개정 2020. 9. 22.>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직류	교 정 교 정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교정학
			선택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제2차	필수	교정학
			선택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8급 및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채	제1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보 호	검찰	마약수사
			직류	보 호	검찰	마약수사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영어
			선택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중 1과목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중 1과목	행정학, 경제학, 세법, 약물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회계학, 법의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약물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형법	형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선택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중 1과목		영어, 행정법, 약물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행 정	
			직류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일반행정	인사조직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선택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경제학, 사회학 중 1과목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형사소송법		인사·조직론, 행정학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제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형법, 행정학 중 1과목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경제학, 영어	헌법, 경제학,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역, 영역,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 정		
			직류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선택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중 1과목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중 1과목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학	경제학, 재정학, 행정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경채·전직	제1차	필수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경제학	영어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선택	법, 노동법, 사회법, 민사소송법, 영어, 독어, 불어, 러	행정학, 재정학, 회계학, 통계	국제경제학, 국제법, 무역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 정			
			직류	고 용 노 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노동법, 노동경제학, 행정법, 경제학	문화사, 매스컴론,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선택	사회학, 경영학, 노사관계론,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중 1과목	사회학, 한국사상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술사, 미학, 관광학, 문화재관리학, 커뮤니케이션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한국언론사, 공공관계론,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 중 1과목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상법, 경영학, 세법, 통계학, 경제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경영학, 노동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사회학, 산업조직론 중 2과목	문화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학, 관광학, 종교학, 문화재관리학, 매스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공공관계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 중 2과목	교육학	
			선택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노동법, 노동경제학, 경제학	문화사, 행정학, 매스컴론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헌법, 행정법,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노동법	문화사	교육학	회계학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선택	사회학, 경제학,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중 1과목	매스컴론, 한국사상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술사, 미학, 관광학, 종교학, 인류학, 문화재관리학, 커뮤니케이션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세무	관세	직업상담
			직류	세무	관세	직업상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제2차	필수			
			선택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회계학, 세법, 재정학	무역학, 관세법, 재정학	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노동법
		제2차	필수	세법, 회계학	관세법	직업상담·심리학
			선택		무역학, 경제학, 형법총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직업정보론, 노동경제학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사회복지	통 계	사 서
			직류	사회복지	통 계	사 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참고봉사론, 정보학개론
			선택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중 1과목	경제수학, 표본조사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자료구조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회귀분석 중 1과목	인문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동양서지,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통계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선택	사회학, 사회정책, 사회법,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경제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자료선택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헌법,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복지학	행정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통계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선택	사회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표본조사론, 경제수학, 경제	

계급	시험과목		직렬	감 사	공 업	
			직류	감 사	일반기계	농업기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정학,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선택	상법, 형법총론, 경영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행정학 중 1과목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중 1과목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농업경영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재정학	기계공작법	농업동역학
			선택	회계학, 행정학 중 1과목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재정학, 회계학, 경제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자동제어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재정학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행정법, 회계학	기계공작법	농업동역학
			선택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 업		
			직류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항공역학	전기자기학
			선택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중 1과목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우주공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항공역학	전기자기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 업		
			직류	전 자	원자력	조 선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선택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핵화학공학, 원자로안전공학 중 1과목	선박유체역학, 조선공작법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원자로공학	조선해양공학
			선택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핵화학공학 중 1과목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선박유체역학, 조선공작법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물리학개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안전공학, 보건물리학	물리학개론,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유체역학
	경채·[illegible]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illegible]	필수	[illegible]자기학	원자로공학	조선해양공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 업		
			직류	금 속	섬 유	화 공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제련원리, 물리야금, 주조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	분말야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방사공학 중 1과목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금속학, 행정법총론	섬유공학개론, 행정법총론	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제련원리	섬유재료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선택	분말야금, 주조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방사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일반금속학, 행정법, 영어	섬유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화학야금, 물리야금, 주조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제련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화학개론, 방적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가공학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금속학	천연섬유학	화학공학개론
		제2차	필수	제련원리, 주조공학	인조섬유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선택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 업		농 업
			직류	자 원	물 리	일반농업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	물리탐사, 응용지구화학, 암석역학, 자원경제학, 석유개발공학 중 1과목	양자역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자원공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재배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자원개발공학	일반역학	식용작물학
			선택	지질학, 물리탐사, 응용지구화학, 암석역학, 자원경제학, 자원처리공학, 석유개발공학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양자역학, 고체물리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	토양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자원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재배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광물처리공학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업경영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	물리학개론,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광학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자원공학개론	물리학개론	재배학
		제2차	필수	자원개발공학	일반역학	식용작물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농 업
			직류	식물검역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선택	토양학, 잡초학, 농약학, 재배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작물보호학
			선택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농약학, 잡초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농업해충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재배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제2차	필수	작물보호학
			선택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잡초학, 농약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농 업		임 업
			직류	축 산	생명유전	산림조경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축산경영학	작물육종학, 유전학, 생화학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선택	가축번식학, 축산가공학, 초지학 중 1과목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식물분류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축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조림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가축사양학	작물육종학	조경계획학
			선택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중 1과목	생화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축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조경계획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조림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경채·	제1차	필수	축산학개론	생물학개론	조림학
			필수	가축사양학	작물육종학	조경계획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임 업		
			직류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	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선택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임업경제학, 산림공학 중 1과목	목재건조학, 목질재료학, 목구조학, 목재해부학, 펄프학, 임산제조학, 제지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림학, 행정법총론	조림학, 행정법총론	수목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임업경영학	산림보호학	목재해부학
			선택	산림보호학, 산림정책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산림공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수목학 중 1과목	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	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	생물학개론, 목재이학, 목재화학, 목재가공학
	경채·전직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제2차	필수	조림학	산림보호학	목재해부학
			선택	수목학, 산림보호학, 산림공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	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수 의	해 양 수 산	
			직류	수 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선택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내과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공학 중 1과목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행정법총론	해양학개론, 행정법총론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선택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내과학, 수의산과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화학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공학 중 1과목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행정법, 영어	해양학개론, 행정법, 영어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물리해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생물학개론,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
	경채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해양학개론	수산학개론
			필수	수의보건학	해양오염학	수산생물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 양 수 산
			직류	어 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선택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선택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어구어법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선택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 양 수 산	
			직류	일반선박	선박항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선택	해사영어, 해상보험론, 해상안전론, 조선공학, 해사법규 중 1과목	해운론, 선박기관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항해계기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해상안전론	항해학
			선택	선박기관학, 항해학 중 1과목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상안전론	물리학개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선박개론
		제2차	필수	해상안전론	항해학
			선택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사영어, 해상보험론, 해운론 중 1과목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 양 수 산		
			직류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 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해사영어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선택	항해학,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자공학, 해운론 중 1과목	선박조종학, 무선통신공학, 항로표지론, 해상교통법 중 1과목	수심측량, 지도제작(해도), 수로도지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총론	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지문항해학
			선택	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기공학, 전자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1과목	해사영어, 해상교통법,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목	해양물리, 수심측량, 지도제작(해도), 수로도지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 영어	지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항해학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물리학개론,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경채·전직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해상교통관리론	지학개론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지문항해학
			선택	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	해상교통법, 해사영어,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	해양물리, 수심측량, 전자공학, 전기공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양수산		기 상	
			직류	해양교통시설	표지운영	기 상	지 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항해학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항해학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선택	표지통론, 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항로표지개론, 전자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중 1과목	지구물리자료처리, 지구물리수치해석, 지구내부물리학, 탐사지구물리학, 지구동력학, 암석역학, 구조지질학, 지하수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기상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지진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표지통론	항로표지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선택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전자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기상역학, 기후학,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기상학개론, 행정법, 영어	일반지진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표지통론,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항로표지개론,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지구과학개론
6급 및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전파공학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전파공학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지구과학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보 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직류	보건	방역	의료기술	식품위생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전염병관리	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선택	보건통계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환경보건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임상병리학,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총론	보건학, 행정법총론	보건학, 행정법총론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보건행정학	식품저장학
			선택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경력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 영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 영어

계급	시험과목		직렬	의 무		약 무
			직류	일반의무	치 무	약 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산업 및 환경보건	예방치과학,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선택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이비인후과학, 신경외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방사선과학, 마취과학, 가정의학 중 1과목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소아치과학, 치주과학, 치과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구강병리학 중 1과목	생약학, 약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구강보건학, 행정법총론	화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역학	예방치과학	약제학
			선택	보건행정학, 산업 및 환경보건 중 1과목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소아치과학, 치주과학, 치과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구강병리학 중 1과목	약전학, 생물학, 생약학, 약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화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6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간 호	환 경
			직류	간 호	일반환경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	모·아간호학,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1과목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간호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간호관리학	환경화학
			선택	지역사회간호학,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1과목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간호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환경계획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경채·전	제1차	필수	간호학	환경공학
			필수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환경화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환 경		
			직류	수 질	대 기	폐기물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선택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유체역학 중 1과목	산업폐기물처리,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선택	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 중 1과목	미기상학,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대기오염분석, 유체역학 중 1과목	유독물질관리,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개론,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리수문학	화학개론,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연소공학	화학개론,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환경미생물학
	경채·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필수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항 공		
			직류	일반항공	조 종	정 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정책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선택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국제항공기구, 항공정책 중 1과목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공기제어장치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항공법규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역학
			선택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항공정책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공기제어장치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정책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6급 및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법규
	경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항공개론	항공개론
			필수	항공법규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역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항 공	시 설	
			직류	관 제	도시계획	일반토목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	공역계획론, 항행안전시설, 항공통신정보 중 1과목	공공시설계획,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도시계획,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
			선택		단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도시계획,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교통업무, 항행안전시설,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도시계획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항공법규, 항공교통업무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
			선택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 설		
			직류	농업토목	건 축	지 적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지적학,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선택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농촌계획학 중 1과목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지적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응용역학	건축계획학	지적측량학
			선택	측량학,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토질역학, 농촌계획학 중 1과목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지적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구조역학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응용측량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농업수리학, 농지조성학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경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지적학
			필수	응용역학	건축계획학	행정법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 설		
			직류	측 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5급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선택	천문측량학, 사진측량학, 지도학, 중력 및 지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사회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	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측지학	교통계획	교통계획
			선택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량제외), 사진측량학, 지도학, 중력 및 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	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6급및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측지학, 측량학, 사진측량학	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설계, 교통운영
	경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교통공학개론	교통공학개론
		제2차	필수	측지학	교통계획	교통계획
			선택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	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방재안전	전산		
			직류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론
			선택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중 1과목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중 1과목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행정학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운영체제론,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통계, 알고리즘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총론	디자인기획론, 행정법총론	재난관리론, 행정법총론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공공디자인행정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선택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단지계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조경식물학 중 1과목	공간디자인론,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옥외광고디자인론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통계, 알고리즘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 영어	디자인기획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6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조경재료 및 시공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
		제1차	필수	조경학	공간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구조론	알고리즘

계급	시험과목		직렬	전 산	방송통신	
			직류	정보보호	통신사	통신기술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자료구조론 중 1과목	전자회로, 전송이론,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네트워크 보안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중 1과목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경채	제1차	필수	네트워크 보안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방송통신	
			직류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선택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전자계산기, 디지털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비 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개정 2021. 11. 30.>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직류	교 정 교 정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교정학
			선택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제2차	필수	교정학
			선택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8급 및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채	제1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보 호	검찰	마약수사
			직류	보 호	검찰	마약수사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영어
			선택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중 1과목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중 1과목	행정학, 경제학, 세법, 약물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회계학, 법의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약물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형법	형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선택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중 1과목		영어, 행정법, 약물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행 정	
			직류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일반행정	인사조직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선택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경제학, 사회학 중 1과목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형사소송법		인사·조직론, 행정학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제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형법, 행정학 중 1과목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경제학, 영어	헌법, 경제학,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 정		
			직류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선택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중 1과목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중 1과목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학	경제학, 재정학, 행정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경채·전직	제1차	필수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경제학	영어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국제법, 노동법, 사회법, 민사	행정학, 재정학, 회계학, 통계	국제경제학, 국제법, 무역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 정			
			직류	고 용 노 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노동법, 노동경제학, 행정법, 경제학	문화사, 매스컴론,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선택	사회학, 경영학, 노사관계론,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중 1과목	사회학, 한국사상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술사, 미학, 관광학, 문화재관리학, 커뮤니케이션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한국언론사, 공공관계론,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 중 1과목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상법, 경영학, 세법, 통계학, 경제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경영학, 노동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사회학, 산업조직론 중 2과목	문화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학, 관광학, 종교학, 문화재관리학, 매스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공공관계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 중 2과목	교육학	
			선택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노동법, 노동경제학, 경제학	문화사, 행정학, 매스컴론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헌법, 행정법,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노동법	문화사	교육학	회계학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선택	사회학, 경제학,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중 1과목	매스컴론, 한국사상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술사, 미학, 관광학, 종교학, 인류학, 문화재관리학, 커뮤니케이션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세무	관세	직업상담
			직류	세무	관세	직업상담
5급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제2차	필수			
			선택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회계학, 세법, 재정학	무역학, 관세법, 재정학	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
6급및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노동법
		제2차	필수	세법, 회계학	관세법	직업상담·심리학
			선택		무역학, 경제학, 형법총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직업정보론, 노동경제학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사회복지	통 계	사 서
			직류	사회복지	통 계	사 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참고봉사론, 정보학개론
			선택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중 1과목	경제수학, 표본조사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자료구조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회귀분석 중 1과목	인문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동양서지,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통계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선택	사회학, 사회정책, 사회법,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경제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자료선택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헌법,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복지학	행정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통계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선택	사회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표본조사론, 경제수학, 경제	

계급	시험과목		직렬	감 사	공 업	
			직류	감 사	일반기계	농업기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정학,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선택	상법, 형법총론, 경영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행정학 중 1과목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중 1과목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농업경영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재정학	기계공작법	농업동역학
			선택	회계학, 행정학 중 1과목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재정학, 회계학, 경제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자동제어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재정학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행정법, 회계학	기계공작법	농업동역학
			선택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 업		
			직류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항공역학	전기자기학
			선택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중 1과목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우주공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항공역학	전기자기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 업		
			직류	전 자	원자력	조 선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선택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핵화학공학, 원자로안전공학 중 1과목	선박유체역학, 조선공작법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원자로공학	조선해양공학
			선택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핵화학공학 중 1과목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선박유체역학, 조선공작법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물리학개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안전공학, 보건물리학	물리학개론,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유체역학
	경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필수	전기자기학	원자로공학	조선해양공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 업		
			직류	금 속	섬 유	화 공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제련원리, 물리야금, 주조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	분말야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방사공학 중 1과목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금속학, 행정법총론	섬유공학개론, 행정법총론	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제련원리	섬유재료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선택	분말야금, 주조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방사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일반금속학, 행정법, 영어	섬유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화학야금, 물리야금, 주조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제련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화학개론, 방적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가공학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금속학	천연섬유학	화학공학개론
		제2차	필수	제련원리, 주조공학	인조섬유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선택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 업		농 업
			직류	자 원	물 리	일반농업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	물리탐사, 응용지구화학, 암석역학, 자원경제학, 석유개발공학 중 1과목	양자역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자원공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재배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자원개발공학	일반역학	식용작물학
			선택	지질학, 물리탐사, 응용지구화학, 암석역학, 자원경제학, 자원처리공학, 석유개발공학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양자역학, 고체물리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	토양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자원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재배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광물처리공학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업경영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	물리학개론,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광학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경채·전	제1차	필수	자원공학개론	물리학개론	재배학
			필수	자원개발공학	일반역학	식용작물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농 업
			직류	식물검역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선택	토양학, 잡초학, 농약학, 재배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작물보호학
			선택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농약학, 잡초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농업해충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재배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제2차	필수	작물보호학
			선택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잡초학, 농약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농 업		임 업
			직류	축 산	생명유전	산림조경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축산경영학	작물육종학, 유전학, 생화학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선택	가축번식학, 축산가공학, 초지학 중 1과목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식물분류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축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조림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가축사양학	작물육종학	조경계획학
			선택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중 1과목	생화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축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조경계획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조림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경채·	제1차	필수	축산학개론	생물학개론	조림학
			필수	가축사양학	작물육종학	조경계획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임 업		
			직류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	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선택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임업경제학, 산림공학 중 1과목	목재건조학, 목질재료학, 목구조학, 목재해부학, 펄프학, 임산제조학, 제지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림학, 행정법총론	조림학, 행정법총론	수목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임업경영학	산림보호학	목재해부학
			선택	산림보호학, 산림정책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산림공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수목학 중 1과목	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	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	생물학개론, 목재이학, 목재화학, 목재가공학
	경채·전직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제2차	필수	조림학	산림보호학	목재해부학
			선택	수목학, 산림보호학, 산림공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	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수 의	해 양 수 산	
			직류	수 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선택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내과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공학 중 1과목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행정법총론	해양학개론, 행정법총론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선택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내과학, 수의산과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화학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공학 중 1과목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행정법, 영어	해양학개론, 행정법, 영어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물리해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생물학개론,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
	경채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해양학개론	수산학개론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해양오염학	수산생물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 양 수 산
			직류	어 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선택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선택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어구어법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선택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 양 수 산	
			직류	일반선박	선박항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선택	해사영어, 해상보험론, 해상안전론, 조선공학, 해사법규 중 1과목	해운론, 선박기관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항해계기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해상안전론	항해학
			선택	선박기관학, 항해학 중 1과목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상안전론	물리학개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선박개론
		제2차	필수	해상안전론	항해학
			선택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사영어, 해상보험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 양 수 산		
			직류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 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해사영어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선택	항해학,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자공학, 해운론 중 1과목	선박조종학, 무선통신공학, 항로표지론, 해상교통법 중 1과목	수심측량, 지도제작(해도), 수로도지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총론	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지문항해학
			선택	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기공학, 전자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1과목	해사영어, 해상교통법,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목	해양물리, 수심측량, 지도제작(해도), 수로도지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 영어	지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항해학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물리학개론,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경채·전직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해상교통관리론	지학개론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지문항해학
			선택	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	해상교통법, 해사영어,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	해양물리, 수심측량, 전자공학, 전기공학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양수산		기 상	
			직류	해양교통시설	표지운영	기 상	지 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항해학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항해학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선택	표지통론, 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항로표지개론, 전자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중 1과목	지구물리자료처리, 지구물리수치해석, 지구내부물리학, 탐사지구물리학, 지구동력학, 암석역학, 구조지질학, 지하수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기상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지진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표지통론	항로표지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선택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전자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기상역학, 기후학,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기상학개론, 행정법, 영어	일반지진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표지통론,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항로표지개론,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지구과학개론
6급 및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전파공학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전파공학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지구과학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보 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직류	보건	방역	의료기술	식품위생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전염병관리	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선택	보건통계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환경보건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임상병리학,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총론	보건학, 행정법총론	보건학, 행정법총론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보건행정학	식품저장학
			선택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특수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 영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 영어

계급	시험과목		직렬	의 무		약 무
			직류	일반의무	치 무	약 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산업 및 환경보건	예방치과학,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선택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이비인후과학, 신경외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방사선과학, 마취과학, 가정의학 중 1과목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소아치과학, 치주과학, 치과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구강병리학 중 1과목	생약학, 약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구강보건학, 행정법총론	화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역학	예방치과학	약제학
			선택	보건행정학, 산업 및 환경보건 중 1과목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소아치과학, 치주과학, 치과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구강병리학 중 1과목	약전학, 생물학, 생약학, 약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화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6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간 호	환 경
			직류	간 호	일반환경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	모·아간호학,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1과목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간호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간호관리학	환경화학
			선택	지역사회간호학,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1과목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간호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환경계획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경채·전	제1차	필수	간호학	환경공학
			필수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환경화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환 경		
			직류	수 질	대 기	폐기물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선택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유체역학 중 1과목	산업폐기물처리,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선택	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 중 1과목	미기상학,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대기오염분석, 유체역학 중 1과목	유독물질관리,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개론,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리수문학	화학개론,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연소공학	화학개론,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환경미생물학
	경채·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필수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항 공		
			직류	일반항공	조 종	정 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정책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선택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국제항공기구, 항공정책 중 1과목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공기제어장치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항공법규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역학
			선택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항공정책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공기제어장치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정책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6급 및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법규
	경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항공개론	항공개론
			필수	항공법규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역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항 공	시 설	
			직류	관 제	도시계획	일반토목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	공역계획론, 항행안전시설, 항공통신정보 중 1과목	공공시설계획,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도시계획,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
			선택		단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도시계획,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교통업무, 항행안전시설,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도시계획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항공법규, 항공교통업무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
			선택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 설		
			직류	농업토목	건 축	지 적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지적학,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선택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농촌계획학 중 1과목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지적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응용역학	건축계획학	지적측량학
			선택	측량학,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토질역학, 농촌계획학 중 1과목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지적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구조역학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응용측량학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농업수리학, 농지조성학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경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지적학
			필수	응용역학	건축계획학	행정법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 설		
			직류	측 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선택	천문측량학, 사진측량학, 지도학, 중력 및 지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사회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	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측지학	교통계획	교통계획
			선택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량제외), 사진측량학, 지도학, 중력 및 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	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측지학, 측량학, 사진측량학	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설계, 교통운영
	경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교통공학개론	교통공학개론
		제2차	필수	측지학	교통계획	교통계획
			선택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방재안전	전산		
			직류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론
			선택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중 1과목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중 1과목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행정학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운영체제론,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통계, 알고리즘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총론	디자인기획론, 행정법총론	재난관리론, 행정법총론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공공디자인행정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선택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단지계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조경식물학 중 1과목	공간디자인론,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옥외광고디자인론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통계, 알고리즘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 영어	디자인기획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6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조경재료 및 시공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
		제1차	필수	조경학	공간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구조론	알고리즘

계급	시험과목		직렬	전 산	방송통신	
			직류	정보보호	통신사	통신기술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자료구조론 중 1과목	전자회로, 전송이론,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네트워크 보안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중 1과목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6급 및 7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경채	제1차	필수	네트워크 보안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방송통신	
			직류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선택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전자계산기, 디지털공학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비 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 <개정 2018. 12. 18.>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

1. 외교통상직

구분	시험과목		직렬	외교통상
			직류	외교통상
5등급 이상	경채·전직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제2차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과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중 1과목

비고: "경채"란 외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2.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구분	시험과목		직렬	외무영사	외교정보기술	비고
			직류	외무영사	외교정보기술	
5등급 이상	경채·전직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헌법, 영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은 전공한 특수외국어로 한다.
		제2차	필수·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중 1과목과 국제법, 행정법, 국제정치학, 경제학중 1과목	전기자기학, 회로망이론, 전기공학, 통신공학,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네트워트중 2과목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필수	헌법, 국제정치학, 국	헌법, 통신공학, 데	

				문화사중 1과목		

3.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험단계	분야	과목	
제1차	일반외교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지역외교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선택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외교 전문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일반외교 분야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 Ⅰ, 학제통합논술시험 Ⅱ	

비고

1. 지역외교 분야 제1차시험에서 선택한 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다.
2.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에서 출제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 <개정 2022. 11. 15.>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

1. 외교통상직

구분	시험과목		직렬	외교통상
			직류	외교통상
5등급 이상	경제·전직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제2차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과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중 1과목

비고: "경제"란 외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2.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구분	시험과목		직렬	외무영사	외교정보기술	비고
			직류	외무영사	외교정보기술	
5등급 이상	경제·전직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헌법, 영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은 전공한 특수외국어로 한다.
		제2차	필수·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중 1과목과 국제법, 행정법, 국제정치학, 경제학중 1과목	전기자기학, 회로망이론, 전기공학, 통신공학,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네트워트중 2과목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필수	헌법, 국제정치학, 국	헌법, 통신공학, 데	

				문화사중 1과목		

3.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험단계	분야	과목	
제1차	일반외교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지역외교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선택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외교 전문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일반외교 분야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	

비고

1. 지역외교 분야 제1차시험에서 선택한 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다.
2.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에서 출제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의2] 삭제 <2011.4.4>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개정 2020. 9. 2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PBT 59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86점 이상	IBT 97점 이상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790점 이상	87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700점 이상(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800점 이상(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85점 이상(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452점 이상(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88점 이상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	625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FLEX)	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1. 30.>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Test Deutsch als Fremdsprache)을 말한다.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ôme d'□tudes en langue fran□aise)/달프(Diplôme appronfondi de langue fran□aise)를 말한다.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토르플(TORF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5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레(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B2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1. 30.>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Test Deutsch als Fremdsprache)을 말한다.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ôme d'□tudes en langue fran□aise)/달프(Diplôme appronfondi de langue fran□aise)를 말한다.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토르플(TORF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5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레(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B2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

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 <개정 2022. 11. 1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2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개정 2022. 11. 15.>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관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관사 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관제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6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관 제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전산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조리	조리	기능장(조리)	기능장(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장(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개정 2022. 11. 15.>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관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관사 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관제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6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관 제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조리	조리	기능장(조리)	기능장(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장(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6] <개정 2014.10.8.>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제21조 관련)

구 분	해 당 직 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군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을 제외한 직렬과 행정직군의 각 직렬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6의2] <신설 2015.12.30.>

외국어 선택과목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표(제23조의3제5항 단서 관련)

1.「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시험의 종류		평가기준	기준점수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60점 이상 (다만,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시험의 종류		평가기준	기준점수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70점 이상 (다만,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개정 2023. 8.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고

1. 별표 8에서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을 말한다.
5.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개정 2023. 8. 1.>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항공우주	기술사: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자력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재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 취득)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로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술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술사: 조선 기사: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선박기관	기술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 일반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선박관제	기술사: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수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기사: 일반기계,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기상	기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지진	기술사: 지질 및 기반 기사: 응용지질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수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대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폐기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항공
	정비	산업기사: 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적 측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설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조경, 자연생태복원 조경
	디자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보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조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직군, 직렬 및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별도로 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계급 / 직렬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정	교정	변호사, 법무사(7)	법무사(3)	법무사		
보호	보호					
검찰	검찰					
마약수사	마약수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철도경찰	철도경찰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 (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3)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3)	직업상담사 2급
	문화홍보	변호사				
	교육행정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 (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3)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3)	직업상담사 2급
세무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관세	관세	변호사, 관세사(7)	관세사(3)	관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통계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1급(10)	사회조사분석사 1급(6)	사회조사분석사 1급(3)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3)	사회조사분석사 2급
계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감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업	운전		철도교통안전관리 자(9)	철도교통안전관리 자(6)	철도교통안전관리 자(3)	철도교통안전관리 자

	항공우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원자력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화공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1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임업	산림조경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12)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항해사(3), 1급기관사(3)	1급항해사, 2급항해사(2), 1급기관사, 2급기관사(2)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2급기관사, 3급기관사(2)	3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선박항해 선박관제 수 로	1급항해사(3)	1급항해사, 2급항해사(2)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3급항해사, 4급항해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선박기관	1급기관사(3)	1급기관사, 2급기관사(2)	2급기관사, 3급기관사(2)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직렬 \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보건교육사 1급(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보건교육사 1급(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보건교육사 1급,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 자(5), 임상심리사 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 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 자, 임상심리사 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 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 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 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무	치과의사(2)				
약무	약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12), 조산사(12)	간호사(6), 조산사(6)	간호사(3), 조산사(3)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환경	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환경측정분석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환경측정분석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항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 (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 (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 (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 (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 (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 (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직렬 /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3)	자가용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관제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교통관제사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전산	전산개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산기기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개정 2015.5.6.>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 계급 / 직무분야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찰공무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외무공무원			외무 9등급	외무 6~8등급	외무 5등급	외무 4등급	외무 3등급	외무 2등급	외무 1등급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원, 그 밖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판사·검사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			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6년	3년	3년	3년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비고

1.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 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 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3.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 기능7급은 7급으로, 기능8급은 8급으로, 기능9급은 9급으로 본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 삭제 <2015.5.6.>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개정 2020. 9. 22.>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가산비율	5%	3%	5%	3%

비 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	6·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개정 2021. 11. 30.>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교정	교정	-	변호사, 법무사
보호	보호		
검찰	검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경찰	철도경찰	-	변호사, 법무사
행정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고용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호사
	교육행정	-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
세무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	관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통계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감사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	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항공우주	기술사: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자가용조
		기능장: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종사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공업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자력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재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업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	

		원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로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기사: 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산업기사: 전자,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1급항해사 또는 2급항해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3급항해사부터 5급항해사까지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6급항해사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기상	기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지진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사: 응용지질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방역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

			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기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수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대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측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설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우정직군과 방호·간호조무·방송무대·운전·위생·조리 직렬 및 산림환경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별도로 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개정 2022. 11. 15.>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교정	교정	-	변호사, 법무사
보호	보호		
검찰	검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경찰	철도경찰	-	변호사, 법무사
행정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고용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호사
	교육행정	-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
세무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	관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통계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감사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	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항공우주	기술사: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자가용조
		기능장: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종사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공업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자력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재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업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	

		원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로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기사: 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산업기사: 전자,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1급항해사 또는 2급항해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3급항해사부터 5급항해사까지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6급항해사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기상	기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지진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사: 응용지질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방역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

			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기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수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대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측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설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우정직군과 방호·간호조무·방송무대·운전·위생·조리 직렬 및 산림환경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별도로 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3] 삭제 <2019. 11. 5.>

[별지 서식] 삭제 <2005.12.3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 - 201 - 820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마목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삭제 <2019. 12. 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목개정 2019. 12. 24.]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9. 29.]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 9. 29.]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7조 삭제 <1998·12·31>

부칙 <제5040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1호,1970. 7.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3호,1975.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8호,1984.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255호,1987. 10.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073호,1990.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3호,1990. 12. 1.>(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내지2$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3404호,1991. 6. 28.>(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3호중 "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 을 " 의사상자보호법 " 으로 한다.

부칙 <제14446호,1994. 12. 2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 보건사회부장관 " 을 " 보건복지부장관 " 으로 한다.

⑨내지 <140> 생략

부칙 <제14838호,1995. 12. 22.> (공무원임용시험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 (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 " 를 " (채용금지) " 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5486호,1997. 9.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로 한다.

④내지3)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33호,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19229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807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81호,2008. 1. 3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 행정자치부, 철도청 " 을 " 행정안전부, 국세청 " 으로 한다.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466호,2010.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164호,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5호,2012. 6. 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 "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 "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 행정안전부 "를 " 안전행정부 "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

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 안전행정부 " 를 " 인사혁신처 " 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8호,2015. 9. 2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946호,2018. 6. 5.>(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66호,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개정 2019. 12. 24.>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구강·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쳠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寬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12. 24.>

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③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② 응시직명		④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의 질환명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12. 24.>

(앞쪽)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 직명	④ 응시 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⑧ 주민등록번호	-	
⑦ 재사용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재신체검사 결과 등)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분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신체검사 판정결과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란에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OOOO 질환에 대하여 OOOO 한 이유로 OOOOO 라고 판단함
3. "신체검사 판정결과"란에는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

   ※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 7. 27.] [예규 제163호, 2023. 7. 2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044 - 201 - 8205

Ⅰ.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임용시험

1. 임용시험 일반

가. 선발예정인원의 산정

(1)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일부터 6개월간의 예상결원을 합산하여 산정함

< 선발예정인원 산정 "예시" >

① 현재 결원인원이 3명이고 ② 시험공고(요구)일부터 6개월간의 예상결원인원이 4명일 경우, 선발예정인원은 7명이 됨 (∵ ①의 3명 + ②의 4명 = 7명)

(가) 예상결원인원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인원·파견복귀인력 등 임용대기인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나) 정년퇴직, 명예퇴직·공로연수(인사명령), 직제개편(국무회의 의결 또는 공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

(1)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시험령 제16조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2)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설정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음

< 예 시 >

◇ 최종시험일이 '10.9.11인 ○급 채용시험의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 최저연령(18세 이상) : '10.12.31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92.12.31 이전 출생자
- 최고연령(28세 까지) : '81. 1. 1 이후 출생자

다. 시험위원의 위촉(시험령 제13조)

(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5급 이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소속 장관이 다른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시험실시기관(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시행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 전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함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시험위원 서약서<참고자료 1>에 회피절차 포함
-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4)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 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각각 상호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라. 면접시험방법

(1) 면접시험의 공직가치 검증

(가)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평정요소 중 제1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의 공직가치를 심층적으로 검증해야 함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충실한 면접을 위하여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 공직가치 검증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시켜야 함

(2)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따른 등급 구분(시험령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등)

(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함

<참고자료 8>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 상 ’ 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등급으로 구분함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등급으로 구분함

③ 그 외의 경우는 "보통" 등급으로 구분함

※ 미리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추가면접 실시(시험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4항 등)

(가)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미흡" 등급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야 함

- **"우수",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 ·대규모 채용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면접이 필요없다고 객관적 사유를 들어 판단하는 경우

(나) 추가면접 실시방법 및 최종 등급 판정

①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모두 추가면접을 실시한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 보통 ’ 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추가면접시험 등급	최종 등급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②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만 추가 면접을 실시한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추가면접시험 등급	최종 등급
미흡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③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면접시험의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추가면접시험 등급	최종 등급
우수	—	우수
보통	—	보통
미흡	—	미흡

(다) 추가 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함

(라)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함

예) 1차 시험(2.2) → 2차 시험(7.2 6) → 면접시험(11.8 9) 순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후 추가면접을 실시하더라도 응시결격사유는 11.9일을 기준으로 판단

(4)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제23조제5항, 제25조제5항 등)

(가)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한 응시자의 최종등급과 필기시험(제2차 시험)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①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②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③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예) 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7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5명, "미흡" 1명인 경우

⇒ "우수" 1명 합격, "보통" 등급 중에서 필기(제2차시험)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시켜 총 5명 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0.00	예비 1순위
7	미흡	80.00	불합격

※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만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제23조제5항제1호, 제25조제5항제1호 등)

예) 1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3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2명이 "우수", 1명이 "보통" 등급을 받은 경우

⇒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85.00	합격
2	우수	80.00	예비 1순위
3	보통	82.50	예비 2순위

※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은 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로 반영함. 단,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별표8)

(5) 면접결과 필기시험(제2차 시험) 동점자 처리방안(시험령 제32조제2항)

(가) 면접시험 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예) 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7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5명, "미흡" 1명이고 합격선에 필기시험 동점자가 있는 경우

⇒ 합격선에 ‘ 보통 ’ 등급의 필기시험 동점자가 2명인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여 총 6명 선발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5.00	초과합격
7	미흡	80.00	불합격

(6) 추가합격자 결정(제23조제7항, 제25조제9항 등)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예) 6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8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6명, "미흡" 1명이어서 6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으나, 합격자 발표 1개월 후 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경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2차시험 성적이 높은 1명을 추가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2차시험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후 임용포기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2.50	합격
7	보통	70.00	추가합격(예비 1번)
8	미흡	80.00	불합격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 이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함.

예) 1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2명)으로 최종 17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한 이후 3명의 임용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15명)을 기준으로 1명이 됨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불합격자로 함

마. "진행 중인 시험"의 의미

(1)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 부칙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조치사항 중 "진행 중인 시험"이란 다음의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를 말함

(가) 시험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시험은 "시험의 공고"
(나)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시험은 "시험의 공고 또는 응시대상자에 대한 시험통지의 발송"
(다)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시험은 "시험요구서의 접수"

바. 5、7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면제(시험령 제22조 등)

(1) 시험령 제22조 제6항의 "다음 회의 시험"이라 함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같은 직렬(직류)의 시험을 말함

※ 지역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같은 근무예정 시、도 및 직렬(직류)의 시험을 말함

< 예 시 >

- 2015년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그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동일한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
- 2015년 5급 공채시험 부산지역의 시설직(일반토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그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동일한 부산지역의 시설직(일반토목)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

(2) 시험령 제22조 제6항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라 함은 제3차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제3차시험 응시의사를 밝혔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람을 말함

< 예 시 >

- 제3차시험 응시의사를 밝혔으나 제3차시험 당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해당함
- 제3차시험 응시의사를 밝혔으나 제3차시험 당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해당함

사. 신규채용자등에 대한 인사기록관리

(1) 직렬 또는 직류별로 구분 실시한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시험、자격]의 ‘시험종류’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직렬 또는 직류를 기재하여야 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 험 종 류	시 행 기 관
		○○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재경직류)	인사혁신처

-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 험 종 류	시 행 기 관
		공업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기계직류)	시험실시기관

(2) 법 제28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및 타지역·타기관으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근무경력'란에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임 용 일	직 급	임 용 구 분	발 령 기 관
근무경력	'11. 4. 1	행정서기	신규임용(5년간 전직 및 타기관 전보금지)	○○○소장

아. 응시수수료 면제(시험령 제35조)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르되, 공고를 통하여 알려야 함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해당자에 대하여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받고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반환하도록 함

(나)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자. 합격증명서 등 발급(시험령 제52조)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서식 1"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함

(2)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은 "별지 서식 2"의 합격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

차. 영어 및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시험령 제7조, 제34조 등)

(1) 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어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한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스널트, 신HSK, JPT 등)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 예시) 매월 1일 10일, 매분기 시작월 1일 10일 등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의 점수(등급)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응시자에게 해당 시험성적의 진위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시험일, 점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받을 수 있음

(3) 시험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당 능력검정시험 원본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소명)하더라도 불인정함

카. 면접관 교육 및 자격인정

(1)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자는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전문면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전문면접교육을 이수하고 면접역량평가를 합격한 자로,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3회이상 참여한 자에 대하여 면접관 자격을 부여함

< 면접관 자격 인정기준 >

·전문면접교육 이수 및 면접역량평가 합격
·국가공무원 채용면접에 3회이상 참여

(3) 면접관 중 면접역량이 우수한 자를 면접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면접위원장은 질문방법 및 순서조율 등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면접위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타. 시험공고 수단

(1) 시험령 제47조제1항의 ‘ 인터넷 ’ 이란 시험실시기관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및 그 밖에 응시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말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의 장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나라일터), 관보ㆍ신문 등 다른 홍보매체에도 공고를 게재하는 등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파. 시험공고

(1) 공고주체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시험령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함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하여야 함

(2) 공고방법
(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원서접수마감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10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함
-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함
(나) 시험령 제47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5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도 동일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시험령 제47조제5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대규모 재난이나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 수행(예: 감염병 유행) 등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를 말함

(3) 공고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규정사항(제37조) >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응시자격(응시결격사유, 연령, 거주요건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사항(제47조) >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시) 및 배점비율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장소와 그 기한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경력경쟁채용시험 면접을 점수화하여 실시할 경우 그 내용(제30조제2항)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사항 >
•경채의 법적근거(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조항)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
•재공고에 관한 사항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시 합격자결정방법의 예외(시험령 제29조제3항)
•복수국적자 임용제한에 관한 사항(임용령 제4조 제2항)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그 내용(시험령 제35조제3항)
•응시자 제출서류(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보수수준(상·하한액, 보수 책정방법 등),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시기 등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응시인원에 따라 선발할 서류전형 합격배수
•법 제45조의3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취소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기술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공고해야 함

<참고자료 9> 직무기술서 예시

(4) 재공고 및 변경공고(시험령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

- 단, 재공고 시 기존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변경공고에 따라 원서접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함

(5) 상시공고 및 본공고

(가) 상시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등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공고(이하 ‘상시공고’라 한다)를 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어서 채용이 미달된 적이 있는 경우, 결원이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퇴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시로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출원자 명단을 구축해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할 때 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합격자발표 시기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에 임용예정 직급·직위, 담당직무, 응시요건, 시험방법(우대요건·가산점 등 포함), 응시원서 접수 방법 및 종료일자, 시험 단계별 합격배수, 응시자 제출 서류 등은 상시공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를 상시공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채용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시공고는 연초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연중 게시 가능

- 상시공고는 당해연도 동안 유효하며, 차년도에는 새로운 상시공고를 게재해야 함(단, 연도 말 기준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기존 상시공고에 의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내 상시공고 종료일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본공고 게시 후 추가로 채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시공고 종료 가능

④ 상시공고 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이하 ‘상시공고 출원자’라 한다)은 원서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제출서류 등을 작성해야 함

- 직위의 군으로 모집하는 경우 상시공고 출원자는 특정 직위(지역 등)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 출원자 중 상시공고 기간 중 시행한 시험의 미응시자 및 불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출원의사를 확인하여 당해연도 상시공고에 유효하게 출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공고 게시여부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정하기 위하여 상시공고 출원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충족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 출원자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본공고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임의로 불합격시킬 수 없음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함

(나) 본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게시한 당해연도 내에 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합격자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채용항목을 포함하여 별도의 공고(이하 ‘본공고’라 한다)를 해야 함

- 본공고에는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시기, 합격자 발표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의 내용은 상시공고와 동일해야 함

- 상시공고와 본공고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변경된 사항을 본공고에 명시해야 함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공고 원서접수 기간을 정하여, 본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최소 10일 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공고를 게시해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하나의 상시공고에 대해 당해연도 동안 2개 이상의 본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③ 본공고에 따른 원서접수 기간 이전의 상시공고 출원자는 해당 본공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공고를 게시할 때 상시공고 출원자에게 본공고가 시행되었음을 안내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을 요청해야 함(응시자격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

- 상시공고 출원자는 해당 본공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할 수 있음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공고를 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 임용예정 직위 및 시험방법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해야 함

(다) 본공고 없는 상시공고

① 본공고에 포함해야 하는 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합격자 발표 시기 등을 상시공고에 포함시킨 경우 본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활용 예시 >

- (선발예정인원) 채용공고 시점의 인력 소요를 기준으로 산출
- (시험 시기) 복수의 일정(예: 매월, 격월 등)을 설정해 출원자 발생 시 채용시험 진행
  - 이때, 공고되는 선발예정인원은 상시공고 기간 중 최종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목표 인원을 의미함

※ <예시> 시험일을 매월 말로 설정

시험일	선발예정인원(A)	채용 목표인원(B)
매월 말(1~12월)	3명	3명(A=B)

② 공고된 시험일 전날까지 출원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기존 공고에 따른 다음 채용시험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음

③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최종 합격자가 나온 경우 공고된 다음 시험일이 있다면 합격인원을 차감한 선발예정인원을 변경공고하여야 함

- 이때, 변경공고는 다음 시험기일의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당해 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할 수 있음

-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변경공고는 인사처의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음

④ 선발예정인원을 모두 채용하는 등 상시공고 지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종료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종료 필요성이 발생한 즉시 공고해야 함)

(6) 시험의 연기·변경(시험령 제48조)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구의 개편, 문제지 인쇄·운송 등 시험준비 과정에서 화재 및 자연재난 등으로 정해진 일정과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함

(7) 시험기일

(가) 시험령 제47조에서 말하는 "시험기일"이란 최초공고시에는 당해시험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중 첫 번째 시험을 말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는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

후 실시하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중 첫 번째 시험을 말함

(8)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경력기간의 계산

(가)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 * 참조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하.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시험령 제51조의2, 제51조의3)

(1) 채용비위 정의 및 예시

(가) 채용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함

(나) 예를 들면,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채용 계획(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을 수립、변경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채용비위에 해당됨

< 채용비위 예시 >

- (직권남용 : 형법 제123조 위반) 국가기관 채용 담당자인 A는 B의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증원하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 C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킴
- (허위공문서작성등 : 형법 제227조) 면접관 A는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응시자 C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킴
- (강요 : 형법 제324조) A는 응시자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용계획을 수립·진행하도록 인사담당자 C에게 강요하여, B가 최종합격함
- (배임수증재 : 형법 제357조) A는 B를 합격시킨 대가로 C로부터 현물을 수수함

(2) 심의위원회

(가) 심의위원회 정의

-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심의위원회 구성

①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합격 후 임용되지 않은 자에 대한 합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함

-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 인사、법률、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 인사·법률·노동 전문가 예시 >

❖ (인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면서 인사·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법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 (노동)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③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⑤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함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외부위원"이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의 소속이 아닌 자를 의미함(당해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로 전출 및 파견된 자, 동일한 소속 장관 소속 공무원은 외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다) 심의위원회 운영

① 채용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입수

※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서비스를 통해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입수 가능

② 합격、임용 취소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채용비위 관련 사실을 파악

③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합격、임용 취소 당사자에게 통지

-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 소명 기한
- 소명 방법
-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 당사자가 소명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용어 정의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약칭 "경채")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시험령 제3조제1항)

(2) 경력경쟁채용시험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시험령 제8조제1항)으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시험령 제8조제1항)

(4) 경력경쟁채용등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시험령 제26조제1항)

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사전협의(시험령 제3조제1항)

(1) 사전협의 대상

(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실시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나) 사전협의가 제외되는 경우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예, 퇴직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중 인사교류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④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⑤ 법 제28조의4의 규정 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⑦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⑧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사유가 확정되는 7일 이내에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시험방법 등 기존과 실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하는 경우
⑨ 상시공고와 동일한 내용(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합격자 발표 시기 등 제외)으로 본공고를 하는 경우
⑩ 본공고 없는 상시공고 중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최종 합격자가 나와 공고문상의 선발예정인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⑪ 그 밖에 타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인사혁신처장과 별도로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전협의 내용
(가) 채용의 필요성 및 인력충원 여건
① 채용직위의 특수성, 인력충원의 시급성, 공채를 통한 인력충원 가능성, 상시공고의 필요성 등
②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등
(나) 시험의 방법
① 시험 세부절차 및 방식, 일정 등
- 서류 및 면접위원 구성계획, 서류전형 심사기준·배점 비율, 면접방식 등
② 응시자격, 우대요건 설정방식 등
③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④ 기타 공고문 내용 등
<참고자료 2> 경력경쟁채용등 사전협의서
(3) 사전협의 시기
① 시험실시기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고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고문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사전협의 결과 반영
- 시험실시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시험령 제49조의2)
(1) 채용점검 방식
(가) 각 기관은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점검을 하여야 함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와 외부참관인을 병행할 수 있음

(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단계에서 외부 참관인을 활용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에 대해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협의 요청 시 채용점검위원회의 생략 필요성(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사유 등), 외부 참관인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

(나)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 포함

※ 시험시행기관 관련자 등(당해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년 이내 타부처 전출자 및 파견자, 산하기관 근무자, 채용직위·직무관련 기관 용역·사업 수행자)은 현직위와 관계없이 내부위원으로 봄

(다) 위원은 채용점검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 위촉

① 내부위원은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1차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시험실시기관이 2차 이하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②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위촉

(라)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3) 채용점검 대상

(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

(나) 다만, 아래의 경우는 채용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채시험을 실시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채시험이나 경채시험이 면제되는 경채

②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③「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④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⑤ 그 밖에 타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인사혁신처장과 별도로 협의를 거친 경우

(4)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가) 시험실시기관은 면접시험 등 경채시험의 최종단계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 실시(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나)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5) 점검결과 조치 사항

(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은 합격자를 발표

(나) 시험실시기관장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시험실시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참고자료 3>의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서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며,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자체점검 결과서를 본부에도 동시에 통보

(6) 외부 참관인 구성 및 운영

(가) 적용 대상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외부 참관인을 참여시켜 각 단계별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음

※ 외부 참관인 제도 적용 대상(예시)
- 요건 적/부 판단만이 아닌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 내부자(해당 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하는 경우
- 각 단계(서류/면접)별 응시자가 각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외부 참관인 구성

①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외부인 1인 이상으로 구성

- 단,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 1차 소속기관은 본부 소속 공무원을, 2차 이하 소속기관은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을 참관인으로 위촉 가능

② 외부 참관인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분야 또는 시험실시기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

※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위원단, 시민(국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등 기관에서 이미 구성·운영 중인 외부 전문가 풀 활용 가능

③ 채용시험별로 응시자 및 시험위원과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사적 관계 등)가 없는 자를 외부 참관인으로 위촉해야 함

- 당일 기피 또는 회피사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가능한 예비 참관인을 포함하여 복수인 섭외

④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외부 참관인에게 수행 역할,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 진행절차, 자료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교육하여야 함

(다) 외부 참관인의 역할

① 서류전형 점검 시, 서류심사 종료 후 합격자 발표 전, 심사과정의 적법·공정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별첨10>(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 시험실시기관은 외부 참관인에게 점검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② 면접시험 참관 시, 실제 면접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참관하고, <별첨11>(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 외부 참관인은 응시자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응시자의 시야 밖에 위치해야 함

(라) 채용점검위원회에의 참여 또는 점검 결과 제출

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을 점검한 외부 참관인은 채용점검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식으로 <별첨10·11>(예시)의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채용점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

- 단,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 외부 참관인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에 대한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함

②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외부 참관인으로부터 점검리스트 및 종합의견을 제출 받아, 2인 이상의 내부자가 <별첨3>의 '③위원회 상세 점검 결과'를 직접 점검하여야 함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

③ 채용점검위원회는 외부 참관인이 제출한 점검리스트와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채용점검 시 참고해야 하며, 점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채용점검 결과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7) 행정 사항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별첨3>의 점검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외부 참관인 제도를 활용한 시험실시기관은 <별첨3>의 자체점검 결과서 서식에 외부 참관인 의견 활용 실적, 조치 결과(또는 계획) 등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함

※ 외부 참관인이 '미흡'으로 판단한 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필수 작성

3. 경력경쟁채용시험

가. 적용범위

(1) 대상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2) 시험실시기관

(가) 인사혁신처장

①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5급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인사혁신처장이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신설, 새로운 업무·기능의 수행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충원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

별(상·하반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속장관

① 시험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실시하기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소속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 기타 기관의 장 등

① 시험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 등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민간 등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험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대상시험

(가) 모든 경력경쟁채용등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

(나) 다만, 아래 요건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실시 가능(시험령 제29조제4항)

① 직권면직자 등 원직급 재임용(제1호)

②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제3호)

③ 특수학교 졸업자(제4호)

④ 1급 공무원 임용(제5호)

⑤ 지방직→국가직 임용(제7호)

⑥ 국비장학생 및 수습직원 임용(제11호)

나. 요건

(1) 법 제28조 제2항 제6호

(가) 특수한 직무분야

① 임용령 별표 1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 중 위생직렬·방호직렬의 각 직류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직무분야

(나) 특수한 환경

① 정신병원·한센병원 및 기타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다) 특수한 지역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

(2)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가) 목적

① 전문계학교 우수 졸업자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기술직·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렬별 전공학과 등을 지정함으로써,

- 우수한 기술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원활하게 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함
- 연고지 근무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 및 근무의욕 고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선발기준 및 임용예정계급

① 선발대상

㉮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임용예정지역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와 도 단위로 당해지역내의 학교졸업자를 동지역내에 소재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당해지역 내에 해당학과가 없거나 소수여서 적정한 경쟁에 필요한 졸업인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무예정자를 채용하거나, 채용규모가 커서 시·도 단위로 한정하기가 곤란하는 등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③ 임용예정계급별 응시자격기준

㉮ 기술직 공무원

- 기술직 7급 이상 : 대학교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 기술직 8급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기술직 9급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 연구·지도직 공무원

- 연구사 : 대학교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 지도사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④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는 "별표 1"과 같음(전공학과라 함은 해당 학(學) 또는 관련계통의 학과를 말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는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3을 준용함

⑤ 추천 및 임용절차

㉮ 각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결원 중 계급별로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지역 또는 기타 지역의 교육감 [전문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총(학)장]에게 전문계학교 우수졸업자의 추천을 요구함

㉯ 추천요구를 받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감은 이를 종합한 후 해당학교별·학과별로 추천요구 인원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하여 당해지역내의 선발대상 학교장에게 우수졸업자의 추천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각 요구기관에 배정(추천)함

㉱ 우수 졸업자를 배정받은 각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임용하여야 함

⑥ 기타사항

㉮ 각급 행정기관에서 전문계학교 출신자를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대학졸업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함

㉯ 채용시 정실임용의 소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야 함

㉰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대비표 중 지정되지 아니한 학과로서 관련계통의 학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되지 아니한 임용예정직렬에 대하여 전문계학교 우수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

(가) 관리자

①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에서의 '관리자'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다.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장소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참고자료 4>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게시한 당해연도 동안 원서접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당해연도 범위 내에서 원서접수 종료 일자를 지정할 수 있음

(나) 단,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응시원서<참고자료 5>를 교부함

(2) 접수방법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수 있음

(나) 접수기간은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라. 시험방법

(1) 시험의 방법과 원칙

(가) 시험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방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음

시험 요건(법 제28조제2항)	시험 방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제2호제4호 제10호·제11호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필요시 필기시험 추가
제3호제7호제8호제9호제12호제13호	•필기시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제5호	•서류전형 - 필요시 필기시험 추가
제6호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제2호·제3호제8호제10호(한시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면접시험

(나) 시험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시험은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음

-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단계의 합격결정전에 다음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음

(2) 서류전형(시험령 제5조제5항)

(가)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서류전형의 응시 자격요건으로 설정된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단, 점수화되는 서류전형에서 적용되는 우대요건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합격자결정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시험위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평가결과에 대하여 1회 이상 상호 교차 검증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평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함

(다) 합격자결정의 예외(시험령 제29조제6항)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시험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응시인원, 합격자 결정 기준(평정기준),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등을 시험공고일 전에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평가 기준과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등을 공고문에 안내해야 함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예시)
- 공고시 우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충족
- 서면심사시 일정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는 경우 기준점수이상
-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학위취득이나 일정기간 근무경력
-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 학력 및 경력 소지
- 일정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학교성적의 취득
- 서류전형을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음
  예시) 1단계 : 직무관련성 심사 ⇨ 2단계 : 어학, 경력 등 심사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건, 응시자격 등 임용예정직무 및 시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을 정함

※ 임용예정직무에 불합리한 기준(예시)
- 성별, 연령 등 차별적 요소에 의한 기준
- 임용예정직무와 관련없는 자격증, 학력 등의 기준

<참고자료 6> 서류전형 평정표

-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른 우대요건 평가 시, 자격요건으로 인정한 자격증、경력、학위 등의 이력은 우대요건으로 인정 불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자격요건으로 인정한 이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예를 들어, 자격요건을 석사학위로 정한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가 박사학위만 제출한 경우 해당 박사학위를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중복 인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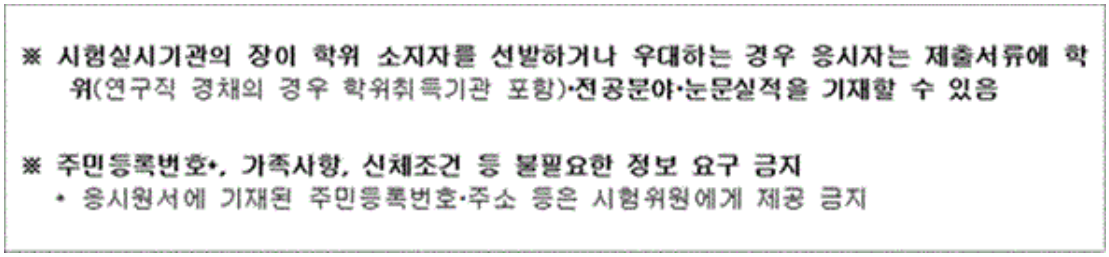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격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정하여 우대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자격요건 충족 이전에 취득한 경력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예를 들어, 자격요건인 면허 취득 이전의 군대 운전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거나, 자격요건으로 인정받은 민간경력 이전의 공무원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

- 경력 외의 이력(자격증, 어학성적, 학위, 논문실적 등)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격요건 충족 이전의 이력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예를 들어, 자격요건인 자격증 취득 이전에 취득한 학위를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

- 우대요건 평가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시험 공고문에 안내한 내용에 따름

(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참고자료 7>을 활용해 선발예정직위에 따른 응시자격, 우대조건 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정함

-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되, 선발예정직위 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학위 소지자를 선발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학위(연구직 경채의 경우 학위취득기관 포함)·전공분야·논문실적을 기재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
*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은 시험위원에게 제공 금지

(마)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이하 ‘증빙자료’) 요구 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을 한정할 수 없음

(3)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시험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①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원칙적으로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을 적용함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직렬 및 직류의 채용시험은 담당직무와 관련있는 2개 과목이상으로 소속장관이 정함

(나) 시험과목의 예외(시험령 제7조제3항)

① 제6호·제8호·제12호 경채의 제1차 시험과목 : 한국사

② 제6호·제12호 경채의 제2차 시험과목 :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 중 시험실시기관이 정함

③ 제8호 경채의 제2차 시험과목 : 외국어 및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 중 시험실시기관이 정함

(다) 시험과목의 변경 등(시험령 제8조)

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음

(라) 필기시험 합격자결정방법(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

①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6할이상의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②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③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④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시험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마)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1항제2호)

①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예시) 당초 제2차시험 합격자 20명을 결정하여 발표한 후 제3차시험 응시자 10명이 미달된다고 예상한 경우(면접서류 미제출, 포기서 등 면접불참사유가 명백하여야 함)에는 10명을 추가 합격 가능하며, 동점자의 수가 많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추가 합격처리가 가능함

(바)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1항제4호)

① 적용 대상

㉮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시험령 제8조제2항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 응시요건을 두 가지 이상의 복수 요건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② 추가합격 목표인원

㉮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와 해당 응시요건 지원자 필기시험 합격자수의 차이만큼 추가 합격

(예시) A, B 두가지 응시요건을 설정한 선발단위의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이 20명이고, B 응시요건 지원자의 필기시험 실제 합격자수가 2명인 경우

⇒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6명과 실제 합격자수인 2명의 차이인 4명이 B 응시요건 지원자의 추가합격 목표인원임

③ 추가합격자 결정방식

㉮ 해당 응시요건 지원자로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 목표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4) 면접시험

(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구조화된 면접)하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자료 8>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나) 합격자 결정방법(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미리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불합격인원,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②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③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시험령 제32조제3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령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5)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4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① 시험령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한 경우(선발예정인원만을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함)에는 합격인원을 제외한 차순위자들이 모두 불합격기준이므로 당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

② 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한 경우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③ 시험령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함.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동령 동조 동항 단서의 방법으로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마. 행정사항

(1) 응시자격 등의 예외(시험령 제19조제3항)

(가)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근무경력, 자격증 등 추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정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등 지나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2)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시험령 제27조제4항)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

예)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제출서류의 확인

(가)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응시자의 증빙자료는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사본으로 대체함

※ 자격증, 학위 증명서 등 사본 제출

(4) 제출서류의 반환

(가)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을 남겨둔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함

(나)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사본을 제출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부담함이 원칙이되,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절차

(1) 휴직자의 결원 보충이나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6개월 범위내에서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22조의4의 신규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2) 각 기관의 장이 운영·관리하는 대체인력뱅크에는 사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자를 바로 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 이전에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

관리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3)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등 일부 채용절차에 대하여는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승진ㆍ전직 시험
가. 일반승진시험 불응시 사유서 제출 등
(1) 시험령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 그밖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에 있어서
- 시험불응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 다음날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의사의 진단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1) 임용령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음
다.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 범위
(1) 임용령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은 "별표 3"와 같음
(2) 다만, 이 경우 연구직렬의 직무내용이 해당 기술직렬의 직무내용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직무기술서등)를 첨부하여 전직 또는 전직제청하여야 함
라. 전직시험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면제범위
(1) 시험령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시 중복되는 시험과목을 면제함에 있어서 시험과목의 중복은 현 직렬(직류)의 전직 시험과목과 전직 예정직렬(직류)의 전직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시험과목의 면제는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음
- 현 직렬과 전직 예정직렬의 시험과목이 필수과목간 및 선택과목간에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모두 면제함. 다만, 필수과목이 일부만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선택과목은 모두 동일하더라도 면제하지 아니함
- 현 직렬에서는 필수과목이나 전직 예정직렬에서는 선택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함
- 현 직렬에서는 선택과목이나 전직 예정직렬에서는 필수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하지 아니함
- 현 직렬에서 선택과목이고 전직 예정직렬에서도 선택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하지 아니함
5. 국가시험 출제시설의 운영
가. 목적

(1) 국가시험 출제시설인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기본 원칙

(1) 고시센터는 특수용도 시설로서 채용(임용)시험 출제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

(2) 안정적인 출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편의성과 보안성 확보

(3) 자체 출제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기관 시험 출제시 공동 활용

다. 고시센터의 운영

(1) 인사혁신처장은 각종 국가고시 문제의 출제관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한 고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과 각종 물품을 출제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함

(2) 고시센터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함

라. 관리의 위임

(1) 인사혁신처장은 고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위임·관리토록 함

(2) 인재개발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안·방화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재개발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함

마. 시설물의 공동활용

(1) 시설물을 대여하는 경우, 인재개발원은 사용기관으로부터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함

(3) 기타 공동활용의 신청·허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 「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 등의 기본교육과 임용 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4)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 등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나. 복 무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시간,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실무수습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30일) 개근시 1일의 연가를 줌

- 실무수습 기간은 실무수습 정지,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휴가일수 예시 : 2018. 2. 10. 실무수습을 실시한 경우 >

구 분	2018년							2019년	
	~ 3.9	3.10	4.10	5.10	6.10	…	12.10	1.10	2.9
휴가일수 (누적)	0일	1일	2일	3일	4일	…	10일	11일	11일

※ 누적 휴가일수는 실무수습 도중 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연도 변경시 사용가능 휴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음)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가급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함

(3) 채용후보자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함

다. 의 무

(1) 채용후보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라. 보 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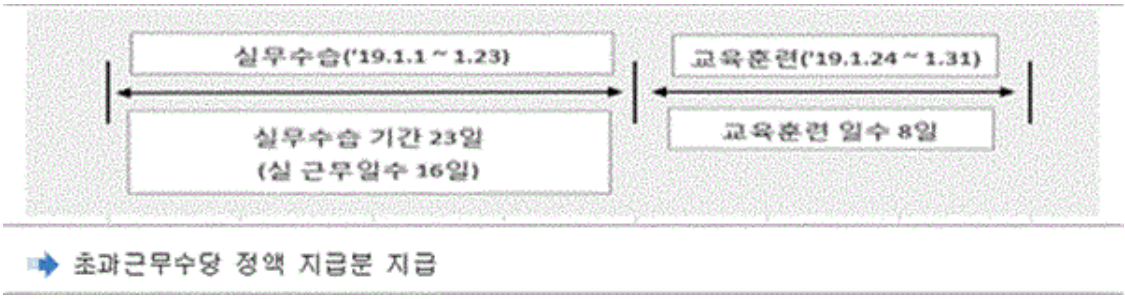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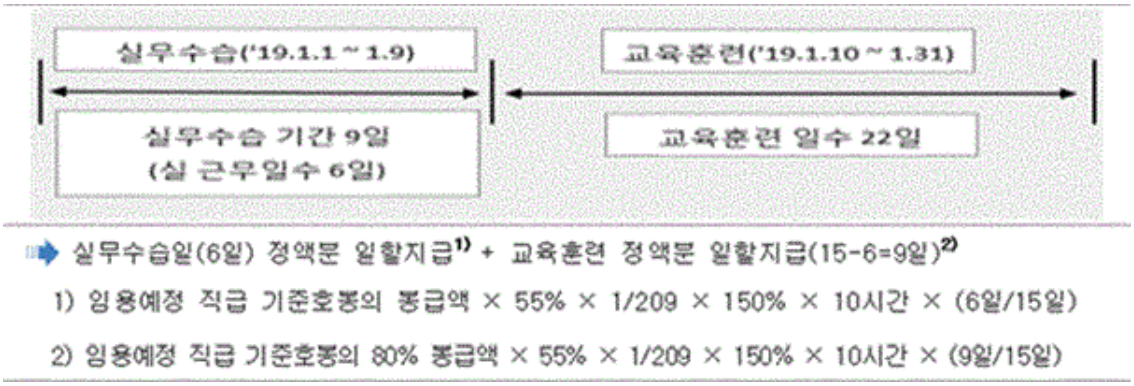
※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별표 4>를 따르며,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함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분 대상 근무일수는 실 근무기간 15일임.

① 실무수습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 정액지급분을 모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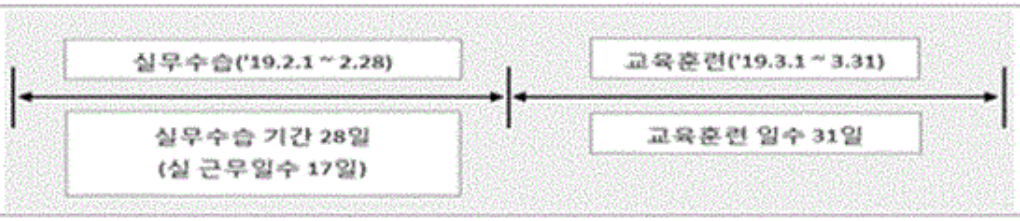


② 실무수습 받은 기간이 15일 미만, 그 외 교육훈련 : 실무수습일 일할지급 + 15일 중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일할지급



- 실무수습 보수 지급 적용 사례

ⓐ 1개월 교육훈련(예: 3.1~3.31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설날(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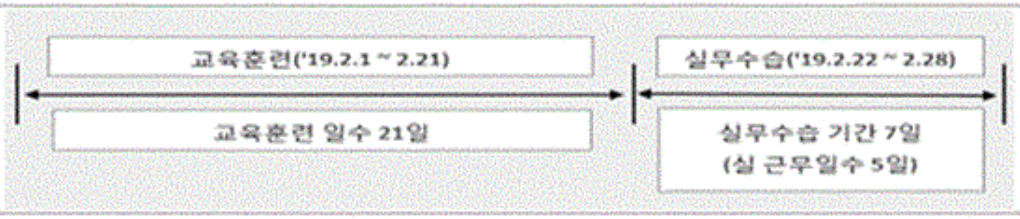


➡ (2월)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명절수당 지급

➡ (3월)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상당 봉급, 정액급식비 지급

(1개월 이상 교육훈련 기간은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수에서 제외)

ⓑ 1개월 미만 교육훈련(예: 2.1~2.21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설날(2.5일)



·2월 : 월중 교육훈련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①+②)

① 교육훈련(2.1~21, 21일/28일)	② 실무수습(2.22~28, 7일/28일)
·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봉급 × (21일/28일) · 정액급식비 × (21일/28일) · 초과근무수당 : 정액분(일할지급)* * 임용예정 직급 기준호봉의 80% 봉급액 × 55% × 1/209 × 150% × 10시간 × (10일/15일) **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분 대상 근무일수(15일)는 해당 월의 실무수습 기간부터 산입,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 중 초과근무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함	· 임용예정직급 1호봉 봉급 × (7일/28일) · 정액급식비 × (7일/28일) · 가족수당 × (7일/28일) · 직급보조비 × (7일/28일) · 명절휴가비 미지급(2.5 당시 교육훈련) · 초과근무수당 : 실적분 + 정액분(일할지급)* * 임용예정 직급 기준호봉의 봉급액 × 55% × 1/209 × 150% × 10시간 × (5일/15일)

ⓒ 1개월 초과 교육훈련(예: 2.1~3.7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설날(2.5일)



·2월 :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상당 봉급, 정액급식비 지급

·3월 : 월중 교육훈련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①+②)
• 단, 정액지급분 대상 근무일수에서 교육훈련 기간은 제외함

① 교육훈련(3.1~3.7, 7일)	② 실무수습(3.8~3.31, 24일/31일)
·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봉급 × (7일/31일) · 정액급식비 × (7일/31일)	· 임용예정직급 1호봉 봉급 × (24일/31일) · 정액급식비 × (24일/31일) · 가족수당 × (24일/31일) · 직급보조비 × (24일/31일) · 명절휴가비 미지급(2.5 당시 교육훈련) · 초과근무수당 : 실적분 + 정액분• • (15일 이상 실 근무) 임용예정 직급 기준호봉의 봉급액 × 55% × 1/209 × 150% × 10시간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 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함
(3) 채용후보자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킴
마. 실무수습의 유예 및 정지
(1) 실무수습 대상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학업의 계속, 임신·출산·육아,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2)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 5>의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실무수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함
(4)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 전 잔여기간동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실무수습 근무를 명하여야 함
(5)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경우에도 임용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또는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함
(가)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질병, 병역복무 등)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라)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3. 실무수습 요령

가.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실무수습 근무 발령일부터 임용 전일까지로 함

(2) 수습발령 시 수습기관과 시보 또는 정규임용 시기를 안내해야 함

(3) 사전예고한 수습기간·임용시기와 달리 운영될 경우 사유가 확정되면 신규자에게 통보해야 함

나. 수습기관 및 수습부서

(1)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은 기관의 조직·업무 특성, 임용예정기관,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인력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정한 기간씩 각 부서에 순환 배치하여야 함

다. 수습방법

(1)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 전 또는 초기에 기관의 기능과 업무 소개, 수습요령 안내, 업무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실무수습의 효과 제고 노력을 하여야 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공직자로서 기본적 가치관, 예절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업무의 이해와 숙지를 위해 가급적 개인보다는 팀단위로 업무를 배정해야 하며,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할 수 있음

(4)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회의참석, 현지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를 숙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5) 다만,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 시설·지역의 출입,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됨

(6) 수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습일지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7)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된 부서의 선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 멘토 등을 지정·운영하여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하여야 함

(8)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인사부서·배치부서 역할(예시) >

인사부서	배치부서
① 당해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기관의 기능 및 업무 전반 등 ② 연고지·전공분야·경력·기타 적성 등을 감안한 부서 배치 ③ 동기부여를 위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④ 신규자와의 정기 면담 실시 ⑤ 시보 또는 정규임용 시기 사전 예고	① 신규자 대상 멘토 공무원 매칭 ② 업무 이해·숙지 등을 위해 개인보다는 팀단위 업무 배정 ③ 신규자 업무수행현황 모니터링 및 리뷰 ④ 회의참석·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 학습 기회 부여 ⑤ 부서장과 신규자 간 정기 면담 실시

4. 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

가. 실무수습의 평가

(1)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교육 평가와 함께 그 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시기는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밖의 평가방법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를 준용함

나. 임 용

(1) 임용권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2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또는 시·구청·읍·면사무소)
-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합격 판정 확인

③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실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2) 채용후보자 등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

Ⅳ. 수습행정관 실무수습

1. 기본 방침

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이하 "수습행정관"이라 한다)의 실무수습은 관리자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행정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 일선행정기관의 집행업무부터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업무까지 체계적인 수습
- 지도, 관리체계의 확립과 계획성 있는 수습으로 수습성과를 최대한 거양

※ 실무수습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

나. 수습행정관 중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관하여 Ⅳ.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Ⅲ.에 따름

2. 일반 사항

가. 수습행정관의 소속

(1) 수습행정관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함(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②)

나. 수습기관

(1)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임용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함

(2)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함

(3) 수습행정관에 대한 임용 전 실무수습이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현장체험 및 지원활동은 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

다. 수습인원

(1) 수습행정관의 수습기관별 인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라.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교육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1년으로 함

(2) 각급 수습기관별 실무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수습(이하 "지방수습"이라 한다) : 1월

(나) 중앙행정기관 실무수습(이하 "중앙수습"이라 한다) : 6월

(3) 수습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 소멸 후에 ‘ (2) ’ 항의 잔여기간을 수습해야 함

(4) 인사혁신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1) ’ 항 및 ‘ (2) ’ 항을 변경 조정할 수 있음

3. 복무관리 등

가. 수습행정관의 의무

(1) 수습행정관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관계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나. 수습부서 배치 및 수습방법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으로 하여금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습기관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음

(2)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 배치된 실·과 단위 보조기관 소관 주요업무의 공문서 공람 및 결재 경유를 이행토록 하여 그 처리과정을 수습토록 하며, 수습기관의 당면 주요과제 등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케 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 간부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일선행정의 업무수행 숙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다. 수습행정관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가)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작성케 하며 수습행정관의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2) 수습지도관의 지명

(가)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을 지명하여야 함

① 중앙행정기관 : 인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직위)

② 지방자치단체 :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과장(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직위)

(3) 수습지도관의 임무

(가) 수습지도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습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수습행정관을 지도하여야 함

- 당해기관에서의 수습일정별 수습상황
- 수습방법
- 수습과 관련된 교육 등

(나) 수습지도관은 수습행정관으로부터 수습과 관련된 자문이나 상담 및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수습상황의 현지지도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지도교수를 현지에 출장케 하여 수습행정관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케 할 수 있음

마. 수습중단의 통보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이 실무수습 중 병역의무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될 경우 또는 수습중단사유가 소멸되어 수습이 계속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해야 함

바. 징계 등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2) ‘ (1) ’ 항의 사항은 "별지 서식 4"의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드'(이하 '수습카드'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함

(3) ‘ (1) ’ 항의 통보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당해 수습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면직할 수 있음

(가)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시간 부여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각 수습행정관에게 "2. 라.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수습을 시작할 때에 일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결과를 보고받아 실무수습성적에 반영하여야 함

나.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수습 기간 중 1주일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평가 등

가. 수습카드의 활용

(1)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수습을 시작할 때에 개인별 수습카드를 해당 수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습기관의 장은 각 수습행정관의 수습사항, 수습성적 및 의견 등을 기재하여 수습종료 직후 다음 수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최종 수습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개인별 수습카드에 각 수습행정관에 대한 연구과제의 연구실적, 교육훈련성적 및 종합의견을 기재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3) 인사혁신처장은 개인별 수습카드를 수습행정관이 임용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하여 인사관리에 참고토록 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의 평정

(1) 각 수습행정관에 대한 실무수습의 평정은 개인별 수습카드에 의하여 수습부서별로 행하며, 이 경우 평정자는 수습행정관이 배치된 기관의 보조기관이, 확인자는 "3. 다.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지도관이 됨

(2) 각 수습행정관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성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평가관리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 9할과 ‘ (1) ’ 항에 규정된 실무수습성적 1/2할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 보고서 성적 1/2할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

다. 부처배치 기준 중 성적요건 산정

(1) 인사혁신처장은 각 수습행정관의 성적을 "5. 나."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성적과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을 합하여 200점 만점으로 산정하되, 수습행정관간에 시험합격회수가 다른 때에는 최근 시험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성적편차를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200점으로 산정된 성적은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른 성적 반영비율에 따라, 이를 다시 환산하여 부처배치에 활용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2. 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 나."항 및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적요건 산정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재검토 기한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9호,2009. 9. 30.>

① 이 예규는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09.8.25)는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09.8.25)를 적용한다.
④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01호,2010. 3. 4.>
① 이 예규는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79호, 2009.9.30)를 적용한다.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40호,2010. 11. 26.>
① 이 예규는 2010년11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11월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57호,2011. 4. 7.>
① 이 예규는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98호,2012. 2. 13.>
① 이 예규는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357호, 2011.4.7)를 적용한다.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호,2013. 3.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3. 6. 25.>

①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Ⅱ. 임용시험 <1> 임용시험 일반 4. 면접시험방법, Ⅱ. 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 5. 시험방법 라. 면접시험 및 마. 추가합격자 결정, 참고자료 7-1 및 7-2 의 개정 조항은 2014. 1. 1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3.25)를 적용한다.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3호,2013. 12. 12.>

①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Ⅱ. 임용시험 ① 임용시험 일반 4. 면접시험방법, Ⅱ. 임용시험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5. 시험방법 라. 면접시험 및 마. 추가합격자 결정, 참고자료 7-1 및 7-2 의 개정 조항은 2014. 1. 1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안전행정부예규 제23호, 2013.6.25)를 적용한다.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9호,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호,2014. 11. 1.>

① 이 예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60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0호,2015. 9. 9.>

① 이 예규는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호,2015. 12. 31.>

①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호,2016. 6. 22.>

① 이 예규는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호,2016. 6. 24.>

① 이 예규는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호,2017. 8. 22.>

① 이 예규는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2호,2018. 3. 8.>

① 이 예규는 201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8.22.)를 적용한다.

② Ⅱ.채용후보자 등 임용전 실무수습 2.복무관리 등 나.복무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도 적용한다.

③ Ⅱ.채용후보자 등 임용전 실무수습 2.복무관리 등 라.보수 등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0호,2018. 10. 25.>

이 예규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9. 5. 29.>

이 예규는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20. 10. 21.>

이 예규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21. 12. 31.>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23. 6. 29.>

이 예규는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23. 7. 27.>

이 예규는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대비표

가.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해 당 학 과	비 고
공 업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금 속	금속, 금속공학	
	섬 유	섬유, 섬유공학	
	물 리	물리학	
임 업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축 산	낙농(학), 축산(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기 상	기 상	기상학, 천문기상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직 렬	직 류	해 당 학 과	비 고
해양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일반수산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로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시 설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 토목공학	
	측 지		
방 송 통 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관 제	항공경영학, 항공운항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간 호	간 호	간호(학)	

* 수의 · 지적 · 일반선박 · 선박항해 · 선박기관 · 일반항공 · 조종 · 정비 · 관제 · 약무 · 간호 직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나. 지도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해 당 학 과	비 고
농촌지도	농 업	농업,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 업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 업	잠업, 잠사학	
	원 예	원예(학)	
	축 산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촌사회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 (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생활지도	생활	식품가공, 농가정(농업가정), 영양학,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학, 가정교육학, 가정관리학, 가정복지학, 주생활학, 가정학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별표 2]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계급 / 직렬 /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항공우주	기술사(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능장(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자가용조종사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조선	기술사(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 업	일 반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 물 검 역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 명 유 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식품)
임 업	산 림 조 경	기술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 림 자 원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 림 보 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 림 이 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로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선박관제	기술사(정보통신) 1·2급 항해사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5·6급 항해사
	수로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1·2급 항해사	기사(일반기계,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전자,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5·6급 항해사
	해양교통시설	기술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표지운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기기기, 전자)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기상	기상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지진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사(응용지질)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기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관 제		항공교통관제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수)
	지 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 통 시 설 도 시 교 통 설 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응용지질,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전 산	전 산 개 발 전 산 기 기 데이터 정 보 보 호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비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기준 및 연구직 · 지도직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물 리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작물보호	농 업	일반농업
			식물검역
		농촌지도	농 업
	농업환경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산업곤충	농촌지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생명유전	농 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생활지도	생 활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축 산	농 업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농 공	공 업	농업기계
		시 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임업연구	임 업 산림조경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수 의	수 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 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기상연구	기 상	기 상	기 상
	지 진		지 진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공중보건	보 건	보 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방재안전
	재난관리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 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 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임 업	전 직 류
		임업연구	임 업
			산림조경
	잠 업	농업연구	산업곤충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업연구	축 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수의연구	수 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 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 공
	농업토목	시 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 공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 로
		해양수산연구	전 직 류

[별표 4]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초과근무수당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① 매 시간에 대해 「기준액(임용예정 직급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150%」을 지급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정규 근무일[1]을 기준으로 월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채용후보자 등
	교육훈련 중인 채용후보자 등 (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매 시간에 대해 「기준액(임용예정 직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80% × 55%) × 1/209 × 150%」을 지급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1개월 미만 교육훈련에 한함) : 정규 근무일[1]을 기준으로 월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채용후보자 등
정액급식비	모든 채용후보자 등 (실무수습, 교육훈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지급액을 준용
가족수당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지급액을 준용
명절휴가비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설날 및 추석날 현재의 월봉급액(임용예정 직급 1호봉) × 60%
연가보상비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①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실무수습 중인 사람 ② 지급시기 : 실무수습 종료시점 ③ 지급기준 : 월봉급액(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6%×1/30×연가보상일수 - 연가보상일수 · 실무수습 재직기간이 12개월인 채용후보자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실무수습 기간(개월) / 12개월 · 실무수습 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채용후보자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지급기준일 현재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 - 실무수습 기간 : 실무수습 정지,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여 개월수로 환산,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
직급보조비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직급별 월 지급액을 준용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증서번호

합 격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합 격 사 항)

년　　월　　일

(시험실시기관의 장)

210㎜× 297㎜[백상지 150g/㎡]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합격증서

귀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20 년 ○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유의사항
·정부기 상단은 표준문양, 하단은 금박 스티커를 사용하고 서체는 궁서체로 한다.

240mm×340mm(한지백색 170g/㎡)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수 습 일 지

수 습 기 관		수 습 일 자	20 년 월 일 (요일)
직 명	급 채용후보자	성 명	
수 습 내 용			
건의 및 의견*			
소속 실·과의 장 또는 수습지도관의 의견*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확 인

소속 실·과의 장			수 습 지 도 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드

인사혁신처

(앞 쪽)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성 별	□ 남 □ 여												⑤ 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 직류								⑥ 사 진 (반명함판) 3cm×4cm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거주지)	㉾ ☎																						
수 습 사 항			구 분	실 무 수 습 성 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호 양 : 보 통 가 : 불량																						
⑦수 습 기 관 명	⑧수 습 기 간	⑨수습내용	평정 기준	⑫근무상황·충실성 (3)				⑬책임성 적극성 (2)				⑭이해판단력과 대인관계 (2)				⑮지식및기술 (1)				⑯수습실적 (1)				⑰적성판단 (1)				⑱평정 및 확인자 총점	⑲ 수습기관장 종합 의견
			평정 등급 및 점수	수습에 충실하며, 결근.지각.조퇴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은 어떠한가?					
			평정및확인자 *해당란에 ○표시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3.0	2.8	2.6	1.5	2.0	1.8	1.6	1.0	2.0	1.8	1.6	1.0	1.0	0.8	0.6	0.5	1.0	0.8	0.6	0.5	1.0	0.8	0.6	0.5		
			⑩평정자직·성명																										
			⑪확인자직·성명																										
			평정자직·성명인																										
			확인자직·성명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구분

수습과제연구보고서평가								교육훈련성적					
⑳연구과제명	㉑연구실적	㉒지도교수의견	구 분	평점 ㉓문제제기의 타당성	㉔문제해결 방법론	㉕연구결과의 기여도	㉖총점	㉗학습평가	㉘근태평가	㉙실습평가	㉚활동상태평가	㉛총 점	㉜확 인
			1 차 평점										(인)
			2 차 평점					종 합 성 적					
		지도교수 (인)	평균					㉝5급공채 2차시험 성적 (100)	㉞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성적				㉟총 점 (200)
									교육훈련 (80)	실무수습 (10)	연구과제 보고서 (10)	계 (100)	
			1 차 평점					신 분 변 동 상 황					
								기 간		변 동 내 용		변 동 사 유	
			2 차 평점										
		지도교수 (인)	평균										

* 작성 시 유의사항
  - 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 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실·과 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 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 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카~~아~~드를 지체없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송부할 것

㊱종합의견

국 가 공 무 원 인 재 개 발 원 장 (인)

210㎜×297㎜[백상지 80g/㎡]

채용후보자 등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주 소 : (우 : -)

○ 전화번호 : (- -)

※ 휴대폰 : (- -)

○ **유예(정지) 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실무수습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 ○ ○ ○ ○ 귀 하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1>

서 약 서(예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고시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월 일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시험실시기관의 장)

<참고자료 2>

○○○부 경력경쟁채용등 사전 협의서

※ 이하 아래에서 제시하는 각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1 채용 예정 직위/직급

부서	직위	직급	인원

2 채용 필요성과 채용규모

① 채용의 법적근거 및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

② 채용예정 직급(공무원 종류 포함) 선정 사유

※ 복수직의 경우 해당 직종(일반, 계약, 별정) 선정사유

※ 인력관리 계획반영 여부(반영에 따른 현재까지의 채용결과 포함)

③ 채용의 시급성과 채용직위의 특수성

※ 공채(또는 인사혁신처 주관 일괄경채)로는 원활한 충원이 곤란한지 여부(사유)

④ 해당직급 및 직근 상하위 직급 정·현원의 적정성(6급의 경우 아래표 예시)

(00. 0. 0 현재)

구 분	계	5급	6급	7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 대기현황 및 해소방안 포함

3 시험방법

① 응시자격요건

- 채용직급/직위와의 연관성
- 다양한 응시자격요건 설정 여부 (자격증, 학위, 경력 등)

② 시험 절차(서류전형, 면접 등), 방법, 일정

- 필기시험 면제 여부, 시험단계별 일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배점비율, 면접방법 등 세부기준

* 서류전형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은 공고문(배점비율은 미기재)과 일치여부 확인

③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및 위원구성(내·외부현황)

4 기 타

① 채용점검위원회 구성계획 등 사후 점검방안

② 기타 참고사항(공고생략 시 사유 포함)

붙임 : 1. 공고문(안) 2. 인력관리계획. 3. 충원기본계획(결재본)

<참고자료 3>

○○○부 경력경쟁채용등 자체점검 결과

1 채용 결과

① 최종 선발결과 * 고졸자를 채용한 경우(인원에 고졸자 표시)

부서	직위	직급	인원(고졸자)	사전계획과 달라진 사항

※ 공고번호 : ○○○부 공고-000호('00.0.0)

※ 인사혁신처 협의통보 : 인사혁신처 ○○과 -000호('12.0. 0)

② 단계별 시험 결과 개요

단 계	주요 내용				사전계획과 달라진 사항
공 고	일 자	2011. 1. 25	방 식	나라일터, 홈페이지	-
원서접수	기 간	2011. 2. 21~27	결 과	총 ○명 접수	
서류전형	일 자	2011. 3. 31	위 원	총 ○명(내부 ○명, 외부 ○명)	
	방 식	서면 심사	결 과	총 ○명 중 ○명 합격	
⋮					

2 채용시험 점검 결과

① (운영시)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 운영 결과

자체점검 일자		
위원 구성 (총 ○명)	내부(○명)	○○○○국장, ○○○○과장
	외부(○명)	○○○(○○대학교 교수, 위원장)
주요 지적사항 및 점검결과 요약		▪ ▪

※ 공무원 위원은 소속 직위 및 직급 모두 기재

② (운영 시) 외부 참관인 제도 운영 결과

전형	의견	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계획)
서류	▪	▪
면접	▪	▪
기타	▪	▪

③ 위원회 상세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근거 자료 (점검위원이 작성)
[1] 채용계획 수립		
○ 시험 실시 계획 수립 시기 및 계획의 적정성 - 시험 시행 전에 계획수립 및 보고 되었는가? - 서류·면접 전형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2] 공고		
○ 공고내용은 적절했으며, 공고기간은 준수했는가? - 면접시험 평정기준 등		
[3] 응시요건		
○ 채용예정 직위·목적에 부합하게 응시자격 기준을 설정하였는가? - 응시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여부 등		
[4] 시험위원(서류전형, 면접시험)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위촉했는가?		
○ 외부위원 1/2 이상 위촉 기준을 준수했는가?		
○ 응시자와 제척·기피 사유 있는 시험위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각 단계별 시험취지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하였는가?		
[5] 서류전형		
○ 사전에 설정된 심사기준(항목·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어느 한 시험위원이 지나치게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가?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근거 자료 (점검위원이 작성)
6 면접시험		
○ 구조화된 면접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했는가?		
○ 면접과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험위원 주관에 의한 질문을 배제했는가?		
○ 어느 한 시험위원이 지나치게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가?		
7 실기 또는 필기시험 실시한 경우		
○ 실기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등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가?		
○ 필기시험 출제 및 집행 등에 있어서 보안대책은 적정하였는가?		
○ 채점이 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8 합격자 결정		
○ 단계별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공정하게 결정되었는가?		
○ 시험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작성방법 : 점검결과에 '적절', '부적절'로 기재하고 점검시 확인한 서류를 기재, 당초 설정한 기준과 절차를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

④ 점검결과 종합의견

점검일 : '00.00.00.

<참고자료 4>

응 시 원 서(예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참고자료 5>

응 시 원 서(예시)

본인은 (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참고자료 6>

서류전형 평정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직급		응시번호		성명	
임용예정직위					

□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결과

응시 자격 요건(예시)	판 정 (적 격 여 부)		
	위원 1	위원 2	위원 3
1. ○○○ 자격증 소지여부			
2. 국공법 제33조 각호 결격사유 해당여부			
3.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 정지 여부			
4. 응시연령 해당여부			
심 사 결 과	적격 ( ) 부적격 ( )		

위원 1	성명 (서명)	위원 2	성명 (서명)	위원 3	성명 (서명)

서류전형 평정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직급		응시번호		성명	
임용예정직위					

□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

	위원 성명		자격 요건	적 격	부적격
심사결과	위원1				
	위원2				
	위원3				

※ 자격요건은 '관리자 경력', '일반 경력', '박사학위', '석사학위+경력', '자격증', '자격증+경력'등으로 기재

□ 서류심사 평가결과

평정 요소			배 점	위원1	위원2	위원3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00점	00점			
	직무이해도	00점				
2. 직무성과			00점			
3.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00점			
4. 기타 실적 및 능력			00점			
합 계			100점			
				(평균)		

위원 1	성명 (서명)	위원 2	성명 (서명)	위원 3	성명 (서명)

<참고자료 7>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 이력서(예시) ※ 자격, 경력,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3. 우대사항 ※ 한국사, 어학을 우대요건으로 하는 경우의 예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 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성 명 : (인)

※ 연구직 공무원 경채의 경우, 학위취득기관 정보 기재란 신설이 가능함

□ 서식 구성 원칙

▸ 선발예정직위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조합하여 서식 구성
* 응시요건, 우대요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성 명	

□ 응시자격(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 선발 예정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만으로 서식 구성
(복수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항 모두 포함 가능)

가. 자격증 요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OO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속경력이 필요한 경우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OO기업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원	

나. 근무경력 요건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OO기업(OO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OO상사(OO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다. 학위 요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취득기관(연구직의 경우)
OO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OO대학교

※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속경력이 필요한 경우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월일)	직 위	담당업무
OO전자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 우대요건

▸ 시험실시기관은 직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우대요건을 정할 수 있음
(아래의 우대요건 중 필요한 사항만 응시자 제출서식에 포함)

【주요 우대요건(예시)】

1.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 수	영문성명

2. 한국사능력시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3. 수상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4. 연구실적

제 목	연구자/저자	발표논문지(논문지 종류) / 발표대회 / 출판사	발행(발표) 연월일

5.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6.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7.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취득기관 (연구직의 경우)

8. 봉사활동

기 간	장 소	활동내용

※ 기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우대사항은 시험령 제3조①에 따른 협의를 거쳐 서식을 정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직 공무원 경채의 경우 학교명을 기재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직 공무원 경채의 경우 학교명을 기재할 수 있음

※ 면접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함

<참고자료 8>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필기시험 필적감정 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 수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필기 적 감재 정 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참고자료 9>

직무기술서(예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00부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	○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 FTA 고용노동분야(노동시장 및 인력이동 등) 통상협상 대응 - 통상협상 협정문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대응 -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및 양자협력사업 - G20, APEC, ASEAN+3, ASEM 고용노동장관회의 등 고위급 외교 - 인권, 인신매매 관련 대응, SOFA 협정 노무분야 관리·대응 - 국제노동기구(ILO) 각종 회의 및 진정·권고 대응, 협약 이행 관리 등 - OECD, UN 등 각종 국제기구의 고용노동분야 논의 참여 및 정책교류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영어 대화 및 문서 교류를 위한 영어 활용 지식 ○ 양자 및 다자 협상 전략에 관한 교육·경력 및 전문 지식 ○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대응에 관한 높은 이해도 등 관련 지식 ○ 무역협정, 기관간 양해각서 등 각종 약정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고용노동, 외교통상, 국제협력**
경력	○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외 다른 경력(민간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외 다른 경력(민간 경력)이 관리자로 3년 이상인 사람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국제기구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영어 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텝스(TEPS)		토익(TOEIC)	토플(TOEFL)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18.5.12 이전	'18.5.12 이후		(PBT)	(IBT)		
점수	800점 이상	452점 이상	870점이상	59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참고자료 10>

외부 참관인 체크리스트(서류전형)

구분	점검 목록(예시)	확인란		
		양호	미흡	비고
서류전형	■ **계획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	*의견 작성*
	- 당초 결정한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준수하였는지? (원서접수 이후 합격인원을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	☑	
	■ **시험위원 위촉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를 위촉하였는지?	☑	☑	
	-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위촉 여부	☑	☑	
	- 응시자와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자 배제 여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여부 확인)	☑	☑	
	■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시험위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응시자 개인의 인적사항을 배제하였는지?	☑	☑	
	- 전형기준을 정성평가로만 구성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과다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	☑	
	- 적극적 심사 중 특정인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지? (위원 간 큰 편차로 정성평가 항목이 평정되지는 않았는지?)	☑	☑	*(적극적 심사시에만 작성)*
기타	*공정채용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권고 사항 기재*			

작성일 : '00.00.00.

작성자 : (서명)

<참고자료 11>

외부 참관인 체크리스트(면접시험)

구분	점검 목록(예시)	확인란		
		양호	미흡	비고
면접 시험	■ **구조화 면접에 적합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 면접 문제(자료)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출제되었는지?	☑	☑	*의견 작성*
	- 평가해야 할 역량과 기준에 따라 면접 질문(후속 질문 포함)이 출제되었는지?	☑	☑	
	■ **시험위원 위촉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를 위촉하였는지?	☑	☑	
	-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위촉 여부	☑	☑	
	- 응시자와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자 배제 여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여부 확인)	☑	☑	
	■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모든 지원자에게 통일된 면접 방식과 질문을 활용하였는지? (단발성 또는 돌발 질문에 의한 평가는 아니었는지?)	☑	☑	
	-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직무역량 외의 편견요소를 유발하는 질문은 없었는지?)	☑	☑	
	- 직무관련성이 높거나 면접 평가 요소와 관련된 정보만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였는지? (직무역량 외의 편견요소를 유발하는 자료 제공은 없었는지?)	☑	☑	
기타	*공정채용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권고 사항 기재*			

작성일 : '00.00.00.

작성자 : (서명)

소방공무원 채용

1. 소방공무원임용령
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 - 205 - 7044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 - 205 - 7288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3. 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2. 31., 1994. 8. 25., 1995. 12. 29., 1999. 5. 10., 2003. 1. 20., 2004. 5. 24., 2009. 3. 31., 2011. 1. 28., 2013. 9. 17., 2014. 11. 19., 2016. 4. 5., 2017. 7. 26., 2019. 11. 5., 2021. 10. 14.>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3. 10.>

②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 12. 29., 1999. 5. 10., 2003. 1. 2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18. 5. 31., 2020. 3. 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2. 3., 2013. 9. 17., 2014. 11. 19., 2017. 7. 26., 2018. 5. 31., 2020. 3. 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신설 2019. 1. 15.>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20. 3. 10.>

1.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 1. 20., 2006. 12. 21., 2019. 1. 15., 2020. 3. 10., 2021. 10. 14.>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31., 2019. 1. 15., 2020. 3. 10.>

⑧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9. 5. 10., 2004. 5. 24.,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5., 2020. 3. 10.>

제3조의2(임명장) ① 임용권자(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4조(임용시기)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31.>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5. 31.>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1.>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개정 2020. 3. 10.>

1. 법 제17조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 5. 31.]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제7조(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5. 10., 2004. 5. 24., 2011. 1. 28., 2013. 9. 17., 2014. 11. 19., 2017. 7. 26., 2019. 11. 5.>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 인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 2. 28., 1995. 12. 29., 2020. 3. 10.>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5. 3. 31., 2007. 10. 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1. 12. 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 5. 10., 2021. 1. 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 5. 10.>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 경력경쟁채용등 ”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14. 12. 9.]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

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9., 2016. 4. 5.>

②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 12. 9., 2020. 3. 10.>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2020. 3. 10., 2023. 5. 9.>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03. 1. 20., 2014. 12. 9., 2019. 1. 15., 2020. 3. 10., 2021. 1. 5.>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⑤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999. 5. 10., 2005. 3. 31., 2008. 12. 31.,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2020. 3. 10.>

⑥ 삭제 <2022. 4. 5.>

⑦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개정 1999. 5. 10., 2010. 12. 27., 2014. 12. 9., 2020. 3. 10.>

⑧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 12. 9., 2020. 3. 10.>

⑨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

로 한다.<신설 1986. 4. 26., 1995. 12. 29., 2006. 6. 30., 2014. 12. 9., 2020. 3. 10.>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⑩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 4. 26., 1999. 5. 1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2. 9.]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2020. 3. 10.>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2. 9.>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 3. 1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2018. 5. 31.>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 5. 10., 2015. 5. 6.>

제20조(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6. 30.>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5., 2023. 4. 7.>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2023. 4. 7.>

1.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4.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제4장 보직관리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0. 12. 27., 2015. 5. 6., 2016. 2. 3., 2020. 3. 10., 2021. 1. 5., 2022. 4. 5.>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4. 직제의 신설·개편·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③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5. 6.>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신설 2019. 1. 15., 2019. 11.

5.>

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2019. 1. 15.>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3. 10.>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3. 3. 28.>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5.]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6·4·26, 2003.1.20, 2016.4.5, 2019.1.15, 2022.4.5, 2023.4.7>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12·29, 2016.4.5, 2021.1.5, 2023.3.28>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4. 7.>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5년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86·4·26, 2014.12.9, 2020.3.10, 2021.1.5, 2023.4.7>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6. 4. 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6. 4. 26., 2003. 1. 20., 2013. 10. 30., 2016. 4. 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 4. 5.]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20. 3. 10.>

1. 시·도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도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 간 교류하는 경우
3.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인원(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시·도 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 5. 1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③소방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 5. 1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④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3. 10.>

⑤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 3. 10.>

⑥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 3. 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신설 2020. 3. 10.>

[전문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2020. 3. 10.]

제30조(파견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1995. 4. 20., 2005. 3. 31., 2010. 12. 27., 2015. 5. 6., 2016. 2. 3., 2020. 3. 10.>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6.>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2017. 7. 26., 2020. 3.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2017. 7. 26.>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본조신설 2010. 12. 27.]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개정 2020. 3. 10.>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2013. 12. 16., 2020. 3. 1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20. 3. 10.]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16.,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10.>

[본조신설 2010. 12. 27.]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2. 28., 1991. 7. 30., 1995. 4. 20., 1999. 5. 10., 1999. 12. 28., 2005. 3. 31., 2010. 12. 27., 2020. 3. 10.>

1. 제30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3. 삭제 <2010. 12. 27.>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10., 2021. 4. 27., 2023. 3. 28.>

1.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④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7., 2020. 3. 10.>

제32조 삭제 <2020. 3. 10.>

제5장 채용시험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 삭제 <2022. 4. 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0. 12. 27., 2013. 10. 30., 2020. 3. 10., 2022. 4. 5.>

[전문개정 1999. 5. 10.]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법 제11조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같은 조 단서 및 제34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20.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86. 4. 26., 2003. 1. 20., 2005. 3. 31., 2010. 12. 27., 2022. 4. 5., 2023. 5. 9.>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 3. 10.>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1995. 12. 29., 1999. 5. 1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1986·4·26, 1991·2·28, 2010.12.27, 2020.3.10, 2023.5.9>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개정 2019. 1. 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10. 12. 27.]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2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86. 4. 26., 1989. 2. 28., 1995. 12. 29., 2005. 3. 31., 2006. 12. 21., 2010. 12. 27., 2014. 12. 9., 2015. 5. 6., 2020. 3. 10., 2023. 4. 7., 2023. 5. 9.>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삭제 <2023. 4. 7.>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개정 2003. 1. 20., 2005. 3. 31., 2015. 5. 6., 2017. 3. 29.>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1989. 2. 28., 2015. 5. 6.>

[제목개정 2014. 12. 9.]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①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9.>

[제목개정 2014. 12. 9.]

제41조 삭제 <2010. 12. 27.>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산한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3. 5. 9.>

1. 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전문개정 2022. 4. 5.]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5. 1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9. 28.>

③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 5. 10., 2008. 12. 31.,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신설 2003. 1. 20., 2005. 3. 31., 2006. 5. 30., 2020. 3. 10.>

⑤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3. 1. 20., 2014. 12. 9., 2020. 3. 10.>
⑥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 12. 31., 2003. 1. 20., 2020. 3. 10.>
[제목개정 2003. 1. 20.]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5호에 의하여 2012. 5. 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별표 2 및 제2항을 개정함]

제44조(필기시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6.12.21, 2010.12.27, 2014.12.9, 2022.4.5>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목개정 2022. 4. 5.]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 및 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03. 1. 20.]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1.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신체검사: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9.>
③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신설 2023. 5. 9.>
④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

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23. 5. 9.>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4. 12. 9., 2015. 5. 6., 2019. 1. 15., 2022. 4. 5., 2023. 5. 9.>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2.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9., 2019. 1. 15., 2022. 4. 5., 2023. 5. 9.>

⑦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 15., 2023. 5. 9.>

[전문개정 2010. 12. 27.]

제46조의2 삭제 <2019. 11. 5.>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 1. 20., 2014. 12. 9.>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응시수수료)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25., 2020. 3. 10.>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 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개정 2013. 10. 30., 2014. 11. 19., 2017. 7. 26., 2022. 4. 5.>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3. 10. 30., 2018. 5. 31., 2023. 5. 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2014. 11. 19., 2017. 7. 26., 2023. 5. 9.>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 5. 9.>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5. 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신설 2015. 5. 6.>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5. 5. 6.>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2. 4. 5.>

⑤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제52조(시험실시결과보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3. 10. 30.>

[제목개정 2013. 10. 30.]

제6장 신분보장

제54조(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56조 삭제 <1999. 5. 10.>

제57조 삭제 <1999. 5. 10.>

제58조 삭제 <1999. 5. 10.>

제59조(보훈) ① 법 제18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전문개정 2013. 10. 30.]

제60조(특별위로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위로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 15., 2020. 3. 10.>

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② 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개정 2020. 3. 10.>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본조신설 2014. 12. 9.]

제61조 삭제 <2012. 8. 22.>

제7장 보칙 <신설 2009. 7. 7.>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권자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본조신설 2014. 12. 9.]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

부칙 <제11189호,1983.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를 “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 법 제17조의2제2항 ”을 “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 ”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1887호,1986. 4.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634호,1989.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8호,1991. 2. 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413호,1991. 7. 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내지2$ 생략

부칙 <제13435호,1991. 7. 30.>(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3534호,1991. 12. 31.>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

방소방공무원 ” 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 시 · 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 ” 를 “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 · 도지사 ” 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367호,1994.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0호,1995. 4. 2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 를 각각 “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 로 한다.

제31조 제1호중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 를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 ” 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4791호,1995. 10. 19.>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 민방위본부장이 ” 를 “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 ” 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43호,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86호,1997. 9. 30.>(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1(생략

2)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전단 및 후단중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을 각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 한다.

2! 내지3)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292호,1999. 5.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부칙 <제16626호,1999. 12. 28.>(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 국방대학원 "을 " 국방대학교 "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7887호,2003.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0호,2004. 5. 24.>(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 행정자치부 " 를 " 소방방재청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소방방재청장 "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 을 "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 " 으로 한다.

⑥내지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 <제18763호,2005.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3호,2006. 5. 30.>(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 제68조제2항제1호 " 를 " 제80조제2항제1호 " 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9549호,2006. 6. 23.>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6호,2006. 6. 30.>(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760호,2006. 12.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 <제20306호,2007. 10. 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82호,2009. 3. 31.>(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을 "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 "을 "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 "으로 한다

부칙 <제21626호,2009. 7. 7.>(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4호,2010. 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5호,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제5항·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7호,2011. 1. 1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칙 <제22647호,2011. 1. 28.>(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611호,2012.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59호,2012. 5. 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51호,2012. 8. 2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4125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17호,2013. 3. 2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4760호,2013. 9. 17.>(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4815호,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52호,2013. 11. 2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을 "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을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 "을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으로 한다.

3# 부터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53호,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839호,2014. 12. 9.>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1호,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44호,2016. 2. 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89호,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71호,2017. 3. 29.>(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부터2@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216호,2017. 7. 26.>(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8929호,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487호,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로 인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02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중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 을 " 징집 또는 소집되는 "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2호,2021. 4. 27.>(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 " 을 각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 로 한다.

부칙 <제32043호,2021. 10. 1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 을 "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 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 소방서 " 를 " 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 " 으로, "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 을 " 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 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223호,2021. 12. 16.>(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3) 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565호,2022.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제1호·제2호,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같은 표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의 보직관리 원칙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005호,2022. 11. 29.>(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360호,2023. 3. 2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및 단서 중 “ 교관 ”을 각각 “ 교수요원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 교관 ”을 각각 “ 교수요원 ”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를 각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 ”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33378호,2023.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까지 생략

4)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 국가보훈처장 ”을 각각 “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452호,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소방장ㆍ소방교 계급에 대한 필수과목 중 구급ㆍ화학ㆍ정보통신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개정 1999.5.10>

특수기술부문(제15조제4항관련)

부 문 별	특 수 기 술
화 재 조 사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통 신	유선·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소 방 정 · 소 방 헬 기 조종및정비	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소방정·소방헬기의 기관정비기술
장 비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전 자 계 산	시스템 관리·조작·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기술
구 급	응급처치기술
회 계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2] <개정 2022. 4. 5.>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2] <개정 2022. 4. 5.>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경·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개정 2023. 5. 9.>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1.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2.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필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4] <개정 2017. 7. 26.>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구분 / 계열별	시험과목	
	필수과목(4)	선택과목(2)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5] <개정 2023. 5. 9.>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제44조 관련)

계급 \ 분야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소방정 · 소방령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 · 소방위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항공법규, 항공영어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장 · 소방교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선택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사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비고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2. 필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및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다. 응급처치학개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항공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6] <개정 2022. 4. 5.>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4조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

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7] 삭제 <2019. 11. 5.>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신설 2014.12.9.>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60조 관련)

1. 미출근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text{지급금액} = \frac{\text{계급별 기준호봉}}{180\text{일}} \times 1.5 \times \text{미출근일수}$$

2. 미출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지급금액} = \frac{\text{계급별 기준호봉}}{180\text{일}} \times 1.5 \times 180\text{일} + \frac{\text{계급별 기준호봉}}{900\text{일}} \times 2 \times (\text{미출근일수} - 180\text{일})$$

비고: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9] <신설 2022. 4. 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4조제2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3. 5. 9.] [행정안전부령 제402호, 2023. 5. 9., 일부개정]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 - 205 - 7044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 - 205 - 7292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6. 3.>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3. 13.>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개정 2020. 3. 13.>
③「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05. 3. 31., 2020. 3. 13.>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適否)를 심사해야 한다.
1.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2. 근무태도, 공직관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임용권자는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국내외 훈련·국내외 출장·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0. 3. 13.>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통지한다.<개정 1999. 6. 7., 2004. 5. 29.,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3.>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전력조회)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력조회서에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2023. 4.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6. 7., 2004. 5. 29., 2014. 11. 19., 2017. 7. 26.>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소방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전력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13.>

③ 삭제 <2020. 3. 13.>

제9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등) ①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9., 2015. 6. 30., 2017. 7. 26., 2020. 3. 13., 2022. 6. 3.>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11조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유지、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 3. 13.]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0. 3. 13.>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0. 3. 13.>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0. 3. 13.>

1.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2.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인 경우: 시·도지사

② 삭제 <2020. 3. 13.>

③ 소방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

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9. 1. 24., 2020. 3. 13.>

[제목개정 2020. 3. 13.]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0. 3. 13.>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3. 13.>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

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9. 6. 7., 2004. 5. 29., 2014. 11. 19., 2017. 7. 26., 2023. 4. 7.>

[본조신설 1986. 12. 18.]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개정 2021. 7. 13.>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개정 2020. 3. 13.>

[제목개정 2020. 3. 13.]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3., 1997. 4. 19.>

제3장 보직관리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의 소방본부·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

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 9. 3., 1997. 4. 19., 1999. 6. 7., 2003. 1. 28., 2004. 5. 29., 2011. 1. 28., 2014. 11. 19., 2015. 1. 9., 2017. 7. 26., 2020. 3. 13.>

②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한다.<신설 1991. 2. 28., 1999. 6. 7., 2009. 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3.>

②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2. 6.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3.]

제20조(전보의 제한) ① 삭제 <2011. 1. 3.>

②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제21조(전출·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파견요청등)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6. 7.>

제22조의2(시간선택제근무) ①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선택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3. 13.>

③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 3. 13.>

[본조신설 2011. 1. 3.]

[제목개정 2020. 3. 13.]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 3.]

제4장 채용시험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1. 9., 2020. 3. 13., 2023. 5. 9.>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1. 9.>

③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9.>

④ 삭제 <2022. 6. 3.>

⑤ 삭제 <1999. 6. 7.>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개정 1999. 6. 7., 2015. 6. 30.>

⑦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 12. 21., 2011. 1. 3.>

⑧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89. 1. 11., 2015. 1. 9., 2020. 3. 13., 2021. 7. 13.>

⑨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6. 3.>

⑩「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5. 3. 31., 2020. 3. 13.>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 3.]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22. 6. 3.]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 1. 3.]

제26조 삭제 <2006. 12. 21.>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 6. 3.]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9. 1. 11., 1999. 6. 7., 2003. 1. 28., 2005. 3. 31., 2006. 9. 7., 2007. 12. 13., 2011. 1. 3., 2019. 1. 24., 2022. 6. 3., 2023. 5. 9.>

1. 삭제 <2023. 5. 9.>
2. 삭제 <2006. 9. 7.>
3.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통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통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6. 9. 7., 2007. 12. 13., 2011. 1. 3., 2019. 1. 24., 2023. 5. 9.>

1.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③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 1. 3., 2015. 1. 9., 2020. 3. 13.>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7. 12. 13., 2011. 1. 3., 2015. 6. 30., 2019. 1. 24., 2023. 5. 9.>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7., 2007. 12. 13.>

⑥ 삭제 <2015. 6. 30.>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2011. 1. 3., 2021. 7. 13., 2022. 6. 3.>

1. 삭제 <1994. 9. 3.>

2. 삭제 <2006. 9. 7.>
3. 최종학력증명서 2통
4. 삭제 <2006. 9. 7.>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6. 경력증명서 2통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9.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5장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 7. 1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3. 13.>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 11., 2011. 1. 3.>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제5장 삭제 <1999. 6. 7.>

제32조 삭제 <1999. 6. 7.>

제33조 삭제 <1999. 6. 7.>

제34조 삭제 <1999. 6. 7.>

제35조 삭제 <1999. 6. 7.>

제36조 삭제 <1999. 6. 7.>

제37조 삭제 <1999. 6. 7.>

제38조 삭제 <1999. 6. 7.>

제39조 삭제 <1999. 6. 7.>

제40조 삭제 <1999. 6. 7.>

제41조 삭제 <1999. 6. 7.>

제42조 삭제 <1991. 12. 31.>

제43조 삭제 <1999. 6. 7.>

제5장의2 신분보장 <신설 2015. 1. 9.>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①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 7. 26.>

1.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2. 입·퇴원확인서
3.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본조신설 2015. 1. 9.]

제6장 보칙

제44조 삭제 <2020. 3. 13.>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 외에 소방공무원의 인사사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13.>

부칙 <제404호,1983. 12.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자결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41호,1986.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86. 12. 18.>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1988. 1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84호,1989.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1991. 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51호,1991.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청·심사·보고 및 결정은 제32조·제3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제624호,1994.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1997. 4.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호,1999.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00.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03. 1. 28.>

이 구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표 6중 자격증의 자동차운전면허증란중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4. 5. 29.>(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제34조 및 제44조 각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호,2005.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06. 9.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06.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07. 12. 13.>(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09.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09.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0조, 별표 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서장 보직관리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방관서장으로 임용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채용 공고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을 말한다)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1호,2011. 1. 28.>(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의"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37호,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호,2013. 3. 2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의 계급환산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5호,2014. 11. 19.>(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1128호,2015.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2호,201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2016. 1. 2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9호,2016.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호,2017. 7. 26.>(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호,2019.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을 관리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소방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편철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호,2021. 7. 1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22.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3호,2023. 4. 7.>

이 규칙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분야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조 관련)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임용		인사기록카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신원조사회보서 1통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소방령 이상은 2통 종합병원장 발행
2	승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소방령에의 승진임용에는 신규채용 구비서류 첨부
3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면직사유설명서 또는 기타직권면직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당연퇴직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통	
		정년퇴직	없음	
4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5	강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폐지 및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6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7	휴직 및 복직		진단서,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기타 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진단서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장,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발행
8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9	전·출입		전·출입동의서 1통	
10	시보임용		시보임용 단축 기간산출표 1통	법 제10조제3항 해당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전자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전자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항공 분야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정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 운전분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 이하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 이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3. 13.>

계급환산기준표(제23조제2항 관련)

계급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
				초·중·고등학교 교원	전문대학 교원	4년제대학 교원	
소방령	5급		소령	18~23호봉	13~18호봉	11~16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6급 (3년 이상)		대위	14~17호봉	11~12호봉	9~10호봉	계장, 대리 (3년 이상)
소방위	6급	경위	중위·소위·준위	11~13호봉	9~10호봉	7~8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 이상)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호봉			평사원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위 표의 교육공무원란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같은 영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3. 위 표의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6.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무분야	응 시 교 육 과 정
소 방 분 야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구 급 분 야	응급구조학과·간호학과·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 학 분 야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 계 분 야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 기 분 야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건 축 분 야	건축과·건축학과·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6.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6. 3.>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소방 업무 관련 분야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어 능력검정시험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영어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이상
	일본어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중국어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기술·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2.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3.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7. 7. 2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cm)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달리기(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1999.6.7>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9] 삭제 <2020. 3. 13.>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4. 7.>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

□ 안　　건:

□ 의결주문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의 결정

[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

[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위와 관련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심사결과

□ 의결이유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의 결정

[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이유				

년　　월　　일

(기관명) 임용심사위원회　　청인

유의사항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한다.
2. 의결주문의 심사결과란에는 자격상실 의견 시 "자격상실", 임용 또는 임용 제청 의견 시 "임용", 면직 또는 면직 제청 의견 시 "면직"으로 적는다.
3. 의결이유의 이유란에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 결정 또는 면직·면직 제청 의결 대상자에 대하여 법령상 자격상실 사유 또는 면직·면직 제청 사유, 관련 사실관계, 그 밖에 의결 시 판단의 근거가 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는다.

210㎜×297㎜[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4. 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전력조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용 전 입 (예정)				전 직 급	전 근무부서
소 속	계 급	성 명	임용일자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관련근거)로 요구한 전력조사결과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최 종 직 급		최종직위	
	근 무 연 한	년 월	최종학력	
근 무 경 력		근 무 기 간	직 급	근 무 부 서
		~		
		~		
		~		
퇴 직 사 유				
상벌	포 상			
	징 계			
기 타 특 기 사 항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0. 3. 13.>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인사기록변경통보(보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하였기에 통보(보고)합니다.

구 분	소속기관	계 급	성 명	해 당 번 호	변경사항

첨 부 : 관계증빙서류 부.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3.>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 소속 _____

※ 계급 _____

※ 성명 _____

474mm×2

목 차		
순서	기 록 명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10		
11		
12		
13		
14		
15		
16		
비고		

※ 직위	※ 관리번
※ 계급	
	※ 소 속
성명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 ]전입, [ ]전출 동의요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방 공무원 전입(전출)을 요구하니 동의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직 위	계 급	성 명	보직예정부서 (전입자)	사 유

첨 부 :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전출자) 1통.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 ]전입, [ ]전출 동의회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방 공무원 전입(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회보합니다.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동의여부	부동의시의사유	발령예정일자

첨 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전출자) 1통.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 ]파견근무요청, [ ]파견승인신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견(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파견근무 예정시간	파견근무 부서	비 고
파견근무이유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0. 3. 13.>

시간선택제근무(해제) 명령서

1. 시간선택제근무(해제)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2. 시간선택제근무(해제) 소방공무원 성명

3. 시간선택제근무기간

4. 시간선택제근무시간: 주 ○○시간

- 근무형태: 요일별 00:00 ~ 00:00 (○시간)

{또는 ◎, ◇, ⦿요일 00:00 ~ 00:00 (○시간)}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근무(해제)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11.1.3>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1. 업무대행(해제)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2. 업무대행(해제) 소방공무원 성명

3. 피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4. 피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성명

5. 업무대행 기간

6. 업무대행 내용

-

-

위와 같이 업무대행(해제)을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1.1.3>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27.>

*표는 후보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table>
<tr><td>*등록번호</td><td></td><td colspan="4" rowspan="2">채용후보자등록원서</td><td>응시회수</td><td>연도 제 회</td></tr>
<tr><td>*분 야</td><td></td><td>응시번호</td><td></td></tr>
<tr><td colspan="4"></td><td>응시계급</td><td></td></tr>
<tr><td colspan="2">성 명</td><td>*입교통지연월일</td><td colspan="2">*등록유효기간</td><td colspan="3">*등록정리</td></tr>
<tr><td colspan="2">(한자)</td><td>. . .</td><td colspan="2">. . . 등록</td><td>심사</td><td>대조</td><td>등재</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임명연월일</td><td colspan="2">. . . ~ . . .</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 . .</td><td colspan="2">*연 장
. . . 까지</td><td>(인)</td><td>(인)</td><td>(인)</td></tr>
<tr><td>현 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병 역</td><td rowspan="2">필</td><td>역종</td><td>군별</td><td>병과</td><td>계급</td><td>군번</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입 대
연월일</td><td>. . .</td><td>제 대
연월일</td><td>. . .</td></tr>
<tr><td>미필사유</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학 력</td><td>부 터</td><td>까 지</td><td colspan="3">학 력</td><td colspan="2">전공부문과목</td></tr>
<tr><td></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자 격
·
면 허</td><td>연 월 일</td><td colspan="2">종 별</td><td rowspan="4">상 벌</td><td>연월일</td><td colspan="2">사 항</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특 기</td><td colspan="2">취 미</td><td>운 동</td><td colspan="2">종 교</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재산상황	부동산	원	동산	원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신체 검사서	신원 진술서	사진
통수	2통	2통	2통	2통	3통	5매

위의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임용권자) 귀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채 용 후 보 자 명 부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 월일	현주소	최 종 학교명	병역 관계		교육입교 일자	임명일자및 부 서
					군 별	전 역 구 분		

210㎜× 297㎜ [백상지(80g/㎡)]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7. 13.>

채용후보자등록확인증

성 명		성 별	남 여
생 년 월 일			
등 록 번 호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 ( )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210㎜×148㎜[백상지(80g/㎡)]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 7. 13.>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소 속		계급		성명	
주 소					
승인 질병·부상명					
공상년월일	. . .(:)		공상장소		
입원기간	. . . ~ . . .		. . . ~ . . .		
미출근기간	. . . ~ . . .		. . . ~ . . .		
특별위로금 입금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장 귀하

첨부서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사본, 입퇴원확인서,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결재	담당자	계장(팀장)	과장	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3. 5. 9.] [예규 제84호, 2023. 5. 9., 일부개정]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044 - 205 - 7288

Ⅰ. 목 적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에서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채용시험

1. 채용시험 일반

가. 선발예정인원의 산정

1)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일부터 1년간의 예상결원을 합산하여 산정함

<예 시>

① 현재 결원인원이 3명이고 ② 시험공고(요구)일부터 1년간의 예상결원인원이 4명일 경우, 선발예정인원은 7명이 됨 (①의 3명 + ②의 4명 = 7명)

2) 예상결원인원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인원·파견복귀인력 등 임용대기인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3) 정년퇴직, 명예퇴직·공로연수,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

1)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2)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설정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음

<예시>

◇ 최종시험일이 '23. 5. 26.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 최저연령(18세 이상): '23. 12. 31.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05. 12. 31. 이전 출생자
- 최고연령(40세 이하): '82. 1. 1. 이후 출생자

다. 응시요건 등의 기준

1) 영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의 보유 기준일은 최초시험 예정일이며, 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2) 영 제15조제3항 및 제5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은 최초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3) 경력경쟁채용의 근무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경력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4) 응시는 채용시험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 중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됨

라. 시험위원의 위촉(영 제50조)

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여야 함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할 것

나)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4)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시험위원을 상호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마. 점수의 계산

1) 채용시험의 단계별 합격자 결정 및 영 제4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

2)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의2 관련 체력시험의 종목별 측정값에 있어 악력·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둘째짜리 이하는 절사하며, 배근력·제자리멀리뛰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3)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득점의 계산은 시험별 점수를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

예)

필기(50%) + 체력(25%) + 면접(25%) = 시험단계별 비율(100%) + 가점(5점 이내)

$$\left[\left(\frac{\text{개인별 필기시험총점}}{\text{필기시험과목수}} \times 0.5\right) + \left(100 \times \frac{\text{개인별 체력시험총점}}{\text{체력시험만점}} \times 0.25\right) + \left(100 \times \frac{\text{개인별 면접시험총점}}{\text{면접시험만점}} \times 0.25\right)\right] + (\text{가점 5점 이내})$$

❶ 가점 - (자격증 등 가점) 최종 환산점수에 가점 5점 이내 점수 합산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가점) 각 시험단계 개인별 총점에 점수 합산

❷ 합격자 결정 - (시험단계별 합격자) 100점 환산점수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버림)
- (최종합격자) 일괄적으로 100점 환산점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버림)

바. 도핑테스트의 실시(영 제51조제1항제6호)

1)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자의 2 5 퍼센트 범위에서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2) 응시자에게 채용공고를 통해 별표 1의 도핑테스트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3) 도핑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응시자(이하 "면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도핑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함
3의2) 시험실시기관은 면책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
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상, 스포츠의학 및 운동과학 등 해당 분야 의사로 교육훈련담당관이 위촉함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마)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이 소속 부서의 직원 중에서 선정함
바) 위원회에서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하는 즉시 면책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4) 도핑테스트는 시험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합격증명서 발급(영 제53조)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함
아. 추가합격자의 결정(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
1)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2) 위 사유 외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추가합격자 결정은 영 제51조의 사유에 한정(영 제45조제6항)
3)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자.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1) 채용절차가 종료 된 후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임

2)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해당 전형의 응시요건(경력증명서 등), 가산점 등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일체를 말함

3) 채용서류의 보관은 시험 전형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되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합격한 응시자의 자료를 보관해야함. 다만, 필기 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자 전원의 자료를 보관해야함

4)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시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차. 채용후보자 명부에 관한 사항

1)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의 기준일자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일의 최종일로 함

2)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사유는 아래와 같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나) 영 제15조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상실(채용공고의 자격요건 포함)

다) 영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 효력 상실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교육 시 제17조제2항의 졸업 기준에 재차 미달한 경우

마)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영 제51조)

1)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명단의 관보 게재는 응시자가 5년 간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며, 영 제51조제2항의 단순 부정행위의 경우 관보에 게재하지 않음

2)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 영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한하여 징계의결 및 징계를 요구해야 함

2. 종합적성검사

가. 종합적성검사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집합검사(수기검사 또는 집합 후 전산검사)로 실시하여야 함

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사전 제공되어야 하며, 면접시험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3. 신체검사

가. 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함

나.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다.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하며,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병원으로 함

라. 시험실시권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함

4. 면접시험

가. 면접시험 개요

1)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 원칙이며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2) 면접위원의 제척·기피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위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3) 면접위원의 제척·기피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와 면접위원을 교체하거나 예비위원이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을 진행

4) 경력경쟁채용의 면접 시 관련분야 능력 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근무경력·응시자격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문지식·기술의 평가를 시행해야 함

5) 면접 시행 전 면접위원에게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고 평가(구조화된 면접)를 시행해야 함

나. 면접시험의 진행방법

1)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종합적성검사 결과 등의 자료와 사전에 설정한 면접문제의 질문과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하여 검증해야 함

2) 면접시험은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능력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20분 이상 진행함

3)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 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시행해야 함

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함

라. 면접시험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정해야 함

5. 삭제

6.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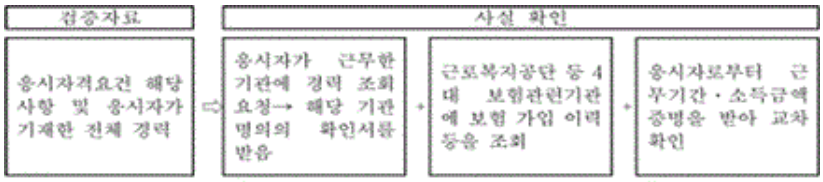
* 역에 의한 계산 방법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定)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월(月), 연(年) 단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복수의 간헐적 경력기간의 합산
① 연(年) 단위는 경력 계산에서 역(曆에)의한 계산이 곤란할 경우 각각의 경력을 일(日)단위로 환산한 다음 1년(365日)로 나누어서 경력을 계산
② 월 단위의 경력 계산의 경우 연단위의 계산을 공제한 뒤 남은 일수를 1개월(30日)로 계산

2) 삭제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
나)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 인정범위의 심의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라)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함
마)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
바) 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학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응시자의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 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교육훈련담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이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사)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종전의 재직기관의 해석범위(영 제15조제1항)
1) 종전의 재직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경력 등은 규칙 제6조의 전력조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징계처분의 판단시점은 징계를 받은 당시의 재직기관 성격에 따라 판단함

※ 응시자 김○○이 A기관에 재직하던 중 2022년에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이후 A기관을 지정·고시에서 제외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의 결격사유로 판단해야 함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규칙 제28조제3항)
1)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조회 요청을 위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세부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는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
3) 응시자격 확인 서류의 제출 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4) 응시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
5) 경력경쟁채용시험 제출서류 확인 요령



<경력 확인>
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 확인 및 교차 검증실시
②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내역
③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한 근무기관 및 기간 대조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회사도 있으므로, 시험실시기관에서 상기 자료 외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 실시 가능

6)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1)에도 불구하고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마.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실시[「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영 제15조 및 제39조]

1) 소방정 이하 경력경쟁채용의 성적 산정방법

서류	체력	면접	필기	실기
○	×	○ (100%)	×	×
○	×	○ (25%)	○ (75%)	×
○	○ (25%)	○ (75%)	×	×
○	×	○ (25%)	×	○ (75%)
○	○ (25%)	○ (25%)	○ (50%)	×
○	○ (25%)	○ (25%)	×	○ (50%)
○	○ (15%)	○ (25%)	○ (30%)	○ (30%)

2) 시험실시권자는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함

3) 임용권자(시험실시권자)는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함(대학교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각각 제출)

Ⅲ. 신임교육(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1. 총칙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법 제6조 및 제26조, 영 제24조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과 관련하여 신임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2) 본 조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신임교육 : 영 제24조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나) 실무수습 : 실무수습이라 함은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관서실습 등을 말함

※ 임용 후는 소방공무원 및 시보임용소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적용

다) 신임교육생 : 위의 신임교육을 받고 있는 자

2. 신임교육생의 지위

가. 신분

1) 원칙적으로 임용후보자는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2) 직무상 행위(실무수습)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4)

3)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정규임용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징계의 결정은 공무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나. 복무

1) 임용후보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실무수습 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신임교육에 임하여야 함

2) 임용후보자의 근무시간, 휴가(특별휴가에 한함) 등 복무사항은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함

다. 보수 및 복리후생

1) 보수

가) 신임교육 중인 신임교육생에 대해서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나) 단, 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정액급식비(현물포함)만 지급함

다)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 근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음

2) 복리후생

가) 임용권자는 임용 전 신임교육 중인 임용후보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함

나) 임용권자는 임용 전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교육훈련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

3. 신임교육생 복무관리

가. 신임교육의 중지

1) 신임교육생이 병역의무의 수행, 부상,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하거나 정지 할 수 있음

2) 신임교육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임용권자는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 된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신임교육생이 병역의무 수행, 부상, 임신 등으로 교육훈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의 정지 및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퇴학처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퇴학처분을 실시함

2) 퇴학처분이 영 제21조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 사유에 이르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처분 전에 있어 임용권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다. 교육훈련기간의 인정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의 기존 교육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교육기간에 따라 응시요건이 완성되는 화재대응능력, 응급구조사 등의 교육은 인정 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교육기간의 부분적 인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남은 잔여기간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예 시 >

12주의 신임교육 교육과정에서 3주(105시간)의 화재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부상으로 인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가교육을 받을 때 3주의 기간을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면제한 기간과 잔여교육기간을 합은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1항의 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비연속적 교육(1주 + 7주)은 인정되지 아니함.

3)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유예한 신임교육생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수료점수 미달로 인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4. 신임교육성적

가. 신임교육 성적의 평가

1) 신임교육 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수습의 성적을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함. 다만, 실무수습 전 임용을 실시하는 경우 등 실무수습 성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신임교육생 교육훈련성적의 통보(「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제3항)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생의 임용예정 3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육훈련성적을 통보해야함

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본 평가계획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종료된 과정을 바탕으로 성적을 평가 할 수 있음

나. 신임교육 성적의 반영

1) 임용권자는 임용후보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임용지역배치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함

2) 다만, 인사관리에 있어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자격자 배치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5. 실무수습

가. 실무수습의 실시

1) 발령: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실무수습 종료일 전일까지임

2) 근무: 실무수습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의 형태는 수습부서의 관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업무의 범위: 원칙적으로 실무수습 업무는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관창보조, 수관전개, 잔화정리, 환자이송보조, 상황관제보조 등 보조 활동에 국한 다만, 채용분야를 고려하여 실무수습을 다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나. 실무수습의 평가

1) 실무수습 관리관의 지정

가) 실무수습을 실시 할 때는 수습부서의 관서장은 실무수습 관리관을 지정하여 신임교육생을 실무수습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나) 실무수습 관리관은 119안전센터장, 팀장 등 신임교육생의 근무시간 중 감독이 가능한 자로 하되 최선임자를 지정

2) 실무수습 평가

가) 실무수습평가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 연계하여 평가하여야하며, 평가비중은 10%로 함

나) 실무수습의 평가는 실무수습 관리관이 실시하며 직무수행능력 및 실습태도 등을 평가함

다) 실무수습 기간 중 <별지 서식 7>에 따라 최소 3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

6.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가. 복무의무 이행의 인정범위

복무의무의 이행은 임용권자 소속의 소방공무원 만을 인정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복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 예 시 >

A도에서 12주의 신임교육을 받은 뒤 임용된 자가 B도의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의무복무기간(12주) 채우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를 반납조치 해야 함

나. 복무의무기간의 산정

복무의무기간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기간(관서실습 기간을 포함한다) 전체를 의미함

※ 임용 후 관서실습 기간은 복무의무기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기종 전환 교육 등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실무수습 교육은 복무의무기간에 산정함

다. 소요경비의 산정

1) 소요경비의 산정범위

가) 강사운영비(내·외부를 불문), 교재비 등 교육훈련운영비용

나) 통상적인 교육훈련시설 관리비용(공과금, 청소용역비용 등)

※ 해당 연도의 소요경비 산정이 곤란할 경우 전년도의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산정

다)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개인 지급물품

소요경비 포함	소요경비 불포함(재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동복, 개인지급 신발(방수화 등), 방화장갑, 방화두건 등	방화복 세트, 등지게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지급품은 재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소요경비의 산정 시 특정직무의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실무수습·교육의 소요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음

Ⅳ.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4호,2019. 1.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20. 1.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호,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이하 "채용규칙"이라"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이하 "채용예규"라"로 한다.

제1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1)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각각 "시험실시권자는"으로 한다.

제3호(3)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84호,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예규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이 예규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표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 시료가 분석되며, B 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는 본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B 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 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단되나, B 시료의 분석 결과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 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치료목적사용 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표 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1. 평정요소 등

가.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S	A	B	C	D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팀워크 및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면접위원 구성

가. 면접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면접위원은 채용예정계급 보다 상위계급인 소방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외부위원은 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다. 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면접위원은 제척이나 회피를 통해 해당 응시자의 시험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면접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불합격 결정방법, 면접시험 진행 절차 등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증서번호

합 격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합 격 사 항)

년　　월　　일

(시험실시기관의 장)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2010.12.25. ~ 2012.12.22.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 - 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홍길동	12345678	구급	서울	소방사	일반경력

연번	제출 서류	제출 여부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고자료4)	
2	주민등록 초본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자격증 사본	
6	박사/석사/(전문)학사학위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	
7	연구실적	
8	특허실적	
9	학위논문	
10	근로계약서	
11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2	기타 실적 관련 서류	

※ 해당 증빙서류 앞부분에 함께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관명 (부서명)	직위 (근무형태)	경력기간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일수 (개월 일)	조회대상기관 인사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FAX	전자 우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 ㅇㅇ병원	2017	주 임	95.05.01. ~ 97.12.01. (2 년 8 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 임 : 폐업사실증명서 1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시·도 공고문(202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2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시·도 공고문(202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2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채용후보자 등 교육훈련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주 소 : (우 : -)

○ 전화번호 : (- -)

※ 휴대폰 : (- -)

○ **유예(정지) 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교육훈련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위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귀 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실무수습(관서실습) 직무평가표

제 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번: 성명: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평 점
직무수행능력	기본소양	15점	( )점
	직무에 대한 이해	15점	( )점
	창의력의 발휘	15점	( )점
실습태도	성실성 및 규율준수	20점	( )점
	적극성 및 책임성	15점	( )점
	직원과의 협조	20점	( )점
총 점		**100점**	( )점

위와 같이 제 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관서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실습관서 : 소방서
평 가 관 : 직 위
성 명 (인)

※ 교육생 성명 및 평가점수를 ( )안에 기입하고, 실습관서명과 평가관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 제317조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고시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시험실시기관의 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도핑테스트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20____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6호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1.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응시번호	
핸 드 폰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 응급 [ ] 기간(주/월)_____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담당의사 서약

성 명		전공분야	
주 소			
전화(팩스)		전자우편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하고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비 고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소방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병역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상훈·논문·수상실적·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여부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소방공무원 채용 및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채용·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경력·4대 보험·자격증·외국어성적·학위취득·장애인 여부 등) 확인기관	채용 관리 (자격확인)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소방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응시번호				【 사 진 】
본인 필적 기재	(예시) 본인임을 확인함	분 야		
	필 적: 본인임을 확인함	성 명		

면 접 실	
⓪	⓪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⑥	⑥
⑦	⑦
⑧	⑧
⑨	⑨

위원 번호
①
②
③
④
⑤

면접 일자
20 . . .

위원 서명
성 명 (서명)

평정요소	위원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가. 문제해결능력	⑩	⑧	⑥	④	②
나. 의사소통능력	⑩	⑧	⑥	④	②
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⑩	⑧	⑥	④	②
라. 팀워크 및 협업능력	⑩	⑧	⑥	④	②
마. 침착성 및 책임감	⑩	⑧	⑥	④	②

비고

297㎜×210㎜[백상지(150g/㎡)]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시행 2023. 5. 9.] [예규 제85호, 2023. 5. 9., 일부개정]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044 - 205 - 728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험범위)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소방학개론의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따른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소방관련 학과)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유사한 학과의 범위"와 제3호의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한 학과의 범위는 별표 2의 소방 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2분의 1 이상인 학과를 말한다.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별표 2의2에 따라 총 45학점 이상 교과목을 편성한 학과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사한 학과"와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판단 결정은 소방청장이 한다.

제5조(시험의 공고) ①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의 공고는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에 대한 특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 및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나라일터)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

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제5조의2 삭제

제6조(신체검사) ①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실시권자가 정한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합격,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제1항의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의 전일까지 나와야 한다.

제7조(체력시험) ①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체력시험은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체력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2호,2011.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제89호,2012. 8. 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5. 1. 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5. 3. 2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현재 공고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9호,2017. 1. 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호,2019. 1.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9. 6. 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이하 "채용규칙"이라"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이하 "채용예규"라"로 한다.

제1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1)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각각 "시험실시권자는"으로 한다.

제3호(3)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85호,2023. 5. 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1]

소방학개론의 범위(제3조 관련)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1의2]

응급처치학개론의 범위(제3조 관련)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분야		내용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1) 응급의료체계	- 구성요소, 교육 및 질관리
	2)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역할과 책임, 전문성유지
	3) 응급구조사의 안녕	- 안전과 건강, 스트레스 관리
	4) 의료/법적 책임	- 의료/법적 책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각각 하위법령 포함) - 응급구조사의 윤리
	5) 응급의료 통신 및 기록	- 응급의료 통신, 응급의료 기록
환자이송 및 구급차 운용	1) 환자구조 및 이송	- 환자이동 및 이송, 구조, 항공이송
	2) 구급차운용	- 구급차운용, 구급차 관리
대량 재난	1) 재난관리	- 재난대비계획, 중증도 분류 - 대량환자이송, 재난현장의 응급처치
	2) 특수재난	- 특수재난관리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분야		**내용**
전문심장소생술	1) 심정지	- 심정지환자의 처치, 소생후 치료
	2) 임박한 심정지	- 서맥환자의 처치, 빈맥환자의 처치 - 저혈압, 쇼크 및 급성폐부종 환자의 처치
	3) 관상동맥증후군	-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처치
	4) 뇌졸중	-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처치
	5) 특수상황 심정지	- 특수질환과 관련된 심정지 환자의 처치
전문소아소생술	1) 신생아소생술	- 신생아소생술
	2) 소아소생술	- 소아소생술
전문외상처치술	1) 손상기전과 외상진료체계	- 외상진료체계, 손상기전
	2) 연조직손상	- 연조직손상
	3) 화상	- 열화상, 특수화상
	4) 출혈 및 쇼크	- 출혈 및 쇼크
	5) 근골격계 손상	- 근골격계 손상
	6) 체강 손상	- 흉부 손상, 복부 손상
	7) 두경부 척추 손상	- 뇌 손상, 척추 손상, 두경부 손상

	8) 환경 응급	- 환경 응급
	9) 중증 손상	- 다발성 손상, 중증 외상소생술
내과 응급	1) 호흡계 응급	- 호흡계 응급질환
	2) 심혈관계 응급	- 심혈관계 응급질환
	3) 내분비계 응급	- 내분비계 응급질환
	4) 신경계 응급	- 신경계 응급질환
	5) 소화기계 응급	- 위장관계 응급질환 - 간담도췌장 응급질환
	6) 비뇨생식기계 응급	- 비뇨생식기계 응급질환
	7) 조혈계 응급	- 조혈계 응급질환
	8) 면역 질환	- 아나필락시스
	9) 감염 질환	- 응급감염질환
	10) 중독 질환	- 중독 - 곤충이나 동물에 의한 독소의 주입
	11) 눈, 귀, 코, 목 질환	- 눈, 귀, 코, 목 응급질환
	12) 비외상성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의 퇴행성, 염증성, 감염성 질환
특수 응급	1) 소아 응급	- 소아평가, 소아응급, 소아외상
	2) 산부인과 응급	- 부인과질환, 산과응급 - 임신합병증, 응급분만
	3) 정신질환과 행동응급	- 정신질환, 행동응급
	4) 노인 응급	- 노인 응급질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2]

[전문]대학교의 소방관련 과목(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과 목 명
필수과목 (1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Ⅰ), 소방관계법규(Ⅱ), 소방설비(Ⅰ), 소방설비(Ⅱ), 위험물질론, 위험물시설론, 인명구조론, 재난대응실무, 소방점검실무, 화재진압론, 응급처치론
선택과목 (19)	행정법, 소방정책론(조직·인사·예산),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지휘론, 건축법, 소방행정실무, 연소폭발론, 특수화재론, 소화설비론, 소방약제학, 피난설계론, 소방정보통신론, 제연설비론, 화재학, 화재조사론, 화생방대응론, 소방장비론

비고

1.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2. 2 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한다.
3. 필수과목은 8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과목당 3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위 각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소방청장이 한다.
5.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으로 한다.
6.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Ⅱ)는 그 밖의 소방청 소관 법령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2의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과목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과 목 명
필수과목 (1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Ⅰ), 소방관계법규(Ⅱ), 소방설비(Ⅰ), 소방설비(Ⅱ), 위험물질론, 위험물시설론, 인명구조론, 재난대응실무, 소방점검실무, 화재진압론, 응급처치론
선택과목 (19)	행정법, 소방정책론(조직·인사·예산),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지휘론, 건축법, 소방행정실무, 연소폭발론, 특수화재론, 소화설비론, 소방약제학, 피난설계론, 소방정보통신론, 제연설비론, 화재학, 화재조사론, 화생방대응론, 소방장비론

비고

1. 1학점은 수업시간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기준으로 한다.
2. 필수과목은 8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최소 2학점 이상으로 한다.
3. 위 각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 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소방청장이 한다.
4.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으로 한다.
5.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Ⅱ)는 그 밖의 소방청 소관 법령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 · 트리빠노쪼마병 · 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 구강 · 인후 ·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 게실염 · 회장염 · 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TBPE 검사 포함)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합격여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정보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별지 제2호서식]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채점표 (남자)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 진 (3.5㎝×4.5㎝) ※ 압인 또는 계인

구 분		평 가 점 수										점 수	측정관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악 력 (kg)	기준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측정결과	<1차> 좌 : 우 :					<2차> 좌 : 우 :						
배근력 (kg)		1	2	3	4	5	6	7	8	9	10		
	기준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1	2	3	4	5	6	7	8	9	10		
	기준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제자리 멀리뛰기 (cm)		1	2	3	4	5	6	7	8	9	10		
	기준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윗몸 일으키기 (회/분)		1	2	3	4	5	6	7	8	9	10		
	기준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측정결과												
왕복 오래달리기 (회)		1	2	3	4	5	6	7	8	9	10		
	기준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측정결과												

측 정 일	점수 계	시험관 (서명)	총괄 감독관(서명)
	점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채점표 (여자)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 진 (3.5㎝×4.5㎝) ※ 압인 또는 계인

구 분		평 가 점 수										점 수	측정관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악 력 (kg)	기준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측정결과	<1차> 좌 : 우 :					<2차> 좌 : 우 :						
배근력 (kg)		1	2	3	4	5	6	7	8	9	10		
	기준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1	2	3	4	5	6	7	8	9	10		
	기준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제자리 멀리뛰기 (cm)		1	2	3	4	5	6	7	8	9	10		
	기준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윗몸 일으키기 (회/분)		1	2	3	4	5	6	7	8	9	10		
	기준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측정결과												
왕복 오래달리기 (회)		1	2	3	4	5	6	7	8	9	10		
	기준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측정결과												

측 정 일	점수 계	시험관 (서명)	총괄 감독관(서명)
	점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0호, 2023. 3. 7.,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32 - 835 - 2335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032 - 835 - 22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해양경과
2. 수사경과
3. 항공경과
4. 정보통신경과
5. 특임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④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轉科)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및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3.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2. 9. 16.>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제5조(임용시기) ① 경찰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대상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삭제 <2022. 9. 16.>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7조(결원의 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3. 2.>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2021. 12. 28.>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나.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2.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임용예정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가.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보안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임용예정계급은 경장 이하로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6.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삭제 <2020. 12. 31.>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임용예정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읍·면지역에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⑥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6.]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 7. 20.>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채용시험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3. 2.>

1.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2.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8.>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 12. 28.>

제25조(시험의 방법)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檢定)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
4.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
5.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7.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①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4. 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서류전형
7. 제7차시험: 면접시험(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

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27조(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공고, 시험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본문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각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및 종합적성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2. 9. 16.>

1.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와 시험 응시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개정 2021. 12. 28., 2022. 9. 16.>

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25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3. 2.]

제29조(응시연령)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1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1세인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5와 같으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 1. 26.>

1. 영어 과목: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별표 7의2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3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각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2.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② 제25조제1항제5호(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2020. 12. 31.>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제34조(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선택과목의 경우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천원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을 그 통보일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37조(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보직관리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교육훈련·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71조,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5장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함정(艦艇), 파출소 또는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부서에 보직해야 한다.

제41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제42조(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상 최하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해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중요한 치안상황 대응, 긴급 현안 처리 또는 지휘권 확립에 필요한 경우
15.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16.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1. 기구가 개편되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교육과정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3.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개정 2020.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직제상 최하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하는 경우
3.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제44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인사교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역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역의 범위, 교류 대상·방법,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7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 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 2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 1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8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6장 승진임용

제1절 총칙

제51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매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0. 12. 31., 2021. 1. 26.>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경정ㆍ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퍼센트(경정ㆍ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한 인원을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추가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58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각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21. 12. 28.>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해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20. 12. 31.>

④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⑤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⑥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⑦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2022. 9. 16.>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86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9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18개월
나.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개정 2022. 9. 16.>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훈장
2. 포장
3. 모범공무원 포상
4.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받은 포상

제2절 경찰공무원 평정

제55조(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평정요소
가.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
2. 제2평정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②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③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해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해야 한다.

④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제57조(경력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7.>

1. 기본경력
   가. 총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정·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다. 경위·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라. 경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마. 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1년간

나. 경정、경감: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마. 경장: 기본경력 전 1년

바. 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기관등,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소속기관등、해양경찰연구센터、해양경찰서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3.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4.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5.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6.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연구센터장
7.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서장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2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3. 재직 중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위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2.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교육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3. 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4.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5.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총경 또는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절 승진심사

제60조(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61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2개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6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소속기관등·해양경찰연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63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정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지방해양경찰청

제64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와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5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58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심사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 9. 16.>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부서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동료·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0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 26.>

1. 경정·경감 계급으로의 승진: 심사승진후보자 7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30퍼센트
2.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40퍼센트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71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제73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8.>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1년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 1년

③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8.>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

과할 수 없다.<개정 2021. 12. 28., 2022. 12. 27.>

⑤ 임용권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2. 12. 27.>

⑥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2022. 12.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과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28., 2022. 12. 27.>

제5절 승진시험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75조(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6조(응시자격)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했을 것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77조(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승진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승진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와 그 밖에 승진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승진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78조(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0조(승진시험 과목 등)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8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21. 12. 28.>

1. 제1차시험 성적: 36퍼센트
2. 제2차시험 성적: 24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제82조(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9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득점은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점수로 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8.>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제8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75조에 따라 승진시험 실시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승진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8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승진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승진시험실시권자가 승진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제85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81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제6절 특별승진

제8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1.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2.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0. 12. 31.>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7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86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 제8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 제86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제88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89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①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86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8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91조(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86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7. 20.>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 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순으로 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제7장 대우공무원

제9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신분보장

제94조(직권면직사유)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또는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해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95조(정년 연장)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정년 연장의 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97조(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 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 연장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0800호,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및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1조, 제34조,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 제6조의2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별표 5의 비고 제5호 중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본다.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한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 선발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까지 실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1조, 제34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 제6조의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17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18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2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36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11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29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301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5일 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1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5일 전에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8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299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4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

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6조·제23조·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351호,2020. 12. 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을 “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법 제6조제3항 ” 을 “ 법 제7조제4항 ” 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법 제14조제1항제2호 ” 를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법 제8조제2항 ” 을 “ 법 제10조제2항 ” 으로 한다.
제8조 중 “ 법 제8조제3항제1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1호 ”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 법 제4조 ” 를 “ 법 제5조 ” 로 한다.
제15조 중 “ 법 제8조제3항 ” 을 “ 법 제10조제3항 ”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를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법 제8조제3항제2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2호 ”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법 제8조제3항제3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3호 ”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법 제8조제3항제6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5호 ”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법 제8조제3항제7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6호 ”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 법 제8조제1항 ” 을 “ 법 제10조제1항 ”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 법 제9조제1항 ” 을 “ 법 제12조제1항 ” 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법 제15조제1항 ” 을 “ 법 제20조제1항 ” 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 법 제8조제2항 ” 을 “ 법 제10조제2항 ” 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 법 제8조제2항 ” 을 “ 법 제10조제2항 ” 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 법 제8조제3항제4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4호 ” 로 한다.
제30조 중 “ 법 제8조제3항 ” 을 “ 법 제10조제3항 ” 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 법 제8조제3항제4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4호 ” 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 법 제17조제3항 ” 을 “ 법 제22조제3항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법 제17조제2항 ” 을 “ 법 제22조제2항 ” 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법 제17조제2항 ” 을 “ 법 제22조제2항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법 제8조제3항제6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5호 ” 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 법 제17조제3항 ” 을 “ 법 제22조제3항 ” 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법 제11조제2항 ” 을 “ 법 제15조제2항 ” 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 법 제8조제3항제4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4호 ” 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 법 제24조제3항 ” 을 “ 법 제30조제3항 ” 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법 제8조제3항제2호 ” 를 “ 법 제10조제3항제2호 ” 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 법 제12조제1항 ” 을 “ 법 제17조제1항 ” 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1419호,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제31조,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8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15호,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00호,2021. 7. 20.>(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퇴학처분”을 각각 “퇴교처분”으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32273호,202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별표 6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09호,2022. 9.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38호,202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0호,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1. 12. 28.>

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부문별	특수기술
정보통신	유선 · 무선 · 정보통신보안 또는 전자통신기술
감식	지문 · 화재 · 족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전산	전산관리 · 시스템운영 · 업무분석 · 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개발기술
항공	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기술
함정	함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장비	무기의 재생 또는 정비기술, 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회계	경리 · 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외사	통역 · 번역 등 외국어 전문능력
특공	대테러 전술 · 작전 수행
구조 · 구급	해상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경비작전	통합방위와 주요 항만시설 방호 등의 계획 수립 · 실행
해양기상	해양기상 분석 및 예측
조선기술	함정 건조의 기획 및 감독 능력
항공관제	항공관제용 통신장비 운용 · 관리와 항공교통의 관제
드론운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의 조종 · 정비 · 관리 기술
건축	시설 및 공간환경의 기획 · 설계 · 시공 및 유지관리
홍보	홍보 콘텐츠 개발 · 관리 및 활용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1. 1. 26.>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인 정 과 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해사법규,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양수사(외사를 포함한다)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운용론, 해양경찰영어, 해사영어, 선박일반(항해 · 기관), 내연기관, 보조기계, 수산법규, 수산학개론, 어구 · 어법 · 어로학, 어장학, 인명구조학(수영을 포함한다), 전기전자, 전파통신공학, 무도학(체포술을 포함한다), 해양법, 헌법, 항해학, 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항해실습, 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범죄학, 해양기상학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비고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9. 1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제1항 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항공 분야는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경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제16조제3항제2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고, 제16조제3항제5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연령은 17세 이상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1. 1. 2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분야	시험별		시험과목
경정	제3차		한국사, 영어, 행정법
	제4차	필수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
순경	제3차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법
		선택	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비고

1.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인 "영어" 및 "한국사"는 각각 별표 7의 기준 점수 및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 중 형사법, 헌법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나. 헌법: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21. 1. 2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시험별	분야별	일 반	해 양
제3차 시험	필 수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선 택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비고

제3차시험 필수과목인 "영어" 및 "한국사"는 각각 별표 7의 기준 점수 및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2. 9. 1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계급별 \ 경과	분야	해양	수사	항공		정보통신		특임		
		해양	수사	조종	정비	전산	통신	구조	특공	구급
총경·경정	필수	형법, 국제법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감·경위	필수	행정법, 형법, 국제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사·경장·순경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엔진	컴퓨터일반, 네트워크보안, 정보보호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선택	항해술, 기관술 중 1과목								

비고

1. 항공경과 시험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2. 해양경과 시험의 필수과목 중 "해사영어"는 출제 범위에서 해상운송, 해상보험 및 기관학 분야를 제외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사 이하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과목은 해사영어·해양경찰학개론 및 형사법(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를 출제범위로 한다)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항해술 또는 기관술 중 1과목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과목은 해사영어·해사법규로 하고, 선택과목은 항해술 또는 기관술 중 1과목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21. 1. 26.>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경정	경위(경찰간부 후보생)	순경
토플(TOEFL)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TOEIC)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신설 2021. 1. 26.>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등급(제31조제2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등급	
	경정· 경위(경찰간부후보생)	순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8]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34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관련)

$$\text{조정점수} = \left\{\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right\} \times 10 + 50$$

비고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응시인원} - 1}}$$

2. 조정점수 산출 결과 0점 미만은 0점으로 처리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613호, 2023. 7. 6.,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32 - 835 - 23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과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과: 홍보、기획、국제협력、감사、운영지원、경비、해상교통관제、해양안전、수색구조、수상레저、정보、장비기술、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않은 직무
2.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전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 특공, 구조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제4조(전과의 유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 감축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해양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해양경과,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해양경과,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1. 경과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3장 임용과 발령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①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원본 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임용권자(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

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승진·전보 외의 임용, 승급 및 그 밖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사항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증명서의 발급)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제4장 인사기록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 등)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유지·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증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전력 조회회보서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이하 "채용 신체검사서"라 한다)
12.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염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정된 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소속 해양경찰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변경 후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해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그 징계처분에 대한 각 목의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징계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해제기간

및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직위해제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기관의 장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징계위원회나 그 밖의 인사업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28.>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통해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수정해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5장 신규채용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31.>

②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할 때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의 인정 한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영 제1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④ 영 제1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정규임용심사) ① 영 제20조에 따른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영 제9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소속 상관의 소견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0. 12. 31.>

제6장 채용시험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4차시험(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28.>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2021. 12. 28.>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28.>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22. 10. 24.>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4. 정보통신, 감식, 전산, 항공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1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22. 10. 24.>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3. 실기시험 성적
4. 면접시험 성적
5. 체력검사 성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 이상 계급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이하 "채용심사관"이라 한다)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평가하고, 채용 담당 주무과장과 인사·정보·감찰 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면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 조사항목을 정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직관리

제33조(전보의 제한) ①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그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직무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의 전보 제한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4.>

제8장 승진임용

제1절 총칙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58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제2절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 또는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해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평정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1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8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다.

제42조(적성·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등급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한다.

1. 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②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해야 한다.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다.

1. 영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개정 2022. 10. 24.>

1.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분야별로 별표 9에 따른 가점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의 국어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2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점: 1점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점: 0.5점
3.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점: 0.5점

④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이하 "승진대상자 명부"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

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은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서로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 영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4.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59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출자 또는 전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보내며, 전입기관은 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영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3.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4.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사유와 퇴직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승진심사

제57조(승진심사 자료)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이하 "승진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8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영 제64조제2항·제3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 및 영 제65조와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승진심의위원 및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12에 따른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고 한다)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제57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의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10. 24.>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서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부친다.
   가. 승진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할 것
   나.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인별 근무성적 등을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할 것
3. 제3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61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순위 결정에 관해서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61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절 승진시험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7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3과 같다.

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① 영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5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절 특별승진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제71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91조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해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9장 대우공무원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4.>

1. 총경ㆍ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74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제7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75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더라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서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제10장 정년의 연장

제77조(정년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이하 "정년연장"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 신청자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31.>

1.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이하 "계급정년"이라 한다)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31일까지

제7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 중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79조(정년연장 심사 시기) 정년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4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신장·체중·흉위부문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최근에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영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정년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년연장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③ 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알아보거나 본인, 그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14에 따른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발령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부칙 <제416호,2020.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력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별표 7 및 별표 8은 2020년 12월 31일(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경력 평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채용시험, 선발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보관에 관해서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변경된 인사기록을 보내야 한다.

제6조(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6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7년 10월 20일 전에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9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점 평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4호,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격증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가점 평정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0호,202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22.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기준 중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중앙소방학교장 표창, 중앙119구조본부장 표창, 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및 소방서장 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91호,2023.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23. 7. 6.>(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자격증(0.5)의 구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로 한다.

제8조 생략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인사발령을 위한 서류(제6조제1항 관련)

발령 구분		필요서류	비고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병적증명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 신체검사서 1통 신원조사회보서 1통 신원진술서 3통 (경정 이상은 4통)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전체사유가 기재된 것 국·공립병원장 및 종합병원장 발행
승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승진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동의서·경위서·직권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정년퇴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휴직 및 복직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현역증서 사본·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발행
직위해제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통	

비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해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4. 6.>

경력경쟁채용 등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계급 / 경과	경정 이상	경감·경위	경사 이하
해양	1급 항해사, 1급 운항사	2급 항해사, 2급 운항사	3·4·5급 항해사, 3·4급 운항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4·5급 기관사
	조선기술사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유도·검도·태권도 2단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한식·양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이상
			화공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위험물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사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해양환경기사, 환경기능사(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수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	감정평가사, 법무사

		사, 세무사, 관세사, 변호사, 변리사	
항공	운송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정비 경력 10년 이상)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정비 경력 6년 이상)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정보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무선설비기능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전자산업기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통신선로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특임	화약류관리기술사	잠수기능장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계급 환산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 계급	국가·지방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공공기관	관련 직무분야 학위 소지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전문대학 교원	대학 교원		
경정	5급	소령	18~23호봉	13~18호봉	11~16호봉	과장 차장	박사학위 소지자
경감	6급 (3년이상)	대위	14~17호봉	11~12호봉	9~10호봉	계장, 대리 (3년이상)	
경위	6급	중위 (항공요원은 준위)	11~13호봉	9~12호봉	7~8호봉	계장, 대리	
경사	7급	준위 (중사)	9~10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경장	8급	중사	4~8호봉			평사원	
순경	9급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서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채용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함정요원 및 항공요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육공무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전문대학 교원 및 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4. 6.>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0. 2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하									
여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하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악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하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0. 24.>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41조제3항제2호 관련)

1.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정기준

구분	내용	단위	배점
기본 근무 점수 (6점)	27일 이상 근무	월	0.5
	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	월	0.4
	23일 이하 근무	월	0.3
업무 수행 점수 (9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 - 인명구조, 조난선박 등 구조 및 지원 업무 - 선박 안전관리,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건	0.3
	범죄 예방, 각종 해양범죄 단속·수사 및 감찰조사 업무	건	1.5
	고소·고발·진정 등 각종 민원(사건) 접수·처리	건	0.1
	해상경비·경호 및 대테러 작전 수행 등 해상치안 관련 업무	회	0.1
	해상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회	0.1
	해상교통과 해상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	회	0.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회	0.1
	각종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등 개발 업무	건	0.1
	각종 장비 운영, 정비업무 및 타 부서 지원 업무	회	0.1
	각종 계획 수립 및 보고서 기안·시행·결재	회	0.1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회	0.1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적용기간 중에 승진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승진일부터 산정한다.
2. 근무에는 휴일·휴가(연가, 병가 등)·출장·파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직위해제·징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 위 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점으로 하고, 이를 3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4. 파견 및 장기교육 대상자는 업무수행 점수를 9점으로 한다.
5.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포상 실적 평정기준

가. 상

훈격 구분	가점
훈장	20
포장	15
대통령 표창	12
국무총리 표창	7
해양경찰청장,각 부처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표창	5
청의 장, 통합방위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특별검사,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	4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지방검찰청검사장·군단장(교육사령관 포함), 중앙소방학교장·중앙119구조본부장·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3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101단장·기동단장·사단장·경찰서장·소방서장 표창	2
지방검찰청지청장·여단장 표창	1.5
함정장·연대장 표창	1

나. 벌

징계·경고·주의 구분			감점
강등			30
정직 3월			25
정직 2월			20
정직 1월			15
감봉 3월			10
감봉 2월			8
감봉 1월			6
견책(영창·근신 포함)			4
경고	해양경찰청장	불문경고	2
		직권경고	1
		주의	0.5
	해양경찰교육원장·지방해양경찰청장	불문경고	1
		직권경고	0.5
		주의	0.25
	해양경찰연구센터장·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정비창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함정장	불문경고	0.5
		직권경고	0.25
		주의	0.1

비고

1. 군의 표창은 통합방위작전 또는 해양경찰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공로로 받은 표창만 인정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기관장의 표창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인정한다.

3. 상벌은 현재 계급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 및 임용 전 신임교육 기간 중에 받은 포상은 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4. "상" 점수 합계에서 "벌" 점수 합계를 뺀 점수의 2분의 1을 평정점으로 하되, 최고점수는 5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5. 종전의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은 각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3. 교육훈련 평정기준

구분		배점	대상	내용
상시학습	학습시간 이수	4	경정 이하	지정학습 및 비지정학습 이수시간을 평가한다.
	부서육성 (부서원 학습시간 이수 장려)	1	경정	부서원의 학습시간 이수 정도를 연 1회 등급제로 평가한다.
직장훈련	체력검정	2	경정 이하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구조역량	1	경정 이하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사격훈련	1	경감 이하	연 2회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위 교육훈련의 항목별 평가 기준·종목 및 등급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4. 견문제출 평정기준

구분		배점
평정	기본점수 (2점)	1. 산정방법(월별):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평정한다. 다만, 월 0.16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frac{1}{6} \times \frac{\text{실제제출건수}}{\text{기본제출건수}}$ 2. 월 기본제출건수 가. 정보 외근근무자: 10건 나. 정보·보안 겸직 외근근무자: 5건

<table>
<tr><td></td><td></td><td>다. 수사 · 형사 · 보안 · 외사 외근근무자: 2건
라. 그 밖의 근무자: 1건</td></tr>
<tr><td></td><td>능력점수
(1점)</td><td>1. 산정방법: 견문 제출건수에 제2호에 따른 각 배점을 곱한 값을 합산하되, 월 0.08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견문 종류별 배점
<table>
<tr><th>구 분</th><th>특보</th><th>중보</th><th>통보</th><th>조사</th></tr>
<tr><td>정보 외근근무자</td><td>0.083</td><td>0.042</td><td>0.021</td><td>0.010</td></tr>
<tr><td>정보 · 보안 겸직 외근근무자</td><td>0.083</td><td>0.083</td><td>0.042</td><td>0.021</td></tr>
<tr><td>수사 · 형사 · 보안 · 외사 외근근무자</td><td>0.083</td><td>0.083</td><td>0.083</td><td>0.042</td></tr>
<tr><td>그 밖의 근무자</td><td>0.083</td><td>0.083</td><td>0.083</td><td>0.083</td></tr>
</table></td></tr>
</table>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최고점수는 3점으로 한다.
3. 타 기관 파견자 및 휴직자 등은 기본점수로 평정하되, 견문을 제출한 때에는 능력점수를 평정한다.
4. 위 표에서 견문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이나 주요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견문

   나. 중보: 정책 자료, 중요 사건 · 행사나 그 밖의 특별한 상황 등을 종합한 견문

   다. 통보: 업무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거나 업무 유관 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견문

   라. 조사: 조사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조사 내용 출처의 신빙성을 보강하여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견문

5. 근무수행태도 평정기준

구 분	감점점수
무단결근 근무지시 위반 경위서 제출 소집불응	1회당 0.1점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1점에서 감점점수를 뺀 점수를 평정점으로 하되, 최하점수를 0점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3. 3. 8.>

기본경력 평정점(제48조제1항제1호 관련)

1. 총경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2년	3년
점수(월 0.889점)	10.668점	21.336점	32점

2. 경정·경감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월 0.667점)	8.004점	16.008점	24.012점	32점

3. 경위·경사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2년	3년
점수(월 0.889점)	10.668점	21.336점	32점

4. 경장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2년
점수(월 1.333점)	15.996점	32점

5. 순경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월 1.778점)	21.336점	32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3. 8.>

초과경력 평정점(제48조제1항제2호 관련)

1. 총경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점수(월 0.250점)	3점

2. 경정·경감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수(월 0.05점)	0.6점	1.2점	1.8점	2.4점	3점

3. 경위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월 0.063점)	0.756점	1.512점	2.268점	3점

4. 경사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월 0.167점)	2.004점	3점

5. 경장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점수(월 0.250점)	3점

6. 순경

경력 평정 대상기간	6개월
점수(월 0.500점)	3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7. 6.>

자격증 등 가점(제50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점)

구분		평정점
자격증 (0.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중직무분야 중 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조선·항공·자동차 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 정보통신 직무분야,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안전관리 중직무분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의 환경 중직무분야,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해양 분야의 기술사·기능장, 2급 해기사 이상,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운송용 조종사, 1급 상담심리사	0.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의료 직무분야의 보건·의료 중직무분야 중 1급 임상심리사, 3급 해기사,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기평가조종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2급 상담심리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0.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중직무분야 중 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조선·항공·자동차 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 정보통신 직무분야,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안전관리 중직무분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의 환경 중직무분야의 기사,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 분야의 기능사, 보건·의료 직무분야의 보건·의료 중직무분야 중 2급 임상심리사, 4급 해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으로 한정하며, 해당 종목에서 선수 경력이 있거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도조종자	0.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0.2

	중직무분야 중 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조선·항공·자동차 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 정보통신 직무분야,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안전관리 중직무분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의 환경 중직무분야의 산업기사, 5급 해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으로 한정한다), 「항공안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시험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스쿠버다이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통신 중직무분야 중 전파전자통신 분야의 기능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 제5호에 따른 해상무선통신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0.1
학위 취득 (0.5)	박사학위	0.5
	석사학위	0.3
	학사학위	0.2

비고

1. 자격증 및 학위취득 가점은 각각 최대 0.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임용 전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 및 학위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에 따른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4. 1·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 및 스쿠버다이버 자격증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0]

언어능력 가점(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국어 능력(0.3)			외국어 능력(0.5)		
	1급	2급	3급	토익 870점 이상	토익 790점 이상	토익 730점 이상
평정점	0.3	0.2	0.1	0.5	0.3	0.2

비고

1. 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 가점은 합산하여 0.5점을 넘을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가점 평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 능력의 가점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가점 평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외의 영어 능력 평가시험이나 일본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 등 외국어 능력 평가시험에 대한 평정점은 위 표에 따라 토익점수에 부여되는 평정점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1]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 가점(제50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수	우	양
평정점	0.5	0.3	0.2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2]

승진심사 수칙(제60조제3항 관련)

1.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2. 해양경찰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능력 있고 발전성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심사를 할 때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5. 심사가 시작된 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 외의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6. 심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면회하거나 외부와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 중 특정대상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편견에 치우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8. 토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9. 심사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 심사 서류를 복사하거나 심사에 사용한 서류를 반출해서는 안 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3]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제67조 관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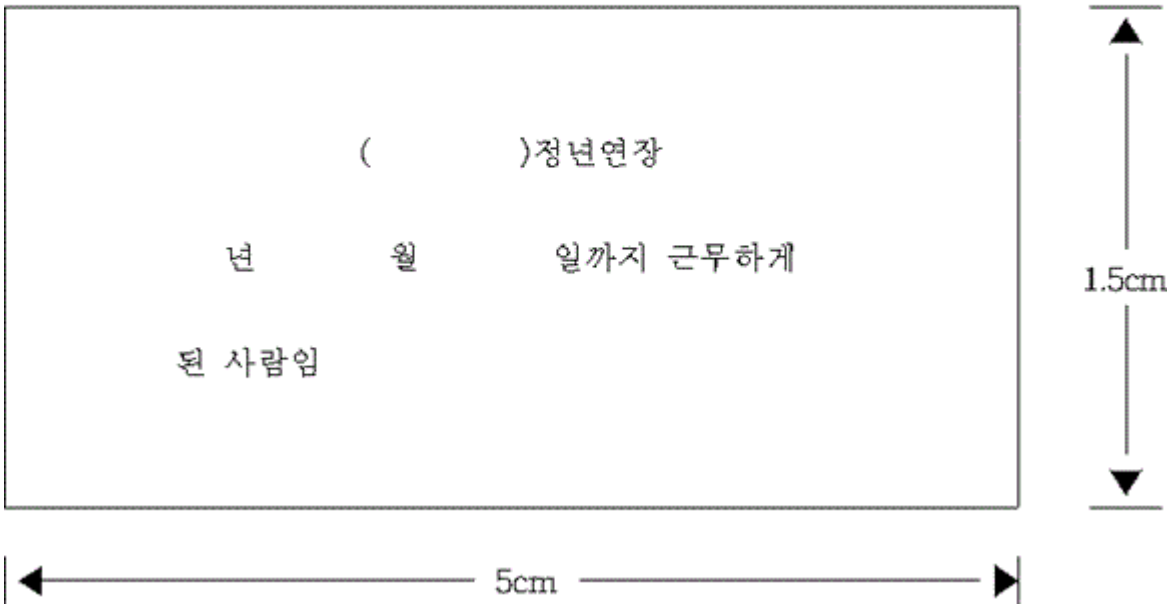
경과별 / 계급별	해양·수사·정보통신·특임경과			항공경과	
	시험 과목		배점비율	시험 과목	배점비율
경정	제1차 시험	행정법	30	행정법	30
		국제법	30	국제법	30
	제2차 시험	행정학	40	행정학	40
경감	행정학		35	행정학	35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35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35
	해양경찰 실무(Ⅱ, Ⅲ, Ⅳ)		30	항공법규	30
경위	형법		35	형법	35
	형사소송법		35	형사소송법	35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중 2과목		30	항공법규	30
경사	형법		35	형법	35
	해사법규		35	해사법규	35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중 1과목		30	항공법규	30
경장	형사소송법		35	형사소송법	35
	해사법규		35	해사법규	35
	해양경찰실무(Ⅰ)		30	항공법규	30

비고

1. 해양경찰실무(Ⅰ)는 함정실무(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수준), 파출소실무(「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 처벌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원·감사·대변인실무로, 해양경찰실무(Ⅱ)는 관리운영으로, 해양경찰실무(Ⅲ)는 경비안전으로, 해양경찰실무(Ⅳ)는 수사정보로 한다.
2. 행정학은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 및 인사·재무·환류행정으로 한다.
3.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다.
4. 해사법규는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防除)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 공고 시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한다.
5. 항공법규는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4]

정년연장카드인(제81조제3항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 찰 공 무 원 임 용 서

생산등록번호	
등 록 일	
결 재 일	
공 개 구 분	

협조자			

제목					
번호	계급	성명	임용 또는 제청(추천)사항	현 부서(직위)	임용일
1					
2					
3					
4					
5					
6					
7					

210㎜×297㎜(백상지 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

임용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용조건			
임용 구분	채용	[ ] 공개경쟁채용시험 [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승진	[ ] 시험승진 [ ] 심사승진 [ ] 특별승진		
	경과구분			
자격	학력			
	경력			
	자격증			

임용 대상자 제출서류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승진임용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최종학력증명서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경력증명서 5. 채용 신체검사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승진임용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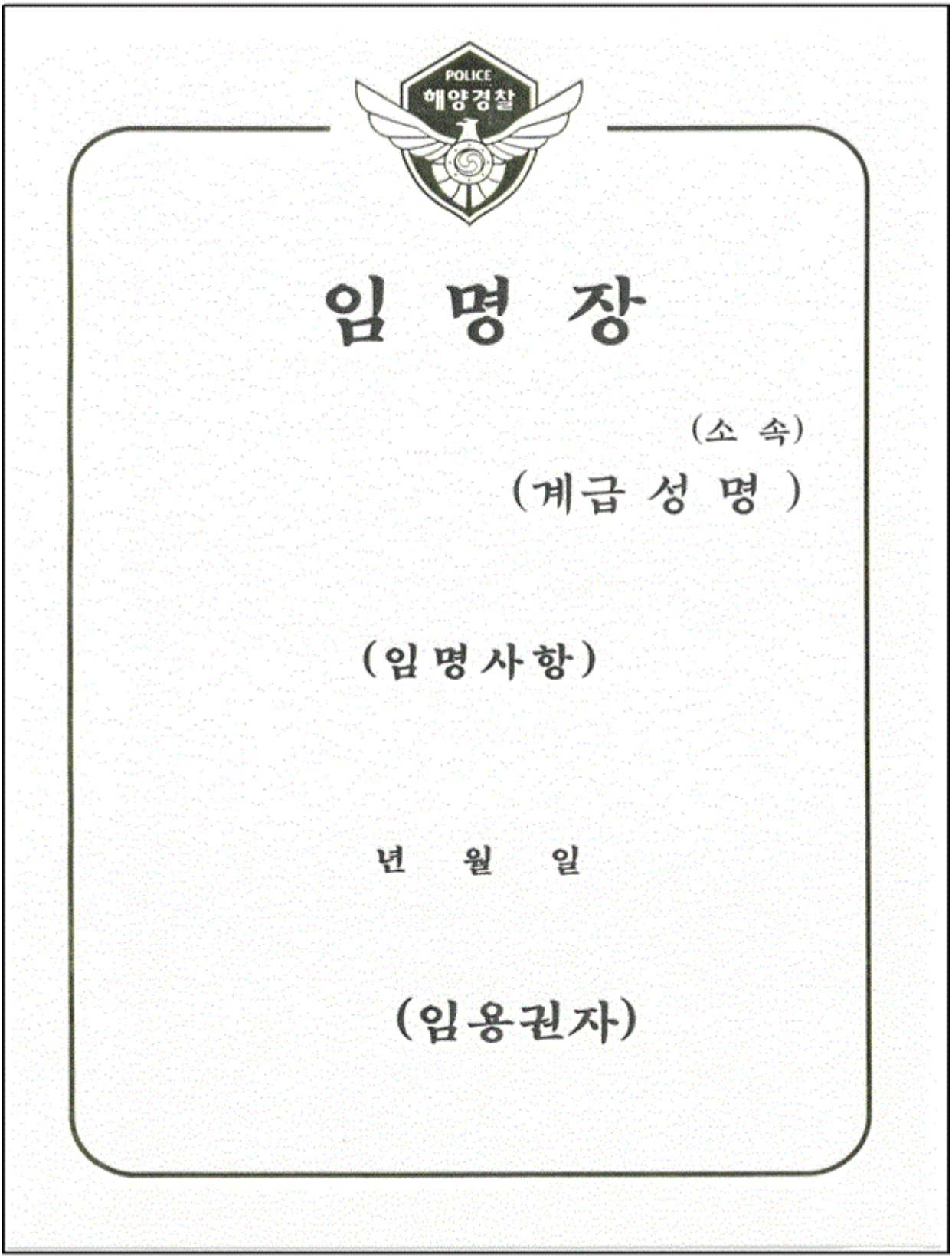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 대상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용 대상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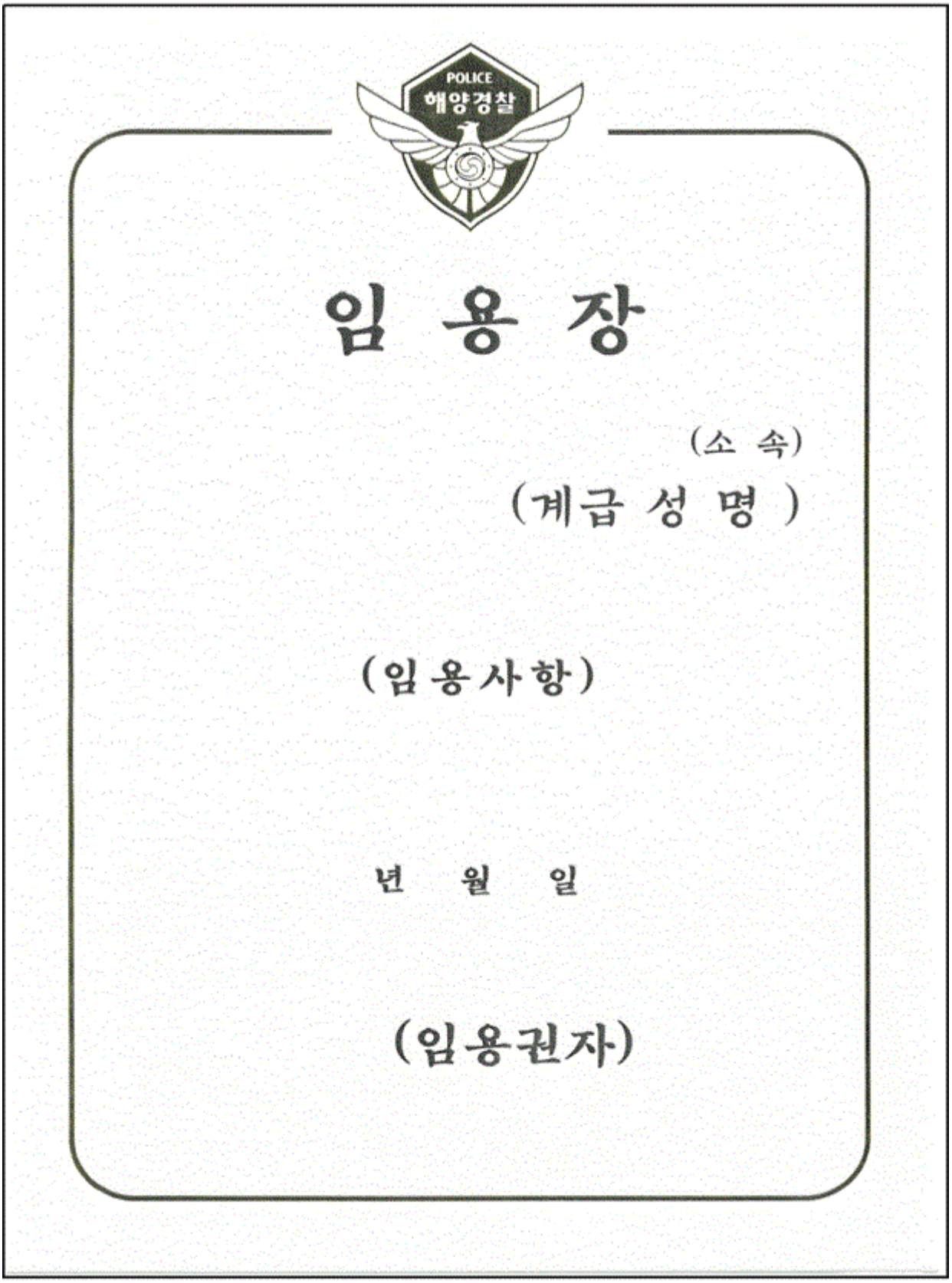
210㎜× 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 297㎜[백상지(15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297㎜[백상지(15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계 급) (성 명)

(발 령 사 항)

년 월 일

(임 용 권 자)

위와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지 자)

210㎜×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발령사항)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 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발 령 대 장

발령일자	소 속	경 과	계 급	성 명	발령사항	기록자	비고

297㎜×210㎜[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

경 과 ※ _____

계 급 ※ _____

성 명 _____

474㎜×296㎜[백상지(150g/㎡)]

(내면좌측)

목차		
순서	기 록 명	확인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증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증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경력증명서	
10	전력 조회회보서	
11	채용 신체검사서	
12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합니다)	
비고		

(내면우측)

※ 경 과	※ 관리번호
※ 계 급	
	※ 소 속
성 명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번호		퇴직구분	일자	
①주민등록번호			사유	

②성명		※⑦주소		※⑧생활근거지		사진 (3.5cm X 4.5cm)
③생년월일				※⑨세대주와의 관계		
※④계급		※⑩재산	동산 / 부동산 / 재산총액	가족 / 자가□ 차가□ / 종류 / 월수입	생활정도 / 상중하	
※⑤경과		⑪정당 사회단체	단체명	직책	가입연월일	
※⑥소속		⑫병역	체격등위 / 역종 / 군별	병과 / 입대 연월일	전역 연월일 / 계급(제대당시)	

⑬ 임용 사항	계급 / 구분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 정감	치안 총감	⑭취미·특기
	임용일자												취미
	임용과정												특기

⑮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비고

⑰ 신장 상태	키	몸무게	시력	혈액형	건강상태	외모(특징)
	cm	kg	좌: 우:			

⑱ 학력	기간	학교명	수업연한	전공·학위

⑯ 자격 면허	연월일	종별	수여기간

⑲ 외국 시찰	기간	계급	국명(지명)	목적	시행기간

⑳ 상훈

연월일	계급	종류	공적 개요	호수	수여기관

㉑ 징계·형벌

연월일	계급	종류	사유	발령기관

㉒ 교육훈련

기간	계급	종류	성적		실시기관
			평균점수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㉓경찰경력							㉑외국어능력	외국어명	회화			번역			작문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발령 연월일	계급	지휘관 또는 직무대리	부서 및 직책	경과	단기전보 및 직무대리사유	기록자 (인)											
							㉕일반경력(군 경력 포함)										
							발령연월일		계급		부서 및 직책				기간		

							㉖복무상황						
							구분 연도	연가	공가	결근	병가		직위해제· 휴직기간 및 사유
											공상	기타	

							㉗부가직책 발령사항(회계물품관리 공무원 및 위원 임면 등)				
							발령연월일	계급	부서 및 직책	발령사항	기록자 (인)

(성명 :) ㉘승 급 기 록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발령연월일																
기록자 (인)																

호봉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발령연월일																
기록자 (인)																

호봉획정근거

경력					전력 조회					비고
경력연수	직위 또는 직종	근무 기관	증명발급 기관	문 서 번 호 및 일 자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 경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 일자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정연월일	사정경력연수	사정호봉	잔여 기간	인사담당관
1차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2차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3차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㉙근무성적 평정			㉚경력 평정			㉛전과			
평정 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평정 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전과 연월일	경과		시행기관
							부터	로	
						㉜경과 관련 자격증			
						발급 연월일	자격구분		발급기관

<table>
<tr><td colspan="2">㉝보 충 란</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의
사항</td><td rowspan="2">1. 본 표의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사실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는 연필로 기록한다.</td><td rowspan="2">확인</td><td>기록자</td><td>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계급 성명 ㊞</td></tr>
<tr><td>소속 기관장</td><td>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td></tr>
</table>

(뒷 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 등 록 번 호					④응시횟수	제 회
제 회 번					응시번호	번
					응시계급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성별	※입교통지 연월일	※등록 유효기간	※등록정리		
			1.	20 . . .	심사	대조	등재
(한글)	. . .	남□	2.	※ 연 장 기 간			
	(만 세)	여□	※임명 연월일	20 . .~20 . . .			
(한자)					(인)	(인)	(인)
			20 . . .	20 . .~20 . . .			

⑤ 현주소			사진 (3.5㎝ X 4.5㎝)
⑥병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 연월일 . . . 제대 연월일 . . .	
	미필 사유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교	전공

⑧ 자 격 ·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특 기	⑪ 취 미	⑫ 운 동	⑬ 종 교

210㎜×297㎜[백상지(80g/㎡)]

⑭경 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기관

⑮재산사항	〈가〉부동산	원	〈나〉동산	원

⑯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⑰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 별	나 이	직 업	최종학력	비 고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임용권자) 귀하

출원인 제출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채용 신체검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 병적증명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번호	성 명	현주소	최종 학교명	병역 관계		입교 여부	임명 연월일	임용 부서
				군 별	전역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

성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등록번호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190mm×134mm(백상지 80g/m²)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종합 의견서

수험번호		성 명	
채용심사관 의견			
종합 검토 의견			
참고 사항			

○○○○○ 채용심사관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

1.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2.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경찰공무원 성명

3.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

4.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시간: 주 ○○시간

- 근무형태: 요일별 00 : 00 ~ 00 : 00 (○시간)

{또는 ◎, ◇, ⊙요일 00 : 00 ~ 00 : 00 (○시간)}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를 명함.

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1. 업무대행(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2. 업무대행(해제) 경찰공무원 성명

3. 피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4. 피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성명

5. 업무대행 기간

6. 업무대행 내용

-

-

위와 같이 업무대행 (해제)을 명함.

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

○ 평정대상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 평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평정 분포비율

수(47점 이상)	20%
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가(25점 미만)	10%

1.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평정요소 및 배점 / 평정점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차평정자 계급: 성 명 : ㉮
평정기준	①직무의 양	②직무수행의 정확성	③직무수행의 신속성	④지식 및 기술	⑤이해 및 판단력	⑥기획 및 창의력	⑦관리 및 지휘력	⑧성실성 및 규율준수	⑨친절 및 협조성	⑩적극성 및 책임성	2차평정자 계급: 성 명 : ㉯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가?	담당 직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	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부하직원과 협동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	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상관, 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협동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의욕, 책임감 및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	3차평정자 계급: 성 명 : ㉰
평정점수											

1·2차 평정자	점수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평정 점수
		1.5	1.25	1.0	0.5	1.0	0.75	0.5	0.25	1.0	0.75	0.5	0.25	1.0	0.75	0.5	0.25	1.5	1.25	1.0	0.5	2.0	1.75	1.5	1.0	2.0	1.75	1.5	1.0	2.0	1.75	1.5	1.0	1.5	1.25	1.0	0.5	1.5	1.25	1.0	0.5	
	1차(15)																																									
	2차(15)																																									
3차 평정자	점수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평정점수
		2.0	1.75	1.5	1.25	2.0	1.75	1.5	1.25	2.0	1.75	1.5	1.25	2.0	1.75	1.5	1.25	2.0	1.75	1.5	1.25	2.0	1.75	1.5	1.25	2.0	1.75	1.5	1.25	2.0	1.75	1.5	1.25	2.0	1.75	1.5	1.25	2.0	1.75	1.5	1.25	
	3차(20)																																									
기 타 (참고사항)																																										총 점

※ 평정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표로 표시합니다.

364mm×257mm(백상지 80g/㎡)

2. 성격(평정대상자의 특징적인 것을 4가지 이상 선택하여 "O" 표시)

요 소 별		1차 평정	2차 평정
⑪지도력	민 주 형		
	자유방임형		
	권 위 형		
⑫근 면 성 실			
⑬무사안일주의			
⑭솔 선 수 범			
⑮책임감 결여			
⑯협 동 단 결			
⑰파 벌 조 성			
⑱협 조 적 · 타 협 적			
⑲이 기 적 · 독 선 적			
⑳겸손하고 예의바름			
㉑편견과 아집이 있음			
㉒순 응 적			
㉓반 발 적			
㉔자제력이 있음			
㉕감 정 적			
㉖적 극 적			
㉗소 극 적			

3. 적성

구분 / 요소별	1차 평정			2차 평정		
	적합	보통	부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㉘지 휘 관						
㉙참 모						
㉚기 획 요 원						

4. 발전성

요 소 별	1차평정	2차평정
㉛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		
㉜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보통이다.		
㉝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5. 주위의 평판

㉞좋다		
㉟보통이다		
㊱나쁘다		

6. 청렴도

㊲문제될 것 없다.		
㊳함부로 물품을 받는 버릇이 있다.		
㊴대·내외 사람에게 물품을 요구하는 버릇이 있다.		

7. 음주관계

㊵전혀 마시지 않는다.		
㊶분별하여 마신다.		
㊷마시면 이성을 잃는다.		

8. 이성관계

㊸문제가 없다.		
㊹문제가 된 적이 있다.		

9. 가정관계

㊺원만하다.		
㊻보통이다.		
㊼원만하지 않다.		

10. 건강상태

㊽건강하다.		
㊾보통이다.		
㊿허약하다.		
(51)질병이 있다.		

364mm×257mm(백상지 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4. 6.>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

○ 평정대상자
소 속:
계 급:
성 명:

○ 평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제 1 평 정 요 소							제 2 평 정 요 소								총 계	단 계 별 평 정 자
항목 / 평정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 상 실 적	교육훈련	견문제출	근무수행 태도	계	항목 / 평정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계		
배 점	3	5	8	3	1	20	배 점	9.5		11		9.5		30	50	1차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내 용	기본 근무 실적 평정, 별표 6 제1호의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정 기준에 따른다.	상벌점수 상계, 별표 6 제2호의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따른다.	상시학습 및 직장훈련 평가, 별표 6 제3호의 교육훈련 평정 기준에 따른다.	견문제출, 견문활용도에 따른 능력 평가, 별표 6제4호의 견문제출 평정 기준에 따른다.	근태사항 평정, 별표 6 제5호의 근무수행 태도 평정 기준에 따른다.	소 계	내 용	· 담당 직무의 양 · 직무수행의 정확성 · 직무수행의 신속성		· 직무 지식 및 기술 · 직무의 이해력 · 창의력 및 기획력 · 관리 및 통솔력		· 성실성 및 준법성 · 친절도 및 협조성 · 적극성 및 책임성		소 계	제1평정 + 제2평정	2차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차 평정							1차 평정	3.5		4		3.5				3차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 평정 (확 인)							2차 평정 (확인)	3.5		4		3.5				
3차 평정 (확 인)							3차 평정 (확인)	2.5		3		2.5				
비 고																

※ 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정, 2·3차평정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정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제2평정 분포비율

· 수(29점 이상)	20%
· 우(26점 이상 29점 미만)	40%
· 양(20점 이상 26점 미만)	30%
· 가(20점 미만)	10%

210㎜×297㎜(백상지 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6.>

경력·가점 평정표

평 정 대상자	소속		평정자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확인자	직위	
	현 계급 임명 연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현 계급 재직기간	산입 또는 제외 기간	경력 평정기간	평정점
경력	기본경력				
	초과경력				
※ 산입 또는 제외 사유:				계	

구분		종류	취득일	평정점
언어능력	국어 능력 검정급수			
	외국어 능력 검정점수			
자격증				
학위취득				
적극행정				
			계	

※ 비고: 경력 평정 시 산입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적용기간을 기재합니다.

1. 산입기간: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1) 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20퍼센트, 6) 사법연수생 수습 기간,
   7)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근무기간, 8) 강등 직전 계급 재직기간
2. 제외기간: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1) 휴직기간(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10㎜×297㎜[백 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자 ㊞

조정자 ㊞

순 위		소속	계급	성명	평 정 점				비고
정기	조정				근무성적	경력	가점	계	

※ 비고: 근무성적 기재방법

1. 근무성적란 윗줄: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퍼센트,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퍼센트를 합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습니다. 다만, 경장·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습니다.
2. 근무성적란 가운뎃줄: 왼쪽 란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퍼센트,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습니다. 다만, 경장·순경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습니다.
3. 근무성적란 아랫줄: 왼쪽 란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습니다. 다만, 경장·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승진심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해양경찰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이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승진심사(심의)위원회 위원(간사 · 서기)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 × 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승진심사표

심사위원 (인)

순위	소 속	계 급	성 명	평 정 성 적								심 사 결 과	비고
				경험한 직책	승 진 기 록	교 육 훈 련	근 무 성 적	상 벌	지휘관 추천	적 성	계		

210㎜×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순위	소 속	계 급	성 명	종 합 평 정 성 적								심 사 결 과	비고
				경험한 직책	승진 기록	필수 교육	근무 성적	상벌	지휘관 추천	적성	계		

210㎜× 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승진심사 의결서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　　)승진임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한다.
(　　)승진임용예정자를　　명으로 한다.
년　　월　　일 (중앙 /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간 사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순 위	소 속	계 급	경 과	성 명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탈락자 명부

순 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1. 소속별

구분 / 소속	정 원	현 원	대 비	총 승진 대상 인원	승진예정 인원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선발 인원	비 고
계								

210㎜× 297㎜[백상지(80g/㎡)]

2. 경과별

구 분 \ 경과	계	해 양	수 사	항 공	정보통신	특 임	비 고
정 원							
현 원							
승진대상 인원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선발 인원							

3. 근속연수별

구 분 \ 근속연수		계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비 고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총 근속 기간												
	현 계급 근속기간												
선발 인원	총 근속 기간												
	현 계급 근속기간												

4. 연령별

구 분 \ 연 령	계	24세 미만	24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55세 이상	비 고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선발 인원											

5. 학력별

구 분 \ 학 력	계	대학원 졸업	대학 졸업	대학3년 수료	대학2년 수료	대학1년 수료	고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비고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선발 인원										

210㎜ × 297㎜[백 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일련번호	소 속	계 급	성 명	연령	근속연수		공 적	의결 결과 (가·부)
					총 근속기간	현 계급 근속기간		

210㎜×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정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소속	담당직위
	계급	경과
	성명	생년월일
	전문직위 보직기간 . . . ~ . . .	연장기간 년
	자격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에 따라 계급정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 서류	1.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 2. 정년연장 신청자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소견서 1통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12. 31.>

정년연장 서약서

본인은 20 . . .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연장기간 중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계급

○○○ 귀하

210㎜×297㎜[백 상지(80g/㎡)]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시행 2023. 1. 1.] [예규 제94호, 2022. 12. 22., 일부개정]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032 - 835 - 24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무책임자) 채용시험의 주무책임자(이하 "주무책임자"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은 교육훈련담당관, 지방해양경찰청은 채용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4조(채용시험공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2. 시험주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4.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5. 시험일시 및 장소
6. 시험과목 및 배점
7. 시험방법
8. 최종합격자결정
9. 시험가산점
10. 합격자 발표일자 및 방법
11. 응시자 제출서류
12. 합격자 처우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원서접수 및 응시표 발급) ①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응시자 명부 등 관련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무책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치를 통해 응시자가 응시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6조(문제의 형태 및 출제수) ①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 출제수는 매 과목 20문제 이상으로 한다

② 선택형 및 기입형 필기시험 문제 출제수는 매 과목 선택형 20문제, 기입형 5문제 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형 필기시험 문제 출제수는 매 과목 2문제 이상으로 한다.

④ 논문형 및 기입형 필기시험 출제수는 매 과목 논문형 2문제, 기입형 10문제 이상으로 한다.

제7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과목별 2명 이상
2. 서류전형 시험위원: 분야별 2명 이상
3. 면접시험 시험위원(이하 "면접위원"이라 한다): 단계별 2명 이상
4. 실기시험 시험위원(이하 "실기위원"이라 한다): 분야별 2명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문제 출제위원장(이하 "출제위원장"이라 한다)을 별도로 임명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와 시험문제지 인계 및 답안지의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위원장 및 실기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시험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험을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채용시험 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2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심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② 영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이하 "종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2. 전체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임용후보자를 결정할 때에는 복수로 한다.
5.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경찰학·법률학·경찰학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
3. 인권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민안전 및 해양경찰행정 분야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용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등의 공정한 심사·추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부서의 장 채용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험문제출제) ① 시험문제의 출제는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② 각 과목별 출제위원은 예정 출제수의 2배수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작성하여 별도 1에 따른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출제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 중 실제로 출제할 시험문제는 출제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시험문제지 인쇄 등) ①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출제위원장 책임하에 필요한 수량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쇄한다.

② 인쇄 중 파손된 시험문제지 등은 출제위원장 및 감찰관 입회하에 분쇄 처리한다.

③ 시험문제의 인쇄는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쇄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출제위원장이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의 형태에 따른 답안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택형 답안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2. 논문형 답안지: 별지 제6호의4서식

⑤ 포장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포장표면에 과목, 매수를 기입하고 출제위원장이 보관하며, 주무책임자에게 인계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인계자가, 1부는 인수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10조(시험관리관 및 시험감독관) ① 주무책임자는 필기시험장별 정관리관 및 부관리관 각 1명씩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정관리관은 경정급 이상, 부관리관은 경감급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수송과 관리

2.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시험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3. 시험장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의 처리와 문제의 해결
4. 그 밖에 채용시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무책임자는 각 시험장내 시험실별로 정감독관 1명과 부감독관 1명 이상을 지정하며 정감독관은 해당 시험실별 응시자의 응시계급과 같거나 상위계급으로 하고 시험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험감독관 근무요령(별표 1)
2. 응시자 주의사항 고지(별표 2)
3.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회수 및 부정행위자 적발
4. 그 밖에 시험장별 시험관리관으로부터 교육 받은 사항의 처리

제11조(시험문제지 등 관리)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 당일 시험장별 시험관리관이 시험감독관에게 직접 전달한다.

제12조(시험의 진행) 채용시험의 시작, 종료 및 진행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3조(시험단계별 실시방법) ①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및 이 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해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8호의2서식에 규정된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채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통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제2차시험(체력검사)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4 기준에 의해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8호의2서식에 규정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차 및 제2차시험의 합격여부 판정은 검사의 전 과정을 행한 후 즉석에서 행하며 검사관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경위급 이상이 되고, 판정관은 경정급 이상 계급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및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의 시험시간은 매 과목당 20분 이상으로 한다.

⑤ 제5차시험(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위원이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⑥ 제6차시험(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까지 갖추어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

⑦ 제7차시험(면접시험)은 1단계(집단·토론면접), 2단계(개별·심층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인원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9호의2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채점하고 그 집계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경찰공무원 채용면접시험 집계표에 따라 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

은 별표 5에 따른다.

⑧ 실기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의2(시험위원의 제척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면접위원장 또는 실기위원장은 소관 시험의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시험실시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3. 응시자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경우

② 응시자는 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면접위원의 구성 등) ① 면접위원은 주무책임자가 적합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내부 면접위원의 경우 응시계급과 같거나 상위계급으로 임명하고, 외부 면접위원은 직무 또는 심리 등 채용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2단계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4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는 이 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필기시험장관리) ① 주무책임자는 필기시험장 각 시험실별 응시인원이 40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시험실별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 간격을 두어 응시번호순으로 단독 착석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우 좌석을 응시번호 순서로 배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실에는 응시표, 신분증,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및 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④ 시험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전에 응시자를 지정좌석에 착석하게 하고 응시표 및 신분증과 응시자를 대조 확인한 후 답안지 정해진 곳에 날인해야 한다.

⑤ 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이석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화장실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실 할 수 있다.

⑥ 시험실별 정감독관은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배부된 답안지 전 수량을 회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보고하고, 답안지는 시험실시기관에서 보존한다.

⑦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채점실운영) ① 답안지의 채점, 검산 등 시험사무의 공정ㆍ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채점실을 따로 두어 운용한다.

② 출제위원장은 채점실 출입의 규제 그 밖에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③ 채점실 배치 및 작업 단계는 별도 2 및 별도 3과 같다.

제17조(답안지의 처리) ① 논문형 답안지는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하고 선택형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택형 및 기입형 병행 출제 시 채점위원을 지정하여 채점하게 할 수 있다.
② 선택형 답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2. 칼이나 그 밖의 기구로 긁거나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답안란을 고쳤을 경우
3.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산자동처리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③ 논문형 답안지 채점은 2명의 출제요원이 실시하며 "갑위원" 및 "을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논문형 답안지 채점위원들은 채점에 앞서 답안지의 답지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에 따라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을 잘라내고 답안지 집계·채점부분(위쪽)만을 가지고 채점한다. 이 때 갑위원이 먼저 채점하고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의 채점란(欄)을 잘라낸 후 을위원이 채점한다.
⑤ 절취한 답안지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은 채점 종료 후 집계할 때까지 출제위원장이 보관한다.
⑥ 채점위원이 정정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제위원장 날인 후 정정해야 한다.
⑦ 채점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관중인 답안지의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 집계·채점부분(위쪽)을 붙이고, 정해진 곳에 득점을 옮겨 적은 후 집계한다.

제18조(성적집계) ① 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않는다.
② 시험성적 집계는 2명 이상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검산하여 성적집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③ 전산채점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검사를 필한 때에는 성적 고득점자 순서로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9조(유사답안의 처리) 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제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문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제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출제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문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은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불합격 사유는 구체적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제3차 및 제4차시험 합격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관련 직무분야 학위·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은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21조(합격자 발표 등) ① 제1차 및 제2차시험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3차 및 제4차시험 합격여부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기 전에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2조(시험관계서류 편철) 채점이 완료된 답안지 및 응시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하며,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1. 응시원서
2. 신체·체력검사서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4. 답안지
5. 면접 또는 실기시험 채점표

제23조(시험서류의 비공개) 채용시험 관련서류는 특별히 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 실시결과를 시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391호,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인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2009년 중 공고된 채용시험에 해기사면허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채용 분야에 응시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비고 4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조종사면허에 대해 가산점을 인정한다.

부칙 <제456호,2011. 7. 2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관련 별표 3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시설, 인원 및 방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관련 별표 4의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및 수영능력 배점기준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9호,2014. 6. 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호,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7호,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의2 서식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호,2018. 5. 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호,2019. 2.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20. 2. 2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2. 12. 22.>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제10조제2항 관련)

1. 시험감독관은 시험 진행시간표를 확인하고 입실 응시자를 지정좌석에 착석하게 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교양, 답안지 배부, 문제지 배부 및 회수시간 등을 철저히 하며, 시험관리관 지시에 따라 시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답안지와 시험문제지 개봉·봉인시 응시자 2인 이상을 입회 후 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한다.
3. 답안지는 여유분을 감안해서 교환해주며 교환된 과지 답안지는 회수하여 ×표하고 답안지 봉투에 동봉해야 한다.
4. 시험시작과 끝, 시험종료 10분전, 5분전은 알리는 신호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며, 종료시간의 신호가 방송되면 일제히 시험을 중지하게 한다.
5. 답안란 한 곳에도 정답을 표기 않거나 둘 이상 표기한 경우 그 문제는 무효처리 됨을 사전 반복 고지한다.
6.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공개적으로 하되,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개별적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
7. 출제문제의 내용에 대한 응시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즉시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8. 시험감독자가 문제지를 보고 있거나 특정 응시자의 답안작성을 보거나 특정 응시자의 옆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
9. 문제내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서는 안된다.
10. 답안지의 시험감독관 확인란에는 반드시 정감독관이 날인해야 한다.
    ※ 확인시 응시자 사진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에 기재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다.
11. 대리시험 등 시험부정행위 적발시 즉시 보고한다.
    가. 시험장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언행을 할 때에는 경고 없이 즉시 퇴장시킨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화장실 사용 이외의 사유로 시험 중 이석 시 해당 시간내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나.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묵인, 동조하였을 때는 즉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엄벌한다.
    다. 해당자의 응시표 및 시험문제지와 답안지 기타 부정행위에 사용한 증거물은 압수하고 시험실에서 퇴장시켜야 한다.
12. 부감독관은 매시간 응시인원을 파악하여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13. 답안지의 취급시 일체 누구에게 주거나 파기할 수 없으며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는 모두 회수하여 매수를 확인한 후 기록한다.
14. 시험장별로 배치된 정감독관은 답안지 시험감독관 확인란에 찍은 도장을 답안지 겉봉투 인영등록서에 등록한다.
15. 선택형답안지 표기시 답안(과목코드 및 응시번호 등을 포함한다)은 수정테이프로만 수정이 가능하다.
16. 선택형답안지 교환은 답안 이기시간을 감안하여 시험종료 5분 전까지 교환 가능하며, 시험종료 방송시

모든 시험을 종료한다.(필히 사전공지)

17.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 소지품 검사 등 보안조치를 이행한 후 감찰관 등의 입회(여자는 여자 시험감독관 입회)하에 사용이 가능하며, 시험 사무 주무책임자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에 화장실 내·외부 및 소지품 검사를 위한 충분한 준비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중간퇴실은 금지한다.
19. 시험시작 전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또는 청색볼펜) 및 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물품은 시험실 앞으로 제출토록 고지한다.

[별표 2]

응시자 주의사항(제10조제2항 관련)

1.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엄수하고 답안지 뒷면 주의사항을 읽어야 한다.
2. 시험실에 입장한 후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잡담을 하거나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3. 시험실내 휴지 오물 등을 버리거나 침을 뱉지 말아야 한다.
4.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또는 청색볼펜) 및 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5. 시험 도중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화 또는 그 밖의 연락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서는 안된다.
6. 응시자는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장내를 소란하게 하거나 기타 행동으로 시험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7. 시험 중에는 책상 위 우측상단에 신분증 및 응시표를 올려놓아야 한다.
8. 답안지에는 정해진 기재사항 이외의 것을 기입하거나 기재란 외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9. 답안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10. 선택형답안지 표기시 답안(과목코드 및 응시번호 등을 포함한다)은 수정테이프로만 수정이 가능하다.
11.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중간퇴실은 금지하며, 화장실 사용 이외의 사유로 시험 중 이석시 해당 시간내 다시 입장할 수 없다. 이 경우 화장실 사용은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2.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손을 들고 시험감독관의 허가를 얻어 질문해야 한다.
13. 선택형답안지 교환은 답안 이기시간을 감안하여 시험종료 5분 전까지 교환 가능하며, 종료시간의 신호가 울리면 시험을 일제히 중지하고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응시자 중 2명은 시험문제지 개봉 및 답안지 포장시 입회 확인해야 한다.
15. 전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는 강제퇴장 조치 후 시험답안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6. 부정행위, 규칙위반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처분한다.
17. 그 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한 유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별표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별표 4]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제13조제1항 관련)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달리게 한다. **라. 기록**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측정할 수 있다. 2) 수기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악 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나. 실시도구** 악력기 **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3)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을 때 1회로 하고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깍지를 낀 손이 빠지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종 목	측 정 방 법 등
	2) 기록원 1명이상 3) 검사원 1명이상 **나. 실시도구** 매트,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봉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수 영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50m 수영장(25m 수영장 왕복 가능) 2) 초시계(1개이상)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1) 수영장 레인을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응시자의 신체의 일부가 도착지점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비고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13조제7항 관련)

분야 \ 점수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기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방송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전자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 인명구조요원강사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영 어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 (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 (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 (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분야 \ 점수	5점	3점	2점	1점
일 어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국어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레 저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산·어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로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 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자 명 부

접 수 년월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선택과목	연락처	취급자 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귀하

인적사항	성명(한글)		응시지역		
	성명(한자)				
	생년월일		응시분야		
① 주소			연락처	② 전화	
	E-mail :			③ H·P	
④ 최종학력		⑤ 국가유공자	☐ 5% ☐ 10% ☐ 비대상		

⑥ 경력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		
		~		
		~		
		~		

⑦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정부수입인지 부착	상기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함 20 . . . 응시자 : (서명)	(사진) (3.5cm×4.5cm)
※응시번호		

절 취 선

※응시번호	응시표	
	응시지역 _____ 응시분야 _____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20 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채용시험 20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사진) (3.5cm×4.5cm)

응시원서 기재요령 및 주의사항

1. 응시원서 기재요령

가. 기재사항은 정자로 기입하고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여서는 안 된다.

나. ①~③ 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본인이 통화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다. ④ 최종학력을 기재한다.

라. ⑤ 해당자는 해당란에 "√" 표시한다.

마. ⑥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⑦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자격증 및 가산점 자격면허를 상세히 기입한다.

사. 응시표란은 응시지역 및 응시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아.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명함판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서 응시원서 응시표 사진란에 첨부한다.

자. 《정부수입인지 붙임란》 참조하여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한다.

차. 접수된 원서는 변경할 수 없다.

카. 일단 제출된 응시원서 및 서류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아니 한다.

타. 응시분야는 원서접수 지방해양경찰청 소재지, 응시분야는 해당 응시분야(공고문 참조)를 기록한다.

2. 주의사항

가. 응시표를 교부 받은 후 정해진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나. 응시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 하였을 때는 재교부 받아야한다.(사진 1매 제출)

다. 시험개시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 및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아 시험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외에 기입하거나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부정행위, 규칙위반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처분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의뢰서

20 . . .

출제위원 귀하

20 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을 시행함에 있어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출제를 의뢰하오니 월 일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제담당과목 :

2. 형태 및 문제수

가. 출제형태 :

나. 출 제 수 :

3. 출제수준 및 난이도

· 수 준 :

· 난 이 도 :

4. 제출방법

· 시험문제 출제위원장에게 직접 제출

5. 기 타

· 출제 시험문제 제출시한을 준수하여 시험실시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 양 경 찰 청 장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험문제 작성 양식(선택형)

과 목		응시분야 (계급)		작성자		날 인	
출제난이도							
"문" ①. ②. ③. ④.							

----------(간사인)----------

과 목		응시분야 (계급)		작성자		날 인	
정 답		출 처					
정답 이유 및 근거(지문별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시험문제 작성 양식(기입형)

과 목		응시분야 (계급)		작성자		날 인	
측정목적							
" 문" 문제 기재 예, 대한민국은 ○○ 공화국이다.							

----------(간사인)----------

과 목		응시분야 (계급)		작성자		날 인	
정 답							
정답 이유 및 근거							

[별지 제5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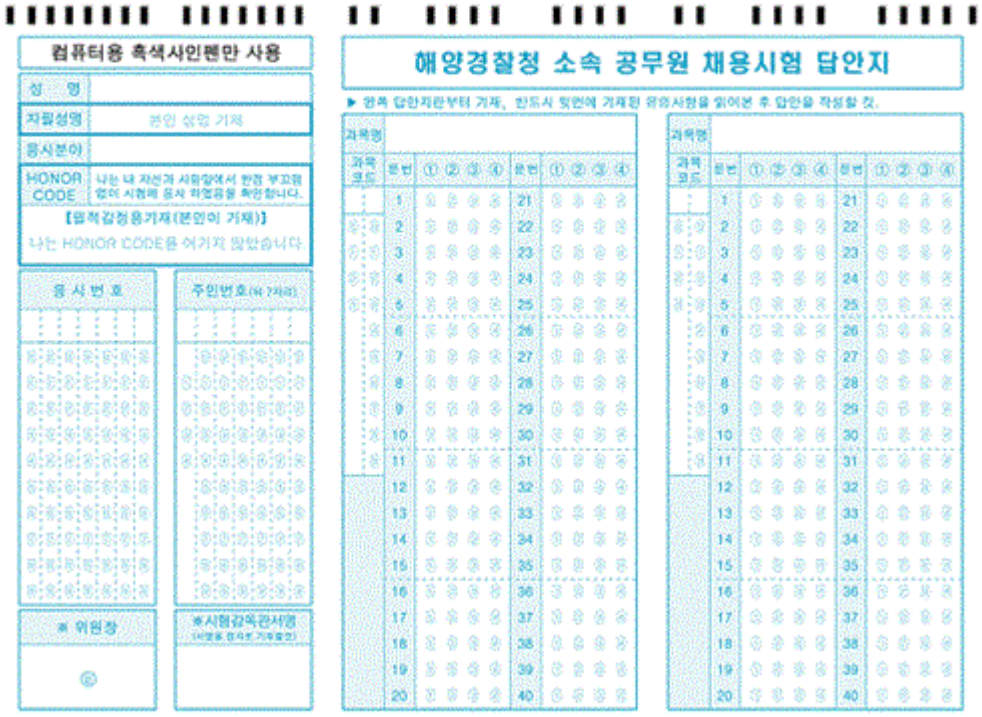
시험문제 작성 양식(논문형)

과 목		응시분야 (계급)		작성자		날 인	
"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선택형 답안지 양식 (40문제)

〈2과목 앞면〉



〈2과목 뒷면〉

응시자 주의사항

1. 답안지를 받는 즉시 응시분야(계급),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기입한 후 해당번호에 정확히 마킹하여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정확히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표기란 상단 과목명 옆에 해당 시험과목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아래의 과목코드 번호를 기재하여 해당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예시) 시험과목이 "해양관할학개론", 코드번호가 "01"인 경우



4. 시험장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확실 히 숙지하여 고정시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문제지의 인쇄누락 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부정행위, 규칙위반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8조에 따라 처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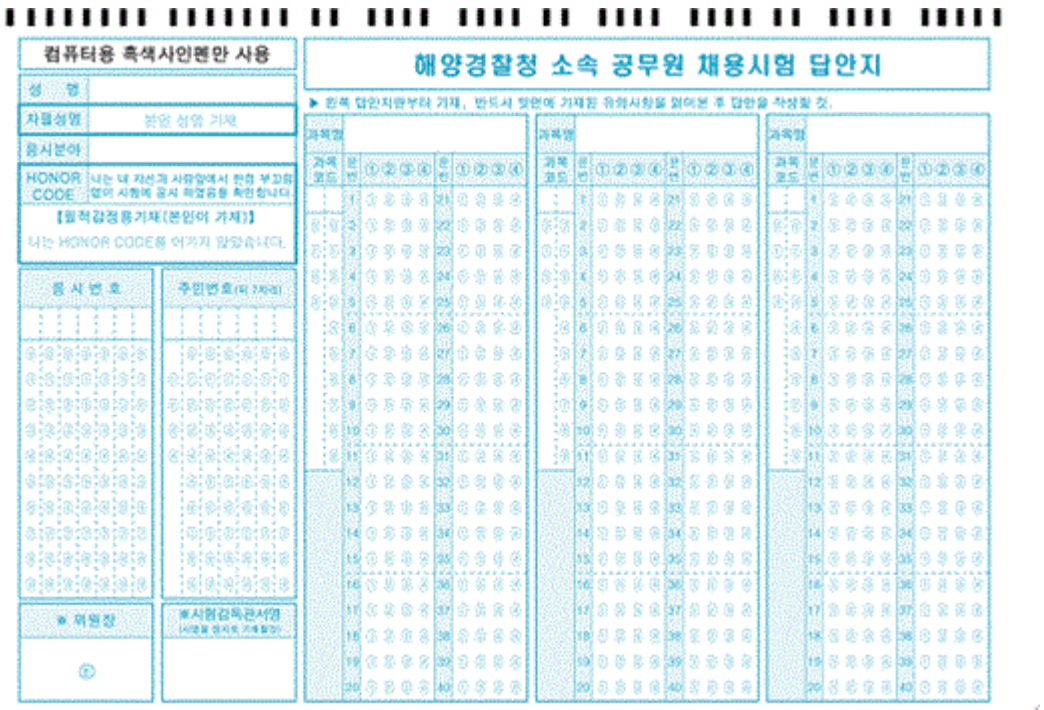
답안지 기재요령

1.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지의 부호(①②③④)를 확인한 후 바르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 ① ② ③ ④
○ × × × ×
2.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원의 중심을 관통하여 예비마킹 등으로 이중으로 표기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잘못나 그 밖의 기구로 긁거나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답안란을 고정을 경우, 그 답안을 무효로 합니다.[수정액 사용 불가]
4. 아래 과목코드 번호에 따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해당번호를 정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지 작성사항 기재 등 표기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답안지 판독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과목코드 번호

과목	코드	과목	코드
해양경찰학개론	01	항해학	13
형법	02	기관학	14
국제법	03	해경실무(경위A형)	15
헌법	04	해경실무(경위B형)	16
해양법	05	해경실무(경위C형)	17
형사소송법	06	해경실무(경사A형)	18
경찰학	07	해경실무(경사B형)	19
해사소송법	08	해경실무(경사C형)	20
해사법규	09	해경실무(경장)	21
해양경찰학개론	10	예비	22
항법	11	예비	23~30
운용학	12		

〈3과목 앞면〉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 사용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 왼쪽 답안지부터 기재, 반드시 뒷면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읽어본 후 답안을 작성할 것.

성 명

자필성명 본인 성명 기재

응시분야

HONOR CODE 나는 내 자신과 사유업에서 한점 부고의 없이 시험에 응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필적감정용기재(본인이 기재)】

나는 HONOR CODE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응 시 번 호

주민번호(뒤 7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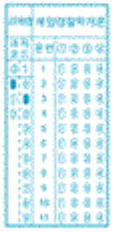
※ 위원장

※시험감독관서명

〈3과목 뒷면〉

응시자 주의사항

1. 답안지를 받는 즉시 응시분야(계급),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기입한 후 해당번호에 정확히 마킹하여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을 틀리없이 작성하고,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정확히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표기란 상단 과목명 옆에 해당 시험과목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과목코드 번호를 기재하여 해당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예시) 시험과목이 "해양경찰학개론", 코드번호가 "01"번 경우



4. 시험종료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확인 후 감독관이 고정시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문제지의 인쇄누락 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부정행위, 규칙위반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처분합니다.

답안지 기재요령

1.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지의 보기(㉠㉡㉢㉣㉤)를 확인한 후 바르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 ㉡ ㉢ ㉣ ㉤
   ○ × × × ×

2.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연필, 샤프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 등으로 이중으로 표기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처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칼이나 그 밖의 기구로 긁거나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답안란을 고쳤을 경우, 그 답안을 무효로 합니다.(수정액 사용 불가)
4. 이래 과목코드 번호에 따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해당번호를 정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지 안적사항 기재 등 표기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답안지 판독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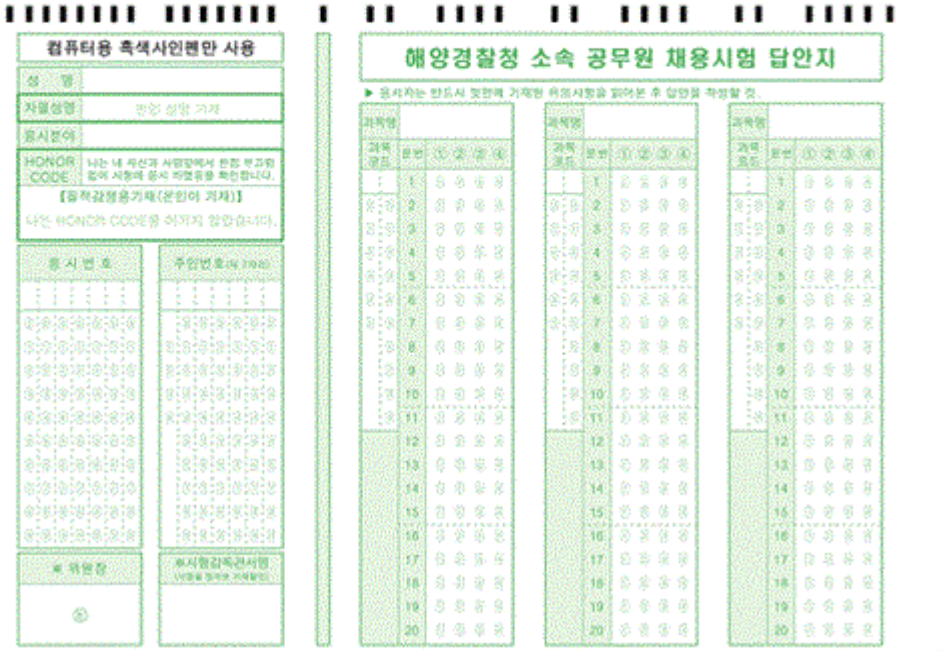
※ 과목코드 번호

과 목	코드	과 목	코드
해양경찰학개론	01	철 학	13
행 정 법	02	기 관 학	14
국 제 법	03	해경실무(경감)	15
형 정 학	04	해경실무(경위A형)	16
해 양 법	05	해경실무(경위B형)	17
항 공 법 규	06	해경실무(경위C형)	18
형 법	07	해경실무(경사A형)	19
형 사 소 송 법	08	해경실무(경사B형)	20
해 사 법 규	09	해경실무(경사C형)	21
해양경찰학개론	10	해경실무(경장)	22
헌 법	11	예 비	23~30
법 원 학	12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선택형 답안지 양식(3과목 20문제)

〈앞 면〉



〈뒷 면〉

응시자 주의사항

1. 답안지를 받는 즉시 응시분야(계급),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기입한 후 해당번호에 정확히 마킹하여야 합니다.
2. 거재시험을 응징없이 작성하고,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정확히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표기란 상단 과목명 앞에 해당 시험과목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과목코드 번호를 기재하여 해당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예시) 시험과목이 "해양경찰학개론", 코드번호가 "01"인 경우



4. 시험종료와 응시표의 신분증을 확인 후 오른쪽에 고정시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문제지의 인쇄누락 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부정행위, 규칙위반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처분합니다.

답안지 기재요령

1.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지의 보기(① ② ③ ④)를 확인한 후 바르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 ② ③ ④ ⑤
○ ✕ ✕ ✕ ✕
2.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펜 등을 사용하거나, 볼펜,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시이와 동일로 이중으로 표기 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잘못하여 그 밖의 기구로 긁거나 수정테이프 이용의 도구를 사용하여 답안란을 고칠을 경우, 그 답안을 무효로 합니다.(수정액 사용 불가)
4. 이상 과목코드 번호에 따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해당번호를 정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지 성적사항 기재 등 표기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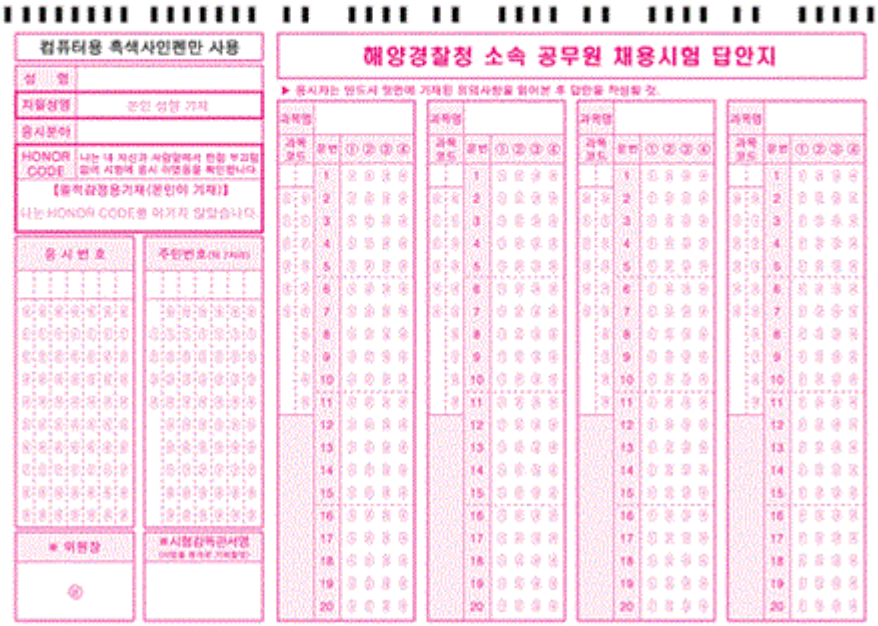
※ 과목코드 번호

과목	코드	과목	코드
해양경찰학개론	01	형법	16
형법	02	경찰학	17
형사소송법	03	관계법령	18
세계법규	04	경찰정책과학	19
헌법	05	범죄학	20
영어	06	국가안보학	21
행정법	07	국가안보학개론	22
행정학	08	경찰인사관리	23
한국사	09	사회학(범죄포함)	24
경제학	10	정보경찰론	25
해양법	11	해양안전론	26
형사법	12	경찰공학개론	27
형사정책	13	경찰수사론	28
경찰행정법	14	정보학개론	29
헌법재판법	15	예비	30~99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선택형 답안지 양식(4과목 20문제)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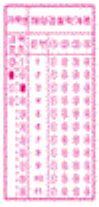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 사용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뒷 면〉

응시자 주의사항

1. 답안지를 받는 즉시 응시분야(계급),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7자리를 기입한 후 해당번호에 정확히 마킹하여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정확히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지에 선택 과목별 옆에 해당 시험과목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과목코드 번호를 기재하여 해당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예시) 시험과목이 "해양경찰학개론", 코드번호가 "01"인 경우



4. 시험종료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확성 후 오른쪽에 고정시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문제지의 인쇄누락 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부정행위, 규칙위반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처분합니다.

답안지 기재요령

1.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지의 부호(홀수/짝수)를 확인한 후 바르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❶ ② ③ ④ ⑤
○ × × × ×

2.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편의 공학용 성관없이 예비마킹 등으로 이중으로 표기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하나 그 밖의 가구로 굳거나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답안란을 고칠을 경우, 그 답안을 무효로 합니다.(수정액 사용 불가)
4. 아래 과목코드 번호에 따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해당번호를 정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 및 표기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과목코드 번호

과목	코드	과목	코드
해양경찰학개론	01	형법	16
헌법	02	가족법	17
형사소송법	03	전기통신법	18
해사법규	04	항공직무개론	19
선박운항	05	유선관제	20
영어	06	무선관제	21
항해일반	07	무선공학개론	22
항해학	08	통신보안일반	23
항해학	09	네트워크개요	24
기관학	10	정보관리론	25
국제법	11	통신이론	26
형사법	12	지휘관찰학개론	27
해사영어	13	항속이론	28
공법일반	14	물리구조	29
항공법규	15	계	30~5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논문형 답안지 양식

(　　)년도　　시험(　　)답안지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뒷면에 기재한 주의사항을 읽어본 후 답안지를 작성할 것.

시험과목		결과					확인	
		1차 채점	2차 채점	계	평균	비고	이기자인	검인

※답지번호	제 2 차 채 점	점수	위원인

(검인)

※답지번호	제 1 차 채 점	점수	위원인

(검인)　　(감독경인)

※답지번호	시험과목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한자)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이 답안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5매이므로 답안지를 받는 즉시 매수와 페이지 표지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1매라도 분리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답안지를 받는 즉시 표시된 굵은선 안에 시험과목,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명(한글, 한자)을 빠짐없이 정자로 기입하여야 한다.(답안지 교체 시 재작성하여 기재)

3. 답안은 본 표지 다음 장 1페이지부터 작성한다.

4. 답안작성은 가로쓰기(횡서)로 작성하되, 청색 또는 흑색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괘선 내에서만 기재하여야 한다.

5. 답안지상에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답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져가서는 아니 된다.

7. 시험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위 바른편에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위 주의사항을 위배하여 작성한 답안은 무효로 처리된다.

9. 부정행위, 규칙위반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처분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인수증(00지역)

20 년도 제 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를 다음과 같이 인수 합니다.

1. 품목 및 수량

◦시 험 문 제 지	선택형	0000 권	(여분포함)
◦시 험 문 제 지	논문형	000 부	(여분포함)
◦답 안 지	선택형	0000 매	(여분포함)
◦답 안 지	논문형	000 매	(여분포함)

2. 인수일자

２０ 년 월 일 시 분

3. 인수장소 :

4. 기타 특이사항 :

２０ 년 월 일

인 계 자 : 계급 성 명 (인)

인 수 자 : 계급 성 명 (인)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체·체력검사서 [남자용]

응시번호		성 명	

○ 신체검사 항목

항 목	기 준	결과	확인	판정
체 격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문 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질 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체력검사 항목

항 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득점	확인	판정
100m달리기(초)	13.0 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이후			
기 록												(서명)	
팔굽혀펴기(횟수)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기 록												(서명)	
팔굽혀펴기(횟수)	58 이상	57~54	53~50	49~46	45~42	41~38	37~33	32~28	27~23	22 이하			
기 록												(서명)	
좌우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기 록												(서명)	
수 영(초)	130초 이내												
기 록												(서명)	
총 점											점		

검사관	(인)	판정관	(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체·체력검사서 (여자용)

응시번호		성 명	

○ 신체검사 항목

항 목	기 준	결과	확 인	판정
체 격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문 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질 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체력검사 항목

항 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득점	확인	판정
100m달리기(초)	15.5 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 이후			
기 록												(서명)	
윗몸일으키기(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기 록												(서명)	
팔굽혀펴기(1분)	31 이상	30~28	27~25	24~22	21~19	18~16	15~13	12~10	9~7	6 이하			
기 록												(서명)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기 록												(서명)	
수 영(초)	150초 이내												
기 록												(서명)	
총 점											점		

검사관	(인)	판정관	(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 · 분야	응시번호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신 (색 각)		청 력	좌: ( )dB 우: ( )dB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 사	
약물(TBPE)검사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혈기조종,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寬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야 합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면접시험 평가표 (1단계)

○ (　　)위원　　계 급　　성 명　　(인)

평 가 항 목	배 점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1 ~ 5

연 번	응시분야	면접번호	적성등급	면접득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면접시험 평가표 (2단계)

○ (　　)위원　　계 급　　성 명　　(인)

평 가 항 목	배 점
3. 예의·품행·봉사성·정직성·성실성·발전가능성	1 ~ 5

연 번	응시분야	면접번호	적성등급	면접득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면접시험 집계표

위 원 장 : 계급 성명 (인)

○ 응시분야 : 인원 : 명[채용인원 : 명]

응시번호	성 명	국가유공	주 관 요 소								객 관 요 소	합계	합격여부
			제2호(1단계)		득 점		제3호(2단계)		득 점		제4호 (자격증)		
			갑위원	을위원	소계	환산	갑위원	을위원	소계	환산			

※ 비고

1. 면접시험 불합격기준

- 면접 총점이 4할 미만인 경우
-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제2호 또는 제3호)에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1점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2. 제2호, 제3호는 각 위원의 환산점수로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아니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 년 제 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 보고

○ (지역) 제 시험장

인 원	1. 대 상 인 원 명 2. 기 권 인 원 명 3. 응 시 인 원 명
응 시 번 호	번 ~ 번
답 안 지	1. 수 령 매 수 매 2. 배 부 매 수 매 3. 잔 여 매 수 매
시 험 감 독 관	정 감 독 관 인 부 감 독 관 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

수 신 : 해양경찰청장

발 신 : 시험감독관 (인)

20 년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적발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부정행위자 명단

연번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부정내용	처리상황
1						
2						
3						
4						
5						
6						
7						
8						
9						
1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종 합 성 적 집 계 표

순 번	응시번호	성 명	필기(실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총 점	판 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0000-000 호

합 격 증 명 서

성　　명 : O O O
생년월일 : '00.00.00.
응시분야 : O O O O(계급)

위 사람은 0000년도 제0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해 양 경 찰 청 장

30×30(mm)
관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시 험 실 시 결 과 보 고

20 . . .

1. 시험일시 및 시간 : 20 . . . : 부터 : 까지

2. 시험장소 :

3. 실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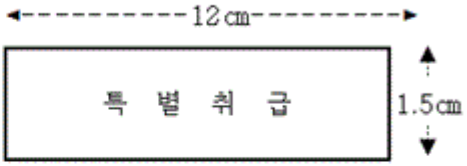
구 분(순경)	소 계	응시분야1	응시분야 2	응시분야3
대 상	00			
기 권	00			
응 시	00			

4. 답안지 현황
   수 령 매 수 : 매
   배 부 매 수 : 매
   잔 여 매 수 : 매

5. 기타 시험 관리상 특기사항(참고사항 포함)

시험관리관 계급 : 성명 (인)

[별도 1]



시험문제 출제의뢰 (제출)

출제과목

제출기한

출제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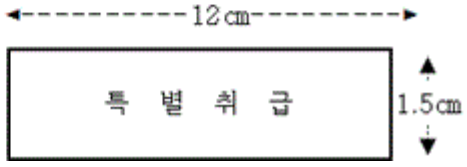
참고사항

1. 제출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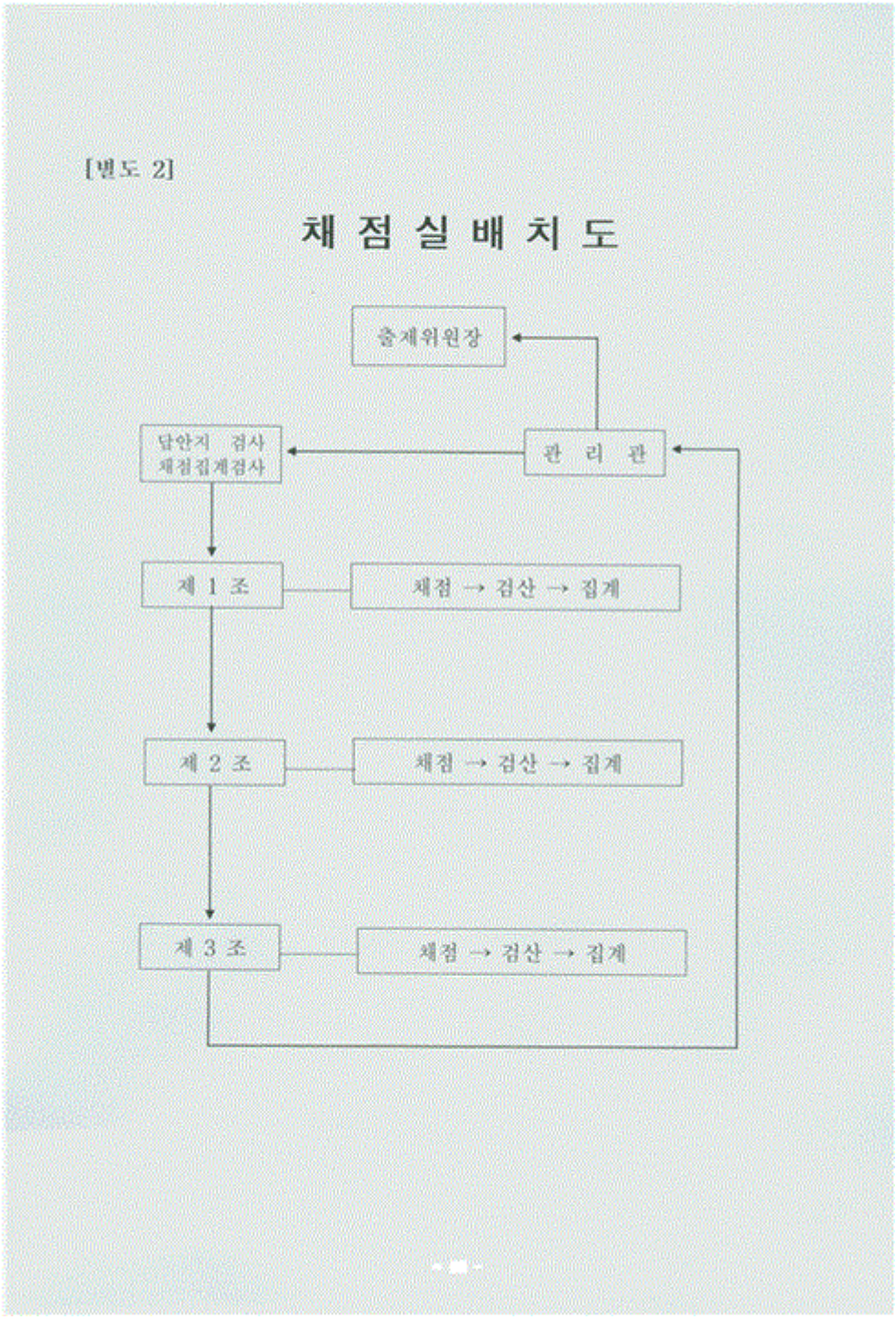
2. 연락처 :

3. 제출 시에는 봉하신 후 필히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양 경 찰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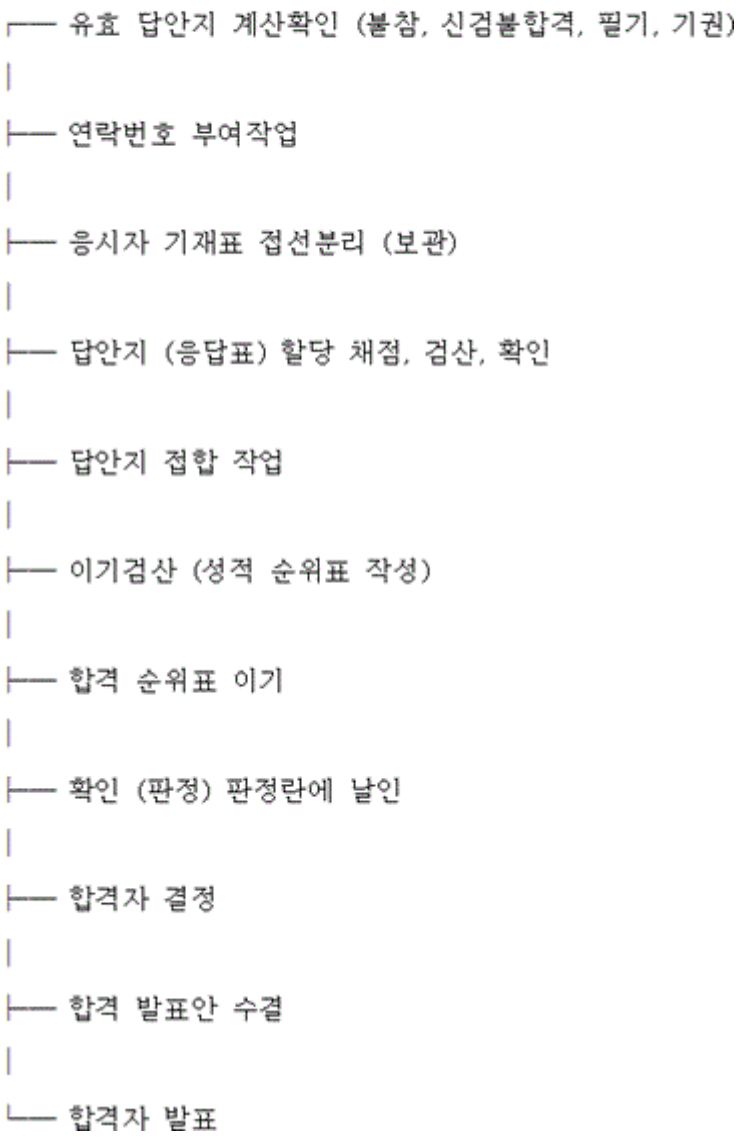


[별도 2]


[별도 2]
채 점 실 배 치 도
출제위원장
답안지 검사
채점집계검사
관 리 관
제 1 조
채점 → 검산 → 집계
제 2 조
채점 → 검산 → 집계
제 3 조
채점 → 검산 → 집계

[별도 3]

채점실표준작업단계



기타 공무원 채용 법령집

제 작 자 : 김기현

제작일자 : 2023. 8.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